

오향걸 (吳卿杰)	집동 지회장	조선인회 집안 총지부 선화보(禪和堡) 지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어서 1922년 4월 현직에 임명되었으나 항상 신병의 위협이 끊이질 않아 결국 작년 1월 강 건너편 만포진으로 건너갔다. 지회장으로서 공적 없음.
김응호 (金應浩)	집남 지회장	조선인회 영수천자 지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상당한 활동을 보였지만, 그 뒤 점차 불온한 자들의 위협으로 도저히 현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1921년 10월 통구성 내로 이전했다. 1922년 1월 보민회 설치와 더불어 현직에 종사했지만, 해당 지역에 있지 못하고 항상 통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공적을 듣지 못하였다.
이성을 (李成乙)	집북 지회장	당초 지부 간사로 임명되었지만, 1923년 4월부터 보민회 경비 삭감으로 간사를 사퇴하고 현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해당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통구에 체류했다. 특별한 공적은 찾을 수 없음.
김병섭 (金炳燮)	집서 지회장	1923년 7월 임명된 이래 부임지 외차구(外岔溝)에 있으면서 그 지역 중국 관헌과 강 건너편 우리 관헌과도 제휴하는 회무에 종사하는 것 외에 신병의 위협을 무릅쓰고 늘 이주 조선인들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출전 : 保民會關係功績調二關スル件, 1924년 3월 13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21) 보민회 현재 임원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1924년 3월 20일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안동 총영사 기밀령 제15호

통화 분관 주임 기밀령 제10호

해룡 분관 주임 기밀령 제6호

홍경 와키야마(脇山) 경부보 기밀령 제36호

보민회 현재 임원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보민회 폐지 및 선처에 관해서는 3월 1일자 서신에서 전한 바와 같이 보민회 해산 당시의 임원에 대한 퇴직수당금에 관해 각 영사관이 제출한 조서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별도로 기록한 바와 같이 결정하였으니 해당 관내의 보민회 지부 임원에 대한 퇴직수당금을 송금하였으니 조사한 후에 각 개인에게 수령증을 발부하여 교부하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부의 소사에게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계상해 두었으니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보민회에 대한 공로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 해룡 분관 관내의 지부 임원 급여는 1개월 예산금 240원(지부금 120원, 지회금 12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룡 분관에서 제출한 임원명부에서 편의상 별도로 기록한 바와 같이 선별해 퇴직수당 금액을 심사함으로써 실제로 지급할 때는 지부 임원 이외에서 적당한 조사원 1명, 지회장 4명을 선택한 뒤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길 바랍니다.

본 서신의 송부처 : 안동 영사, 통화·해룡 분관 주임, 흥경 와키야마 경부보

현재 임원 퇴직수당 지급액 조서

(1) 보민회 본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고문 겸 회장	최정규(崔鼎圭)	4년	200	1,600	1920년 3월 총회장 취임
조사원	박원식(朴元植)	3년 8개월	40	293	1920년 7월 취직
서기	최환규(崔桓圭)	8개월	40	53	1923년 7월 취직
임시 조사원	박필근(朴弼根)	3년 9개월	20	150	1920년 6월 흥경지부 조사원 취직, 환인지부 조사원, 흥경지부 서기를 거쳤음
소사			15	15	
계				2,111	

(2) 흥경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백형린(白衡麟)	4년	50	400	1920년 3월 1일 취임
서기	허운(許雲)	2년 10개월	30	170	1921년 5월 11일 간사 취임, 1923년 4월 1일 간사 폐지로 서기 취임
조사원	김희정(金熙貞)	2년 3개월	20	90	1921년 12월 1일 임시 관직 서기로 취임, 1922년 3월 12 일 흥경 지회 서기, 1922년 3 월 조사원 취임
소사			15	15	
계				675	

(3) 통화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이동성(李東成)	3년 10개월	50	383	1920년 5월 취임
서기	이시팔(李時八)	2년 1개월	30	125	1922년 2월 취임
조사원	김창순(金昌淳)	2년 2개월	20	86	1922년 1월 취임
동	서광하(徐光夏)	6개월	20	20	1923년 9월 취임
통동 지회장	김성해(金成海)	1년 6개월	30	90	1922년 9월 취임
통남 지회장	이택희(李澤禧)	2년 6개월	30	150	1921년 9월 취임
통북 지회장	김형삼(金亨三)	8개월	30	40	1923년 7월 취임
소사			15	15	
계				909	

(4) 환인지부(지부 회장은 통화지부 회장 겸임)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서기	송운봉(宋雲峯)	1년 9개월	30	105	1922년 6월 취임
조사원	김도성(金道盛)	1년 2개월	20	46	1923년 1월 취임
동	최덕찬(崔德贊)	동	20	46	1923년 1월 취임
환서 지회장	이종화(李鐘華)	1년 11개월	30	115	1922년 4월 취임

환남 지회장	김석지(金錫祉)	1년 7개월	30	95	1922년 8월 취임
환북 지회장	이석기(李碩基)	1년 9개월	30	105	1922년 6월 취임
소사			15	15	
계				527	

(5) 장백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주림(朱林)	1년 10개월	50	183	
조사원	정인림(鄭寅林)	동	20	73	
동	이진(李晉)	8개월	20	26	
서기	강신향(姜信鄉)	1년 10개월	30	110	
지회장	조병철(趙炳喆)	1년 10개월	20	73	
동	정창규(鄭昌奎)	1년 9개월	20	70	
동	김도일(金道一)	11개월	20	36	
동	강태구(姜泰球)	5개월	20	16	
소사			15	15	
계				602	

(6) 임강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손희상(孫熙相)	2년 5개월	50	241	
서기	정단(鄭丹)	1년 11개월	30	115	
조사원	김영한(金英漢)	동	20	76	
동	승덕봉(承德鳳)	동	20	76	
지회장	주명준(朱明俊)	동	20	76	
동	김일수(金逸秀)	동	20	76	
동	이광민(李光珉)	동	20	76	
동	안달환(安達桓)	동	20	76	
소사			15	15	
계				827	

(7) 집안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이완구(李完求)	2년 2개월	50	216	
서기	전명조(全明朝)	1년 2개월	30	70	
조사원	조윤걸(趙允傑)	2년 2개월	20	86	
동	윤수복(尹壽福)	1년 2개월	20	46	
집안 동안지회장	오향걸(吳鄉杰)	1년 11개월	20	76	
집안 지회장	김응호(金應浩)	2년 2개월	20	86	
집북 지회장	이성을(李成乙)	1년 2개월	20	46	
집서 지회장	김병섭(金炳燮)	8개월	20	26	
소사			15	15	
계				667	

(8) 해룡지부

직함	성명	재직기간	급여 (엔)	퇴직수당 사정액(엔)	비고
지부 회장	이응계(李膺計)	1년 10개월	50	183	
서기	장석주(張錫周)	동	30	110	
조사원	김창수(金昌壽)	동	20	73	
동	신상호(申相鎬)	1년	20	40	
지회장	피희태(皮熙泰)	1년	30	60	
동	이동훈(李東勳)	1년 10개월	30	110	
동	하재우(河在禹)	동	30	110	
동	나함진(羅函珍)	동	30	110	
소사			15	15	
계				811	
총계				7,129	

	외무성 제출	사정액	증감
본부		2,111	
흥경(興京)		675	
통화(通化)	7,560	909	3,338
환인(桓仁)		527	

임강(臨江)		827	
장백(長白)	5,355	602	3,259
집안(輯安)		667	
해룡(海龍)	1,020	811	209
계	13,935	7,129	6,806

〈출전 : 保民會現在役員退職手當支給ニ關スル件, 1924년 3월 20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22)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기밀공(機密公) 제128호

1924년 4월 28일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외무대신 남작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전(殿)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3월 4일자 기밀공 제61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정규(崔鼎圭)가 조사한 공로조서 및 송부한 사항에 대한 각 영사의 의견 및 전 보민회 임원 피해자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별도 기재한 계산서의 배당 총액을 통보하고, 아울러 최정규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고, 지난번 당 영사관에서 개최한 영사회의 당시 보민회 관련 각 영사 및 분관 주임과도 협의하여 별도 기재한 개인별 배당금 조서에 따라 각각 교부하기로 처리했으나, 검토하시길 바라며 이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본신 사본 송부처 : 철령, 안동 영사, 해룡 및 통화 분관 주임

[별기]

보민회 해산 계산서

수입

금 1만 3,780원 외무성 보류금
금 1만원 외무성에서 최정규 몫으로 받음
금 2,866원 본부 및 각 지부의 3월분 경비 본 영사관 보류금
금 600원 흥경 지부 감독원 출장비 제4기분
합계 금 2만 7,246원

지출

금 7,129원 현 임원 퇴직수당(보고 완료)
금 1만원 최정규에게 넘김(교부 완료)
금 1만 117원 일반 공로자 및 관계자 배부금(상세한 것은 별표와 같음)
합계 금 2만 7,246원
차액잔금 없음

만주 보민회 일반 공로자 및 관계자 개인별 배당금 조서

성명	교부액(엔)	성명	교부액(엔)
김유영(金裕泳)	750	안홍익(安鴻翼)	225
장지량(張之亮)	600	최봉만(崔奉滿)	225
이동성(李東成)	450	배정자(裴貞子)	225
이정근(李貞根)	375	김용국(金用國)	202.50
박원식(朴元植)	375	강경해(姜鏡海)	202.50
이인수(李寅秀)	300	유진행(俞鎭行)	187.50
이완구(李完求)	300	김경환(金景煥)	187.50
김은성(金殷盛)	262.50	양정묵(梁正默)	187.50
엄주익(嚴柱翊)	262.50	안기초(安基礎)	187.50
배형린(白衡璘)	225	박시화(朴時和)	187.50
오헌수(吳憲洙)	225	최병기(崔炳基)	187.50

이태인(李泰仁)	187.50	선우연(鮮于淵)	135
표성천(表聲天)	150	김석준(金錫俊)	135
문국빈(文國彬)	150	차 강(車 綱)	120
황하숙(黃河淑)	150	박봉순(朴逢舜)	120
서소철(徐邵哲)	150	길창실(吉昌實)	105
이응도(李應道)	150	장영준(張英俊)	105
손희상(孫熙相)	150	이지선(李枝善)	105
홍대영(洪大英)	150	오정근(吳貞根)	105
최승일(崔承一)	150	주 립(朱 林)	105
정승복(鄭承福)	150	강병철(姜炳哲)	85
박필근(朴弼根)	150	김신수(金申秀)	85
이석기(李碩基)	135	한용섭(韓龍燮)	85
김창해(金昌海)	75.50	이해수(李海秀)	71
김성만(金成滿)	75	최환규(崔桓圭)	75
이지태(李枝泰)	75	김세찬(金世贊)	75
김영태(金瑩泰)	75	이하영(李河永)	75
김주익(金周益)	75		
계	10,117		

날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에 대한 해산수당 지급에 관해 4월 28일자 기밀공 128호에서 대신께 보고한 바,

1. 보고서 계산서에는 아래 금액을 공제해 두었습니다.

금 1,150원 흥경 지부 감독 여비 잔금

〈부기〉 본 금액을 공제한 이유는 보민회 경비 제2기분과 제3기분 총액 영수증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금 6,315원 34전 보민회 토지경영비 2만 5,435원에 대한 영수증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2. 위의 총액 7,464원 34전에 대한 지출계산서는 6,409원 34전 별도 기재한 일반 공로자 및 관계자 개인별 배당금 조서(2)와 같이 분배했음.

일금 976원 흥경 차입금 상환금

일금 80원 본부 나머지 부분 정리비

합계 금 7,465원 30전

3. 1922년도 보민회 기본금 2만 5,425원은 지출금 1만 9,109원 66전으로 현재 잔금 6,315원 34전이다. 그리고 이 기본금 잔금 및 법고현(法庫縣)의 토지 200천지(天地) 및 아래 채권을 그대로 교부했음.

－ 채권액

- 1) 금표(金票) 915원(오상현 및 최흡(崔洽)으로부터 쌀 대금 미회수분)
- 2) 현대양(現大洋) 2,000원(북만주 일면과(一面坡)에서 중국인에게 건물을 담보로 대부한 것)

이상과 같이 보민회 해산 중 장부 이외의 금액에 대해 처리하오니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해산금 분배는 당 영사관이 직접 각자에게 교부할 경우에는 번잡스러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정규가 각자의 위임장을 받아 교부하고 그 후 최정규가 각자에게 정당한 영수증을 수령한 다음 당 영사관에 지참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8,685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정규는 이번 해산금 배당에 있어서 바로 현금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교부하고 곧바로 현금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주식회사 광제사(廣濟社)의 주식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법고현의 토지는 1월 29일자 기밀공 제27호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광제사 농장으로 경영하려는 계획 중에 있으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추신)

별지의 개인별 배당액 가운데 최정규에 대한 1,500원은 별도의 금 1만 원 지급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이 별도의 금액은 극비리에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 공로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액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자들이 의문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광제사에 대해서도 최정규가 관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의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식으로서 1,500원을 배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비금으로서 2,130원 34전을 마련한 것은 보민회 피살자 유족들 가운데 앞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1924년 4월 28일

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쓰보우에 데이지(坪上貞二) 전(殿)

일반 공로자 및 관계자 개인별 배당금 조서(2)

이름	교부금액(엔)	비고	이름	교부금액(엔)	비고
길은초(吉隱初)	90		계영환(桂榮煥)	60	
이해수(李海秀)	4		이상두(李相斗)	60	
서상순(徐相淳)	60		이용태(李用泰)	60	
정재곤(鄭在坤)	60		이성규(李聖奎)	60	
한명재(韓明哉)	60		길승기(吉承基)	60	
김명규(金明奎)	60		길문훤(吉文暄)	60	
박봉수(朴鳳洙)	60		길용준(吉用俊)	60	
박성호(朴成浩)	60		길은찬(吉隱贊)	45	
정경서(鄭景瑞)	60		하영준(河永俊)	45	
강 전(康 仝)	60		장봉진(張鳳振)	45	
김득화(金得和)	60		차승준(車承俊)	45	
황용하(黃龍河)	45		윤수복(尹壽福)	45	
김창익(金昌益)	45		송운봉(宋雲峰)	45	
이문약(李文若)	45		김석지(金錫祉)	45	
임기권(林基權)	45		안광민(安光民)	30	
정봉록(鄭鳳祿)	45		장봉세(張奉世)	30	
전경서(全璟瑞)	45		허 윤(許 鑿)	30	
김도성(金道盛)	45		백영모(白永摸)	30	
김영순(金永淳)	45		김동익(金東翼)	30	
정병한(鄭炳翰)	45		김응호(金應浩)	30	
김병섭(金炳燮)	45		조윤걸(趙允杰)	30	
김승준(金承俊)	45		최덕빈(崔德斌)	30	
김용봉(金龍鳳)	45		김홍주(金洪疇)	30	
김형삼(金亨三)	30		김도일(金道一)	30	
김영한(金英漢)	30		강태구(姜泰球)	30	
김희정(金熙貞)	30		김덕여(金德汝)	30	
이병환(李丙煥)	30		이창련(李昌連)	30	
이능만(李能滿)	30		최경도(崔景道)	30	
백준기(白俊基)	30		차의권(車義權)	30	
정인채(鄭寅采)	30		노창운(盧昌云)	30	
주성삼(周省三)	30		최정규(崔晶圭)	1,500	
이 진(李 晋)	30		미교부에 대한 준비금	2,130.34	
조병철(趙炳喆)	30		계	6,409.34	

길창준(吉昌俊)	30				
강신향(姜信鄉)	30				
정창규(鄭昌奎)	30				

〈출전 : 保民會功勞者及關係者解散手當支給ニ關スル件, 1924년 4월 28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23) 제우교 순난(殉難) 조선인 유족 구제 청원운동

관기고수(關機高收) 제44085호의 1

1925년 11월 19일

발송 : 관동청 경무국장

제우교의 순난 조선인 유족 구제 청원운동에 관한 건

경성 거주 제우교 교사 김유영(金裕泳)은 종래 친일을 위해 죽은 조선인 유족의 구제 청원운동을 일으켜 마키야마(牧山) 의원을 거쳐 본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이를 위해 각지의 순난 조선인의 조사를 의촉한 모양이다. 흥경현에서는 보민회 말기의 실태와 주변 사정(불온단체에 대한 관계상 이런 종류의 조사는 가장 위험함)으로 인해 관련 조선인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유영은 가장 순난자가 많을 터인 흥경현 내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김유영은 한편으로 정부의 보조로 봉천에 제우교 교회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만 보민회의 말로를 생각하면 이런 운동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흥경 지방 관계 조선인은 말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길.

1925년 11월 19일

관동청 경무국장, 외무성 아시아, 내각 척식국장, 내무성 경보국장,
경시총감, 조선 경무국장 전(殿)

〈출전 : 濟愚教殉難鮮人遺族救濟請願運動二關スル件, 1925년 11월 19일,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38〉

24) 탄원서(1926)

1920년도 만주의 불온한 무리들의 변란으로 만주 거류 조선인회의 안전 및 불온한 무리의 화근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저희들은 일진회(一進會)의 잔당을 규합하여 총독부 당국의 지휘 감독하에 만주 보민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목적인 평화의 계책에 종사하기 위해 동 회원 323명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불온한 무리들의 칼날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유해는 안치도 못하고 들판의 까마귀 먹이가 되었고, 그 영혼은 만리타향의 비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족 1,000여 명은 비관을 참지 못하고, 게다가 생계를 이끌 길이 없고 만장고해(萬丈苦海)에 빠져 있는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피살자는 제국을 위해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은 제국 신민 7,000만 동포들 중에서도 특히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에, 동 보민회는 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국 관헌과 타협했으나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1924년 그 유족 구제 방안을 정부 당국에 청원했습니다.

같은 해 만주 보민회도 정부의 지휘 아래 해산했는데, 보민회 설립비 정산을 하지 못했으므로 설립비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정부 당국에 청원한 바, 위의 두 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지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설립비에 대한 채권자는 보민회의 회장 및 간부에 대해 별지의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자 이인수(李寅秀)를 비롯한 그 밖의 간부 등은 위의 피살자 유족들의 여한 및 설립비 채권자의 독촉에 견디지 못해 다시 한 번 탄원을 올립니다.

따라서 바라건대 각하, 위의 학살된 자의 유족 구휼 및 별도 기재한 만주 보민회 설립비 지불액에 대해 검토하신 후 내려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1926년 2월

봉천 십간방 6구 15호 1
경성부 유창동 200
전 만주 보민회 회장, 제우교 대교령 이인수(李寅秀)

경성부 동소문 외성북동 186
보민회 부회장, 제우교 부교령 양정묵(梁正默)

경성부 동소문 외성북동 186
보민회 고문, 제우교 성부인 배정자(裴貞子)

경성부 유창동 200
보민회 부회장, 제우교 도사 안기초(安基礎)

충청북도 청주군 강외면
보민회 간사, 제우교 포덕사 최병기(崔柄基)

봉천 십간방 제2구 3호
보민회 간사, 제우교 포덕사 이해수(李海秀)

봉천 십간방 제2구 3호
보민회 서기, 제우교 포덕사 김주익(金周益)

안동현 2번통 제7호
보민회 관전현 지부 회장, 제우교 포덕사 김용국(金龍國)

안동현 2번통 제7호
보민회 집안현 지부 회장, 제우교 포덕사 이완구(李琬求)

안동현 2번통 제7호
보민회 임강현 지부 회장, 제우교 포덕사 손희상(孫熙相)

봉천 통화현 남관
보민회 통화현 지부 회장, 제우교 도사 이동성(李東成)

봉천 십간방 6구 15호 1
보민회 조사부장, 제우교 포교사 이능만(李能滿)

경성부 송일동 71
보민회 환인현 지부 부회장, 제우교 포교사 홍승국(洪承國)

외무대신 각하

보민회 설립비 미불액 계산서

- 금 7,540엔 55전

내역

금 1,258엔 89전

보민회 창립비로서 오현영으로부터 차용

금 1,716엔 15전

창립비로서 박봉순 외 45명으로부터 차용

금 1,100엔

창립비로서 최병기로부터 차용

금 750엔

창립비로서 배정자로부터 차용

금 399엔

창립비로서 양정묵으로부터 차용

금 1,530엔

회장 이인수의 수당 및 기밀비로서 2,130엔 가운데 700엔을 뺀 잔액

금 (782엔 51전)

환인지부 조사부장 이능만 수당 및 출장비와 여비로서 836엔 51전 가운데 50엔을
뺀 잔액

〈출전 : 歎願書, 1926년 2월,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保民會』 2,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 간도협조회

1) 간도협조회 개요¹⁰⁾

협조회는 조선인이 주체이다. 본회는 당국의 양해하에 1934년 9월 6일 설립되었다. 이후 본회는 헌병대장 가토(加藤) 중좌와 독립수비대장 다카모리(鷹森) 중좌 및 일만(日滿) 당국의 지도와 대중의 지지아래 본회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 보고서

목적

아래와 같은 선언 강령을 제시한다.

선언

현재 동아시아의 각종 정책이 갈수록 침예해짐에 따라 이는 아시아 민족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 민족은 공동이익과 행복을 보호하는 것에 일치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시아 민족의 선구인 일본을 맹주로 하여, 동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과 영구한 번영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찬란한 동아시아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균등, 각 민족의 협화(協和)를 구호로 협애한 민족관념을 버리고 외래의 실제적이지 못한 공산주의를 격파하고, 동아시아 민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1. 강령

협애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강철과 같은 견고한 조직으로 외래의 공산주의를 격파한다.

일만합작(日滿合作)으로 복리를 증진한다.

10) 이 건은 <간도지역 진압대책>의 종합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시간과 편집발송 기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제는 원 보고서 중의 소표제이다.

행동강령

일만일체의 사상을 선전하고 배양한다.

공산당 및 반일(反日), 반만군(反滿軍) 중에서 해체작용을 한다.

공산당 및 반일, 반만군의 진영에 정의분자를 이식한다.

일반민중에 정의분자를 이식한다.

공산당 및 반일, 반만군의 지하활동을 적발한다.

조선인 불량분자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역량으로 철저히 토벌하여 일만합작을 완수한다.

비록 6개조의 행동강령이 있지만 한마디로 '공산당 소멸'이 현재 협조회의 목적이다.

2. 조직

본부(연길), 지부(명월구 지부, 왕청 지부 2곳), 구회(區會, 10곳), 총반(總班), 반(조직 단위는 5명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일체의 민족주의의 흔적을 지우고 회장의 독재 통치를 실시한다.

무릇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만주인의 입회를 거절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신청자는 없다). 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반내 혹은 촌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수집하여 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협조회는 귀순자의 감시통제에 주의한다. 다시 공비(共匪)와 연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명의 회원을 한 개 단위로 하는 주거지를 설립하여 만일 그들 가운데 공비와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주거지의 회원 모두가 책임을 진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 조직은 더욱 세밀한 체제로 바뀔 것이다. 현재는 반과 총반, 구회, 지부의 조직만이 있다.

현재 안도현과 훈춘현을 제외한 간도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도시, 부락, 산속, 노동자들이 밀집한 광산, 공지, 목재장, 철로연선 등에도 분포되어 있다. (협조회 지부 1935년 8월 18일 발행한 본 회 정황 개황 보고서)

회원수 6,411명(농민 약 60%), 여기에는 공비 귀순자 1,898명을 포함한다.

3. 무장단체

- 1) 의용군자위단(義勇軍自衛團) - 본 회 회원과 본 회의 정신을 체득한 자들을 위하여 1934년 10월 20일 의용자위단을 만들어 만주국 치안의 전선에 내세운다. 의용단은 재만 조선청년으로 조직하여 만주의 치안 수비를 책임진다. 일본군의 행동에 협

조하고, 또 만주국 경내의 숙청을 위해 분투한다. 왕도낙토의 건설을 위해 미력을 다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각오를 가졌으며 사기가 높고 적극적인 자를 본 회 회원으로 한다. 의용단은 연길독립수비대장의 지휘를 받고 10개월의 군사훈련 중에서 2개월 반은 정식훈련을 한다. 1935년 1월부터 3월까지 각지에서 실전연습을 진행했고, 4월 이후 현재까지 각지에서 수비를 책임지면서 괄목할 만한 전투성과를 얻어냈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 보고서)

- 2) 협조의용단(協助義勇團) - 회원 가운데 정예요원으로 협조의용단을 구성하여 간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각 지부 및 구회는 이러한 훈련방법을 지시한다. 3월 25일, 왕청(汪淸) 지부는 제일 처음으로 협조의용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주둔한 헌병소장이 훈련을 실시하였고, 4월 14일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간략한 훈련수료식을 거행하였다.

4. 활동 상황

1) 평지(平地) 공작

농촌의 홍색하부 조직망의 적발과 소멸뿐만 아니라, 공산당 동만특위(東滿特委)의 도시향촌 경계상황을 정찰하고, 기층조직 훈련을 강화하고, 식량운반 연락을 위해 잠입한 공비에 대한 적발, 체포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7월 말까지 공비 지부 적발 총계는 190곳에 달하고 총인원은 1,898명이다.

2) 산구(山區) 공작

불법으로 산구를 차지하고 있는 공비를 소멸하고 체포하기 위해 산구에 전단을 뿌리거나 공비의 친구를 산악지대로 보내 귀순을 권유한다. 혹은 공작원이 직접 산구의 무장공비로 몰래 들어가 공산당에 가입하여 상하관계를 이간질하고 공비의 지도자에게 서신을 보내 부하를 의심하게 하거나 공비귀순자가 지도자에게 귀순 권유문을 보낸 것을 공비에게 넘기는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또는 보초대를 직접 습격하거나 그 인원을 체포하고 무기를 강탈한다.

이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공산당 내에 이미 민생단원이 잠입하였다”라는 홍보였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 큰 동요를 일으켜 불순분자를 제거하게 하였다.

5. 노동소개소

현재 사회제도에 불만을 가진 공산당은 농민 및 노동자 계층을 선동하여 자신의 전위군으로 삼고 자본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유일한 전술로 한다. 이러한 전략전술을 파괴하기 위해 간도협조회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먼저 노동자를 통제하고 귀순자에게 직업소개를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힘을 다한다. 급선무는 그들에 대해 정신적인 지도훈련을 진행하여 근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공산당 홍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소개소 설립을 필요로 한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 보고서)

소개소가 소개한 인원은 총 2,530명(동시에 협조회 회원이 되게 함), 그중 80%는 이미 취업(탄광, 금광, 목재노동자)하였고 약 20%는 노동자가 되었다.

6. 산업부

- 1) 농장경영 - 귀순자 및 무산(無産)회원을 지도하기 위해 1935년 1월 간도성공서는 당시 공유지의 둔전영(屯田營)을 비준하여 본 회 농장으로 바꾸었다. (총경비 1만원) 4월 말 124호가 입주하였다.
- 2) 염색집, 세탁소를 설립하여 부녀귀순자의 실업을 방지한다. 당국의 묵인을 거쳐 개산둔(開山屯), 소백초구(小白草溝) 등 금광을 경영하여 180명 회원을 수용한다.

이상 요약한 것이 협조회의 내용이다.

공산당의 반만항일에 대항하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구호로 노동소개소, 산업부(앞서 소비조합의 설립 건의를 제출함)등 경제활동을 통하여 반공산주의 운동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민중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아래와 같은 방침을 취하였다. '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잔악한 특무활동을 진행하는 협조회를 근본적으로 타도하여야 한다.' 바로 공산당운동같이 일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혁명운동에 대해 만일 실제적인 강력한 대항을 하려면 확정된 목표를 위하여 전진하는 민중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협조회는 공산당 주위에 단결되어 있는 군중을 쟁취하여야만 공산당을 제거할 수 있다.

협조회는 이 방향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한 만주 유일의 단체이다. 간도처럼 공산당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 조직의 설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조회는 비정치단체이다. 그들은 자체적인 강령이 없고, 경제적 활동

역시 매우 소극적인데다 ‘공산당 소멸’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다.

‘공산당 소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중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원증가와 공산당과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때 협조회는 비로소 사상단체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정치단체의 면모를 회복함으로써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 編 『偽滿憲警統治』, 중화서국, 1993년, 184~188쪽〉

2)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1.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1) 조직 개황

‘간도협조회’는 일제의 ‘관동군헌병사령부 연길헌병대’의 특무외곽조직이다. 그 성원의 절대다수는 우리 당, 정, 군 가운데 적에게 투항하여 전향한 자, 혁명군중단체, 항일단체 가운데 전향한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일제의 충실한 주구들이었다.

1931년 일제는 동북을 강점한 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반만항일 세력을 진압하고 중국을 소멸하고 소련을 진공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변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다. 1934년 4월 일제의 연길헌병대 설립과 동시에 일제의 동남방위지구(東南防衛地區) 사령관 사토(佐藤) 중좌, 연길헌병대 대장 가토 하쿠지로(加藤伯次郎) 중좌, 연길독립수비대 대장 다카모리(鷹森) 중좌 등과 밀모하고 전향자 김동한(金東漢)으로 하여금 손지환(孫技煥)·김길준(金吉俊)·태리훈(太利勳)·김영수(金榮秀)·김송렬(金松烈)·허기락(許基洛)·김우근(金禹根) 등 13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1934년 9월 6일 정식으로 간도협조회를 설립하였다. 동시에 선언,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였다.

간도협조회 본부는 연길시 연자가(延字街, 현재의 연길시 진학가(進學街))에 설립하고 일제의 연길헌병대의 소속으로 두고 지도를 받게 하였다. 본부에는 고문 3명, 정·부 회장 각 1명을 두었으며, 본부 아래에 서무부·조직부·선전부·교양부·산업부(산업부하에 전영(田營)과 장지영(張芝營) 2개의 농장집단부락을 두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수한 자와 무직업 회원 1,206호를 배치), 재무부·정보부·귀순계·통역계·노동소개소·특별공작대와 협조의용자위단 등을 두었다.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각 지부, 구회(區會)는 현지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 혹은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에 예속되어 지도를 받았다. 선후하여 모두 5개 지부, 25개 구회를 건립하였고, 본부·지부와 구회는 아래에 총반과 반(부록을 참고)을 관할하였다. 무릇 협조회에 참가하려는 자는 모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진 3장을 교부해야만 정식회원으로 되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1936년 11월 말 기재에 의하면 회원 수는 8,462명에 달하였다. 또 1936년 12월 23일 기재에 의하면 회원 수는 무려 1만 여명에 달하였다.

간도협조회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중에게 ‘반공’, ‘반소’, ‘친일’ 사상을 주입하고, 2. 우리 당, 정, 군의 정보를 수집하며, 3. 우리 당의 지하당조직을 파괴하고 항일 무장 세력과 민중 단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간도협조회는 주요 활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각지에 산재해 있는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방대’하고 ‘엄밀’한 정보망을 형성하여 우리 지하당과 반만항일부대의 활동 및 민심동향을 수집하고, 2) 공작원과 회원들 중에서 정예분자를 선발하여 특별공작대(반)와 사복공작반을 구성하여 우리 근거지에 잠입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지휘기관을 습격하며 지도자를 체포·암살한다. 3) 민중이 우리 근거지에 대한 식량공급을 봉쇄하고 우리 물자 운송대를 습격하고, 4) 자수한 전향자를 이용하여 밀정을 파견하여 우리 지하당 조직과 항일부대에 유인·투항을 권유하거나 혹은 내부에 침입하여 이간·음해활동을 한다. 5) 회원 중에서 정예분자를 선발하여 협조의용자위단을 구성하여 군사훈련을 시킨 후 직접 일제의 관동군과 협력하여 항일부대를 토벌하고, 6) 우리 당, 군이 감추어 놓은 문건, 무기를 찾아내거나 몰수하는 것이며, 7) 노동소개소를 설립하고 직업을 소개해준다는 명분으로 자수를 권유하거나 혹은 자수한 자를 광산, 기업, 벌목노동자들 속에 침투시켜 정보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간도협조회는 설립된 후 선후로 중공 동만특위 대리서기 진홍장(陳鴻章), 특위 조직부장 이상묵(李相墨), 김재수(金在洙), 항일연군 제2군 제1사장 안봉학(安鳳學) 등 우리 지하당원, 항일무장인원 및 혁명군중 2,509명을 유인하여 전향시켰다. 1936년 3월 말의 기재에 의하면 체포되어 전향한 자가 2,284명인데, 그중 공산당원 196명, 공청단원 219명, 항일 무장 인원 158명, 아동단원과 소선대원 183명, 친일회·농민협회·혁명호제회 회원 1,041명, 공회·학생회·부녀대표대회 회원 487명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보총 250자루, 권총 82자루, 탄약 7,568발, 문건 300여 권을 압수하였다. 협조회가 설립된 지 불과 9개월 동안에 우리 지하당 하부조직과 지하 연락처 170곳이 파괴되었다.

1936년 6월 28일 일제의 관동군 헌병사령부, '관헌경전(官憲警電) 제185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간도협조회 중에서 본부 서무부장 김길준, 교양부장 허기락, 산업부장 김우근 등 13명의 정예분자를 뽑아 '협조회 동변도 특별공작부(協助會東邊道特別工作部)'를 구성하고 통화(通化)지구에 파견하였다. 1937년 12월까지 활동하게 하였고, 후에 '협조회 삼강성 특별공작부(協助會三江省特別工作部)'에 편입시켰다. 그 해 12월 9일 관동군참모장 이타가키 세시로(板垣征四郎)의 결정(關滿憲48號)으로 1936년 12월 27일 간도협조회는 '만주국 협화회'와 합병하였다. 간도협조회 본부 회장 김동한 등 9명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에 편입되었다. 본부특별공작대 부대장 김하성(金河星) 등 35명은 '협화회 간도성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간도성 특별공작부'를 결성하였다(1937년 5월까지 활동하였으며 후에 '협조회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편입되었다). 본부 조직부장 겸 특별공작대 대장 김승렬 등 25명은 '협화회 삼강성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부'를 결성하였다(1938년 10월에 해산되었다). 본부 재무부장 태리훈 등 11명은 자유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협화회 지방 간부를 맡았다.

합병의 본질은, 원래의 간도협조회 중의 정예분자들로 다시 비밀리에 '협화회 특별공작부'를 새로 구성하여 간도협조회의 임무를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2) 간도협조회 조직계통(1934년 9월~1937년 12월)

간도협조회 본부

고문 : 박두영(朴斗榮) · 최윤주(崔允周) · 장원준(張元俊)

회장 : 김동한(金東漢)

부회장 : 손지환(孫技煥)

서무부장 : 김길준(金吉俊) · 김영수(金榮秀)

재무부장 : 태리훈(太利勳)

선전부장 : 권영천 · 김영수(金榮秀) · 안용정(대리)

조직부장 : 허기락(許基洛)

산업부장 : 김우근(金禹根)

정보계 주임 : 한백순(韓伯淳)

귀순계 주임 : 김하성(金河星)

번역계 주임 : 김영수(金榮秀)

노동소개소 주임 : 김인배(金仁培)

특별공작대 : 대장 김송렬(兼)
부대장 김하성(兼)
부대장 유중희(柳重熙)
의용자위단 : 단장 원치상 이응범(李應範)

지도관: 김동훈(金東勳)
본부 공작원: (생략)
본부직속(후에 연결현 지부로 변경)
연길 구회
조양천 구회
동불사 구회
노두구 구회
이도구 구회
삼도구 구회
팔도구 구회
도문 구회(1936년 8월 21일 도문 지부로 변경)
양수천자 구회(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용정 구회
개산툰 구회

왕청현 지부 (원배초구 지부, 1934년 11월 27일 건립)
왕청 구회 (대두천 구회)
배초구 구회 (1936년에 연결현 지부에 예속됨)
춘양 구회 (이수구 구회, 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나자구 구회 (1936년 8월 21일 지부로 변경)
대황구 구회(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안도현 지부(1936년 1월 15일 건립)
양강구 구회
대전자 구회
대포시하 구회

명월구 특별지부(1934년 10월 20일 성립. 1935년 9월 구회로 개칭. 연길현 지부에 예속됨)

돈화현 지부(1935년 12월 24일 건립)

액목 구회

마호 구회

관지 구회

교하 구회

신참 구회

(3) 부록

[부록 1]

간도협조회, 강령, 규약¹¹⁾

선언

현재 국제 형세의 치열한 변화와 신흥 만주국의 성장은 동아 민족의 빠른 각오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 민족의 일원으로서, 신흥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심각하게 내외다사(內外多事)한 비상시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반드시 역사적·사회적인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연히 협애한 민족 감정과 현실에 대한 불만 및 착오적인 계급투쟁 사상을 견결히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동심, 협력하여 한 갈래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의 임무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과도기의 편협하고 산만하고 통제가 없고 불합리하며 경솔한 운동 상황을 청산해야 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건설적인 전투원이 되어야 하며, 민중이 갈망하는 현재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행복한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하며, 더욱 광범한 영역 내에서 대아시아를 목표로 동아 각 민족의 대동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 엄숙한 비판하에서 진일보하여 모든 외래사상을 엄격히 조사하고 완벽한 아시아 정신을 발양함으로써 만주국이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며, 대아시아를 영원히 번영시키도록 하는 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11) 일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임.

강령

1. 우리는 제일 건전한 사상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2. 우리는 사회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협애한 민족관념을 버리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해야 한다.

규약

제1조 본회는 '간도협조회 본부'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회의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본부를 간도 연길에 설치한다.

제4조 본회는 본회와 서로 같은 목표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 협력한다.

제5조 본회 회원은 반드시 본회의 강령을 승인하여야 하며, 본회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일체 결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본회 회원은 반드시 2명 이상 회원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본회가 동의하여야 본회 회원으로 될 수 있다.

제7조 본회 조직기구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무부 1명

재무부 1명

조직부 약간 명

선전부 약간 명

교양부 약간 명

산업부 약간 명

제8조 고문은 본회의 자문공작을 담임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관리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사정에 의하여 부재중일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서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협조하여 일체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 그들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재무부, 조직부, 선전부, 교양부, 산업부 등은 각자가 분담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13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본 회의 지부는 필요한 지방에 두고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분회는 본 회의 규약을 따른다.¹²⁾

제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순익금, 보조비 및 각종 부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실행한다.

추가)

제1조 본 회 회원 가운데서 본 회 공작과 관계가 있는 주요성원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미 발급한 서식의 회원표장을 휴대해야 한다.

제2조 일반 회원은 반드시 가슴에 마크를 달아야 한다. (실시하지 못했음)

[부록 2]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의 간단한 정황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가 설립된 후 그 악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부, 지부, 구회가 부동한 시기에 공작원과 회원 중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을 뽑아 구성한 특별행동대이다.

그 주요활동은 우리 지하당 조직과 반만항일 무장부대를 파괴하고 와해시키며 일위군경과 협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지회기관을 습격하여 지도자를 체포하고 암살하며 민중이 우리 근거지에 대한 식량공급을 봉쇄하고 우리 물자 운수대를 습격하고 우리 내부에 침투하여 유인하고 전향을 권유하며 이간하고 무함하며 역모하고 전향을 접수하는 등 최악적인 활동이었다.

특별공작대는 정·부대장을 제외하고 고정인원과 고정된 지점에서의 활동이 없었고 다만 그 활동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공작대(반), 사복공작반, 종군공작반 등을 조직하였다.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와 협화회가 서로 합병될 때까지 줄곧 활동하였다.

12) 이 문서에서 제15조와 제16조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록상의 오류이다. 자료 中央檔案館等 編, 『偽滿憲警統治』, 中華書局, 1993, 192쪽에 근거하여 위의 제15조의 내용이 확인됨.

특별공작대 편성 현황

△ 본부 특별공작대

지휘 김송렬(金松烈)
 허기열(許基熱)
 최영혁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윤정일(대황구 구회 공작원)
 방두천(대황구 구회 공작원)
 최도권(대황구 구회 공작원)

공작대는 1935년 9월 1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당일에 대황구 구회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왕청현 요녕구 산구에 가서 활동하였다.

△ 본부 특별공작대

지휘 김송렬(金松烈)
공작원 김동렬(金東烈)
 허기열(許基熱)
 강현묵(姜鉉默)

공작대는 1935년 9월 19일에 양수천자 고려령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식염운수대를 습격하여 말 2필, 식염 4마대와 기타 물품을 노획하였다.

△ 본부 안도현 특별공작반

지휘 김송렬(金松烈)
정보계 한백순(韓伯淳)
수색계 정성충(명월구 지부 반장)
지부설치계 문관오(文寬吾, 명월구 지부 서무)
반원 강현묵(姜鉉默)
 최영혁
 허진성
 김중식(金仲植) (명월구 지부 공작원)

공작반은 1935년 12월 22일 본부에서 출발하여 12월 27일에 안도현성(송강)에 도착하여 활동하였으며 1936년 1월 15일 안도현 지부를 설립한 후 복귀하였다.

△ 본부 돈화 특별공작대

지휘 이경빈
대원 허기열(許基熱)
박용찬
이동화(李東華)
이영일
한영휘(韓英輝, 돈화현 지부 공작대)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대)
이한원(돈화현 지부 공작대)

공작대는 1936년 1월 17일에 돈화현 지부에서 출발하여 관지, 사하연 등지에서 활동한 후 1월 23일에 복귀하였다.

△ 본부 나자구 특별공작반

지휘 한일(韓一, 왕청현 지부장)
서무계 김형준(대황구 구회장)
재무계 김성기(삼도구회 서무)
정보계 김동렬
제1분반장 김형준(겸)
반원 김성기(겸)
반원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반원 장원경(조양천 구회 공작원)
제2분반장 김동렬(겸)
반원 윤정일(대황구 구회 공작원)
김범주(왕청현 지부 공작원)
김병권(명월구 지부 공작원)
최도권(대황구 구회 회원)

공작반은 1935년 12월 30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1936년 1월 5일에 나자구에 도착하여

활동하였으며 2월 19일 나자구 삼도하자에서 중공 동만특위 조직부장 김재수 등 중요한 간부 4명을 체포하고 3월 초순에 복귀하였다.

△ 본부 돈화 특별공작반

지휘 김송렬

정보 및 경리 박용찬

제1분반(보총대) 반장 이경빈

반원 이한일

한린성

이영일

제2분반(보총대) 반장 한영휘

반원 박용일(돈화현 지부 공작대)

주기춘(돈화현 지부 공작대)

정창우(돈화현 지부 공작대)

최문송(돈화현 지부 공작대)

제3분반(권총대) 반장 허기열

반원 최영혁

강현묵

김용찬(이수구 구회 공작원)

이홍범(돈화현 지부 공작원)

제4분반(권총대) 반장 김남일

반원 허진성

이동화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원)

공작반은 1936년 2월 2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당일에 돈화에 도착하여 항일의용군 제3려에 대하여 투항권고활동을 진행한 결과 제3려 부관 마영구 등 50명이 투항하였다. 공작반은 2월 말에 복귀하였다.

△ 본부 제1특별공작대

지휘 기쿠치(菊地, 도문 헌병분대 헌병오장)

미호리(未掘, 헌병)

대장 김승렬

부대장 겸 서무 박용찬

대원 원정환(동불사 구회 공작원)
 장병활(왕청현 지부 공작원)
 한원석(왕청현 지부 공작원)
 허기열
 허진성(노두구 구회 공작원)
 채근(왕청구 회장)
 오기준(왕청현 지부 공작원)
 최동규(양수천자 구회 공작원)
 윤정일(춘양 구회 공작원)
 최영부
 강태권(명월구 구회 공작원)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황시준(왕청현 지부 공작원)
 이성백(나자구 구회 공작원)

공작대는 1936년 5월 중순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5월 22일 영안현 남호두 등지에 도착하여 ‘유격구 탐사’ 활동을 하다가 6월 중순에 돌아왔다.

△ 본부 제2특별공작대

지휘 사토(佐藤, 헌병오장)
 스키키(杉木, 헌병상등병)

대장 유중희

제1반장 김동렬

반원 한영휘
 김중식(안도현 지부 공작원)
 정창우(돈화현 지부 공작원)

반원 위봉조(돈화현 지부 공작원)

제2반장 강현묵

반원 이한원
 이상목
 제3반장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원)
 반원 주기준(돈화현 지부 공작원)
 강옥림
 정석구

공작대는 1936년 5월 18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돈화현 일대에 도착하여 활동하였다.

△ 본부 제2특별공작대

대장 유중희
 정보계 강태범(삼도구 구회장)
 경리계 김민건(명월구 구회 서무)
 대원 원기범
 한성림
 강만수(노두구 구회 회원)
 김민건(검)
 제2분대장 남성규
 대원 전국정
 최석환(노두구 구회 회원)

공작대는 1936년 10월 22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일본 ‘연길헌병분대’ 대장의 지휘하에 안도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 주 : 각 지부, 구회의 특별공작반, 사복공작반, 종군공작반 등은 모두 생략한다.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 선언, 강령, 행동강령

선언

서양인의 침략정책과 소련의 원동 침략은 이미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재 아시아 민족은 이것이 본인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민족은 일치단결하고 공동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선구자 일본을 맹주로 하여 동아시아 제 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하고 아시아의 영원한 번영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아시아의 건설로 하여금 휘황한 성과를 취득하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각 민족의 협화 아래 반드시 협애한 민족관념을 포기하고 외래의 비현실적인 공산주의를 소멸하여 부강한 아시아 민족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건설하는 것을 완성해야 한다.

강령

- 협애한 민족관념을 포기하고 아시아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해야 한다.
- 조직건설을 강철처럼 견고히 하여 외래에서 온 공산주의를 소멸해야 한다.
- 민족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행동강령

- 반소·친일 사상을 배양, 선전해야 한다.
- 공산당 및 항일반만군의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충실한 자를 잠입시킨다.
- 일반 민중 속에 충실한 자를 잠입시킨다.
- 공산당 및 항일반만군의 침투활동을 적발한다.
- 긴급시기의 대상 : 평일에 약간 명을 뽑아 비적에 대한 결사정신행동에 참여시키고 인물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훈련을 강화하여 소련에 대한 긴급시기에 모략을 사용한다.

[부록 3]

협조의용자위단의 간략한 정황

협조의용자위단(약칭 자위단)은 간도협조회 본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는 반동적인 무장단체이다. 간도협조회는 성립된 후 1934년 10월 20일에 각지 회원 가운데서 '대만주의 치안수비공작과 일본군의 행동을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90여 명의 정예분자

를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자위단에는 단장, 지도관이 각각 1명 있었고, 이들이 단의 모든 행동을 통일관리하였다. 단부에는 서기국, 선전조직연락부, 정보부, 훈련부가 있고 아래에 2개 분단, 8개 반(지금의 안도현 석문공사)을 설립하고 제1분단은 남류수구에, 제2분단은 차조구에 주둔하였다. 자위단 성원은 모두 황색 군복을 입었고 무기를 휴대하였다. 단장과 지도관은 대위 직함을, 분단장은 소위직함을, 교관은 준위, 반장은 상사, 단원은 상등병·중등병·하등병 등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성원들은 모두 고정월급을 받았다.

자위단이 성립된 후 먼저 차조구에 집중하여 연길 독립수비대 대장 다카모리(鷹森) 중좌, 카네코(金子) 소좌의 지휘하에 3개월간 군사훈련을 진행한 후 우리 지하당, 항일 무장부대의 활동정황을 수집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요하게 직접 일본 '토벌대'와 본부특별공작대(반)를 협력하여 도목구 신선동, 차조구 계산관, 유수천 등지에 가서 여러 차례 군사 '토벌'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당, 군의 활동에 일정한 어려움과 손실을 주었다.

1935년 9월 5일 일본 관동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자위단을 위만경찰기구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는데 성원의 절대다수가 괴뢰 경찰로 충당되었다.

간도협조회 본부 의용자위단 조직계통(1934년 10월부터 1935년 9월까지)

단장 : △원치상, 이응범
지도관 : 김동훈
서기장 : △이응범, 최만형, 이동수
서기 : 김렬
교관 : 허태봉

* 주 : △호는 1935년 4월 전의 임직

제1분단장 : 정순섭, 허태봉(대리)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2분단장 : 이경빈

- 제1반
- 제2반
- 제3반
- 제4반

협조의용단의 부서, 조직 및 단원의 의무

책임자

- 서기국
- 선전조직연락부
- 정보부
- 훈련부

군현

단책임자

- 선전조직연락부
- 정보부
- 훈련부
- 서기국

- 단책임자는 직접 일본군, 헌병과 연락하고 단의 전체를 지도한다.
- 선전조직연락부는 엄밀하게 단의 존재 의의를 조직, 선전하고 각 층을 조직하여 긴밀한 연락을 책임진다.
- 서기국은 단책임자 및 각 부의 연락을 책임지고 모든 문건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 정보부는 공산당, 반일만군 및 소련의 책략과 구미 각국의 아시아에 대한 음모와 정책 등을 수집하고 대중 속에 잠복해서 공작을 진행하는 자를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 훈련부는 예비훈련을 책임지며 만일에 긴급정황이 발생하고 위기에 처할 때에 정찰공작을 완성하는 데 편의를 도모한다.
- 반드시 단원은 불법단원 및 불법회원의 모든 회보공작에 대하여 매우 태만할 때 마땅히 그 권력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명령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 단원이 중요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정황에 근거하여 엄격한 처벌을 준다.

〈출전 : 間島協助會의組織概況, 吉林省 公安廳 檔案室, 第3全宗 第8目錄 第63號 중에서〉

3)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1935년 5월 19일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중략)

작년 9월 초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공비(共匪) 소멸 공작을 실행할 때 본 회의 정신 완성 및 임무를 체득한 본부 및 지부 구회 간부 공작원들은 헌병대 본부대장 혹은 본부 회장으로 부터 표창, 격려를 받고, 이후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간부 및 일반 회원의 모범으로 되었기 때문에 표창받은 자를 기록한다.

함연호(咸演皐): 본회 선전부원, 수비대 치안공작반 선무원(宣撫員) (헌병대장이 돈을 지불함)

강항윤(康恒潤): 위와 동일함

이응범(李應範): 본부 공작원, 의용자위단

김동훈(金東勳): 본부 공작원, 의용자위지도원(위와 동일)

최하성(崔河星): 동 구회 구도구총반장(위와 동일)

김 파(金 波): 동 구회 반장(위와 동일)

김동호(金東浩): 동 구회 회원(위와 동일)

김송렬(金松烈): 본부 간사(위와 동일)

허기열(許基熱): 본부 공작원(위와 동일)

임정석(任晶石):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황상순(黃尙順):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김용하(金龍河):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황석준(黃石俊): 당시 왕청 지부 공작원(위와 동일)
 김윤언(金允彦):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장준걸(張俊傑):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석창준(石昌俊):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이성백(李星伯):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채 근(蔡 權):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강기홍(姜基弘):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임병권(任秉權):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병□(□秉□):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1. 간도협조회 일반 조직상황

본회는 1934년 9월 6일에 조직되었으며 연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된 후 9개월 동안 당국의 엄격한 지도와 일반 민중의 지지로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의 간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치안공작 임무의 일부를 완성하고 동시에 일반 민중의 사상을 지도하였다. 때문에 만주국 발전에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동아 민족의 문화 및 번영을 거부하는 홍색조직을 소멸하고 홍색사상의 연고(緣故)를 근절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내부에 견고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투쟁이라도 강대한 조직으로 다른 하나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회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농촌, 도시(1행 누락) 깊이 있게 필요하게(글자 누락) 조직 일반을 진행하며(글자 누락) 공산당 내부를 조사하고 와해공작에 힘을 다하고, 각 지부 및 구회가 회원 중의 순결한 자를 규합하여 협조의용단을 조직하고 본회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쉬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협조의용단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역으로 한다. 무직업자 및 귀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조회 노동소개소를 설립한다. 방만하고 무통치하에 있는 금광노동자, 탄광노동자, 목재노동자 일부를 받아들여 그들이 본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강철 같은 조직으로서 외래사상운동을 소멸하는 방어군(防禦軍)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2. 간도협조회 조직 통제 상황

1) 조직

본회는 본부를 간도성 연길시에 두었고, 각 현에 현단위의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

아래에 구회를 각 중요한 곳에 두었다(그러나 연결현 내의 특별지부 및 구회는 본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구회 아래에 총반(總班)을 설치하고, 총반 감독하에 반이 있었으며, 한 개 반은 회원 5명 이상부터 10명 이하로 조직되었다.

2) 기능

- (1) 반장은 반 내의 회원 및 부근 민중의 사상경향과 일반적 동향을 감시 조사하고, 1주일에 1회 총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2) 총반장은 관할 내의 각 반장의 보고를 정리하여 소속 지부 혹은 구회에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3) 구회장은 적발된 구내의 일반 정황과 공비의 세포 발전 정황을 조사하여 소속 지부 혹은 본부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 (4) 지부장은 현 내 민중의 사상동향 및 일반 정황을 감시하고 구회의 사무를 통제하고 수시로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통제

- (1) (1행이 누락)
- (2) (글자 누락)
매월 2회 혹은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3) 각 지부 및 구회는 절대적으로 본부회장의 명령에 복종한다.

3. 본부, 지부 및 구회 설치 연월일

- 1) 본부 : 1934년 9월 6일 조직됨.
- 2) 본부는 구회를 직접 관할함.
 - (1) 팔도구 구회(八道溝區會), 1934년 10월 7일 조직됨.
 - (2) 조양천 구회(朝陽川區會), 1934년 10월 9일 조직됨.
 - (3) 이도구 구회(二道溝區會), 1934년 10월 19일 조직됨.
 - (4) 노두구 구회(老頭溝區會), 1935년 1월 31일 조직됨.
 - (5) 동불사 구회(銅佛寺區會), 1935년 2월 1일 조직됨.
 - (6) 삼도구 구회(三道溝區會), 1935년 2월 10일 조직됨.
 - (7) 노동소개소(勞動紹介所), 1935년 1월 7일 조직됨.

3) 지부

- (1) 명월구 특별지부, 1934년 10월 20일 조직됨.
 - (2) 왕청현 지부, 1934년 10월 27일 조직됨.
- 4) 지부는 직접 구회를 관할함(왕청현 지부)
- (1) 대두천 구회, 1934년 2월 14일 조직됨.
 - (2) 대항구 구회, 1934년 2월 13일 조직됨.

4. 본부 및 지부, 구회 간부 조직표

1) 본부

- (1) 고문 박두영(朴斗榮), 최윤주(崔允周), 장원준(張元俊)
- (2) 회장 김동한(金東漢)
- (3) (글자 누락)
- (4) 조직부장 김송렬(金松烈)
부원 유중희(柳重熙)
강항윤(康恒潤)
- (5) 선전부장 부원, 함연호(咸演皐)
- (6) 교양부장 허기락(許基洛)
부원 한백순(韓伯淳)
- (7) 산업부장 김우근(金禹根)
부원 허동환(許東煥)
- (8) 번역계 주임 김영수(金榮秀)
계원 유중희(柳重熙)
- (9) 귀순계 주임, 계원 염면홍(廉冕弘)
계원 김하성(金河星)
- (10) 정보계 주임 한백순(韓伯淳)
- (11) 노동소개소 주임 김인배(金仁培)
소장 김길현(金吉鉉)

2) 왕청현 지부

- (1) 고문 한상우(韓相愚)
- (2) 회장 한일(韓一)

- (3) 서무부 최영엽(崔榮焂)
 - (4) 재무부 최선(崔瑄)
 - (5) 노동소개소 출장소 주임 한영휘(韓英輝)
 - 동 서기 황석준(黃石俊)
 - 김범주(金範疇)
 - 김상렬(金相烈)
- 3) 명월구 특별지부
 - (1) 회장 김남규(金南奎)
 - (2) 서무부 문관오(文寬吾)
 - (3) 재무부 김진무(金振武)
 - (4) 노동안내소 출장소 주임 김흥찬(金興燦)
 - 4) 조양천 구회
 - (1) (글자 누락)
 - 5) 팔도구 구회
 - (1) 회장 서상용(徐相庸)
 - (2) 서무 한정원(韓鼎元)
 - 6) 동불사 구회
 - (1) 회장 최윤(崔允)
 - (2) 서무 김한규(金翰奎)
 - 7) 노두구 구회
 - (1) 회장 이봉남(李鳳南)
 - (2) 서무 조만기(趙萬基)
 - 8) 이도구 구회
 - (1) 회장 양종식(梁宗植)
 - (2) 서무 한명준(韓明俊)
 - 9) 삼도구 구회
 - (1) 회장 강태범(姜泰範)
 - (2) 서무 김성기(金聖基)
 - 10) 대두천 구회
 - (1) 회장 곽 서무 채근(蔡謹)

- 11) 대황구 구회
 - (1) 회장 겸 서무 김동준(金炯俊)

5. 총반, 반 및 회원 수

- 1) 본부 관할
 - (1) 총반 9
 - (2) 반 36
 - (3) 회원 674명
- 2) (1행 누락)
- 3) (1행 누락)
- 4) (1행 누락)
- 5) 조양천 구회 관할
 - (1) 총반 16
(금자 누락)
- 6) 동불사 구회 관할
 - (1) 총반 10
 - (2) 반 56
 - (3) 회원 456명
- 7) 노두구 구회 관할
 - (1) 총반 6
 - (2) 반 39
 - (3) 회원 1,105명
 - (4) 탄광노동자 총반 3
 - (5) 탄광노동자 반 57
- 8) 이도구 구회 관할
 - (1) 총반 2
 - (2) 반 10
 - (3) 회원 145명
- 9) 삼도구 구회 관할
 - (1) 총반 8

- (2) 반 29
- (3) 회원 169명
- 10) 대두천 구회 관할
 - (1) 총반 없음
 - (2) 반 7
 - (3) 회원 54명
- 11) 대황구 구회 관할
 - (1) 총반 없음
 - (2) 반 4
 - (3) 회원 43명

6. 지부, 구회, 총반, 반 및 회원 통계

- 1) 지부 11
- 2) 구회 8
- 3) 총반 91
- 4) 반 476
- 5) 회원 5,509명

7. 본부, 지부 및 구회 공작원

- 1) 본부 이원(李元), 김동렬(金東烈)
 강현묵(姜鉉默), 이동화(李東華)
 허희열(許熙烈)
- 2) 명월구특별지부 조병권(趙秉權)
 김중식(金仲植), 강태권(姜泰權)
- 3) 왕청 지부 손학무(孫學武), 장병호(張炳浩), 한원석(韓元錫)
- 4) 조양천 구회 지장순(池章淳), 장원순(張元淳)
- 5) 팔도구 구회 심병남(沈秉南)
- 6) 동불사 구회 원정완(元正完)
- 7) 노두구 구회 최석범(崔石凡)
 김남길(金南吉)

- 8) 이도구 구회 김정훈(金政勳)
- 9) 삼도구 구회 남형우(南衡宇)

〈출전 : 間島協助會第一回全體大會, 第3全宗 第8目錄 第63號, 吉林省 公安廳 檔案室 중에서〉¹³⁾

4)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동변도 명랑화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의 희생적 노력에 의하여 각 지방의 치안과 숙청공작은 현재 완전한 진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간 활동한 성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공비계(共匪系) 체포 524, 사살 24, 무장해제 4, 합계 552
- ◇ 조혁비계(朝革匪系) 체포 92, 사살 2, 무장해제 51, 합계 146
- ◇ 정치비계(政治匪系) 체포 116, 무장해제 13, 합계 129
- ◇ 토비(土匪) 체포 317, 사살 1, 무장해제 61, 합계 379

이상 총합계 1,206명

〈출전 : 東邊道明朗化—協和會東邊道特別工作部成績 『在滿朝鮮人通信』 42호, 奉天興亞協會, 1937년, 4 쪽〉

13) 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필사한 내용을 전제하였음.

1959년 6월 25일 필사.

필사인 : 유의(劉義).

위의 내용은 길림성(吉林省) 철로국(鐵路局)公安처(公安處) 당안실(檔案室) 제십호안권(第十號案卷)에서 필사.

1981년 8월 10일

필사인: 김형린(金衡燦, 도문시사범학교 교원).

5)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1931년 10월 28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다니(谷) 외무성 아시아 국장 앞
통보 요지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조병상(曹秉相), 박석운(朴錫胤) 등의 민생단 조직 계획에 관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경성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이사, 동 민회 이사 조병상,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운은 민족주의자 이인선(李仁善) 및 김동한(金東漢)과 같이 용정에 와서 남만주 지방에서의 우리 군사 행동 시 간도에 출병하는 것은 재주 조선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좋은 기회라고 각 방면에서 역설하고 있으나, 우리의 군사 행동과 간도 지방의 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방 상태는 매우 평온하여 출병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병은 도저히 예정이 없음을 이해하고 있어 운동 책략을 조선인 차별 대우 철폐 조약 이행을 중국 관헌에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운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온 이인선 및 김동한으로 하여금 민족운동 한족연합회 측의 김정일(金廷一), 전성호(全盛鎬)를 만나게 하여 책동하려고 하였으나 전성호 등은 종래의 관계상 조, 박 등의 책동을 밀고하고 한편으로 경찰부 안(安) 경부보에게 영사관의 의향을 살피게 하는 등 가볍게 이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면 재주 조선인의 대부분은 시국의 추이를 고려하여 표면상으로는 본 운동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자발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열의가 부족합니다. 조, 박 등의 민중운동도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아, 마지막에 간도 재주 조선인의 자각을 촉진하고 자위를 위해 서로 단결하여 산업인으로서의 생존권의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도 훈춘 조선인 민회장 및 재간도 동포 구제단장 김택현(金澤鉉) 등의 원조를 받고, 자치촉진회 및 재한화교위문단 등의 이해를 구해 10월 7일 별지 사본대로 민생단 조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동 원서에는 단의 규약 및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병상은 10월 8일, 박석운은 10월 11일 간도를 출발하여 경성으로 돌아가 총독부 당국에게 민생단 조직계획을 설명하며 '요해운동(了解運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박석운이 간도 총영사관 직원에게 보내 온 통신문에 의하면 빠른 시일에 이인선, 김동한 두

명을 조직준비를 위해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사명은 (1) 40만 주민의 생활안정 방법을 논의하고 생활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를 만들 것 (2) 적절한 시기에 민생단과 합류시킬 복선을 만들 것 (3) 구역을 간혹4현(間瓊4縣)에 절대적으로 한정하여 그 지역 외의 어떠한 인물·단체·운동과 엄격하게 단절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중파 및 민족파의 인물들을 앞으로 단결시켜 마침내 점차적으로 민생단으로 대동단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11월 민생단 발회식을 위해 간도로 올 것이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 영사관 측의 원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본 운동은 대체로 총독부 측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인선, 김동한 두 명은 앞에서 기술한 사명을 갖고 지난 24일 간도로 왔습니다. 민회장 및 동포 구제단장이 민생단 조직을 원조하게 된 동기는 민회장 등은 조, 박 두 명의 간도시찰 시 두 명의 말투로부터 조선총독부의 내명으로 온 것이라 믿고, 이 단체에 대해 상당한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조가 없다면 가령 형식적으로 본 단 설립을 하더라도 장래의 발전은 힘들 것입니다.

조, 박 두 명과 거의 동시에 간도에 온 조선총독부 다나베(田邊) 통역관은 민생단의 조직운동에 관해 10월 7일 경무국장 앞으로 “조, 박의 두 명은 온건한 목적을 표방하여 단체를 조직하려고 운동 중이나 성립 후에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간도에서 조선인의 자유 획득 내지는 독립 선언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드디어 간도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 모든 풍조가 조선에 파급되어 조선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조, 박 두 명의 단체조직운동은 저지함이 지당하다”는 내용의 전보를 발신했습니다.

민생단 조직은 합법적으로 조직 진행 중으로, 그 목적은 요컨대 간도 재주 조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욱 향상 발전을 기하는 데 있으므로 총영사관으로서도 이를 원조하고 동 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유지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의 제출을 기다려 조선총독부와도 협의한 뒤 허가할 방침입니다.

허가원(許可願)

1. 위치 간도 용정시
2. 명칭 민생단
3. 목적 간도 주민의 생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위의 민생단을 설립하기 위해 별지의 취지서 및 강령을 첨부하니 특별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년 10월 7일

원적 경성부 관훈동 197
주소 간도 용정촌 제1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조병상(曹秉相)

원적 경성부 종로 6정목
주소 간도 용정촌 제1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박석윤(朴錫胤)

원적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양화면(陽化面) 남안(南案) 1리
주소 간도 용정촌 제4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이강재(李康在)

원적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면 본정84
주소 간도 국자가(局子街) 상부지(商埠地) 내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최윤주(崔允周)

원적 함경북도 경성군 종성면 청강동(淸江洞)
주소 간도 용정촌 제2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김택현(金澤鉉)

재간도 일본제국 총영사관
총영사 오카다 켄이(岡田兼一) 전(殿)

민생단 취지 및 강령

1. 취지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를 직시하여 우리 40만 동포의 현실에 맞는 생존권을 확보, 확

충해야 하는 절대 시기에 당면하였다. 형식적인 이론이나 계획 없는 파괴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 우리의 활로는 오직 인류의 기본 권리인 자위, 자주, 자립에 있을 뿐이다. 대지 위에 힘 있게 발을 내딛고 국면을 크게 살피고 심혈을 기울여 하루에 천리를 가는 기세로 이에 자유낙토를 건설해야 한다. 생활의 산업화야말로 유일한 활로이다.

2. 강령

- 1) 현실에 맞게 산업인으로서의 생존권 확보를 도모한다.
- 2) 세계 대세에 순응하며 독특한 문화의 건설을 도모한다.
- 3) 일치단결하여 자유로운 천지를 개척한다.

〈출전 : 民生團組織二關スル件, 1931년 10월 28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8, 고려서림, 2001년, 918~927쪽〉

6)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1929년 9월 21일자 재통화(通化) 가쓰무라(樫村) 분관 주임 발신 시데하라(幣原) 외무 대신 앞 전보 요지

한족동향회(韓族同鄉會) 내정에 관한 건

한족동향회 간부를 시작으로 회원의 대부분은 점차 온건해져 우리 측에 귀순하려는 경향이 현저한바, 동 회가 조직된 이래 이미 1년이 지나 그 사이 경비의 궁핍함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불령단 측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합동하여 새롭게 국민부를 조직하여 반동단체의 배격에 기세를 올려 동향회에 대해서도 협박선전문을 송달해 왔습니다. 이때 이를 방치하면 무기도 없는 동향회는 극도의 재정난에 빠져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불령선인단에 유린당할 운명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처럼 회유해 온 동향회가 다시 불령화하거나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면 참으로 유감이고 또 동 회의 존속 여부는 모두 재만 친일단체의 흥망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동향회 조직 이후의 경과를 다음에 기술하니 참고하시고 동시에 이 단체의 구제방법에 대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참의부의 현황

참의부는 정의부와 함께 전통의부로부터 분열한 것으로 참의부의 주요 분자는 가장 과격하고, 집안현(輯安縣) 일대 환인현(桓仁縣, 서남부 제외) 및 통화현(서부 제외)에 있는데 지역이 협소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민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군자금의 조달은 주로 조선 내부로 침입하여 많은 살인 및 약탈 등의 행위를 감행하기 때문에 그 해독을 끼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 단체 중에는 유식계급(有識階級)으로 칭할 만한 자가 없어 이를 통솔할 책임자가 없는 관계상 무력파로서 권모술수에 능한 김조하(金筱廈)는 절대 실력을 가지고 무력과 중의 하나인 심용준(沈龍俊), 최지풍(崔志豐) 일파를 몰아내었습니다. 그 후 상하이 방면으로부터 김희산(金希山), 김강(金剛), 마덕창(馬德昌) 등이 들어오자 통화 지방에 있던 한의제(韓義濟) 일파가 이에 가담하여 면목을 일신하고 민중의 의향을 살펴 기존에 고집해 온 흉악한 행동은 점차 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명칭을 참의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심용준(沈龍俊)이 복귀하여 그 일파는 줄곧 참의부를 장악할 방법을 시도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김희산, 김조하, 김강 등이 삼부통일회의를 위해 길림 방면으로 떠나자 그 틈을 타 무력단의 중견인 차천리(車千里) 외 다수의 반대분자를 살해하고 참의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남은 반동분자는 통화 분관이 미리 자치를 중용하여 극비리에 회유하고 있던 온건파와 내통 협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분관에서 무장단 토벌을 결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그 중견인 중대장 김상옥(金相玉), 김창주(玄昌周) 이하 가장 용감한 군인으로 칭해지는 자 24명의 체포를 원조하고 또 무기 및 주요 물품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온건파는 분관으로 귀순하고 이어 참의장 김희산 및 김강 등 참의부의 주력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의부는 자기의 기반과 근거를 잃고 명실 공이 무너졌으므로 심용준, 김조하, 이영희(李永熙), 최재경(崔在京), 박대호(朴大浩) 등의 잔당이 여전히 제멋대로 날쳐도 심용준, 최재경, 이영희 등 누구도 정의부로 달려가 행동할 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2. 자치단 선민부(鮮民府)의 조직

온건분자로 불리는 자는 통화 조선인 민회장 이동성(李東成) 및 제5공서장 이기술(李己述)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각 공서장 및 재무위원장 한의제, 고동호(高東浩), 독고욱(獨孤旭), 기타 이에 속하는 자 및 무력과 중 이에 공감하는 자가 일제히 일어나 귀순의 수속을 밟고 장래의 계획에 대해 지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관에서는 보호하에 이들을 작년 10월 통화현 하강산(下崗山) 이도구에서 농민대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부러 중국 관헌 및 다른 불령단의 눈을 피할 필요가 있어 대회 석상에서 결의 한 뒤 선민부(鮮民府)라 명명하고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무력단을 절대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온건한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조직할 것을 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례없이 특수자치단체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교동향회의 성립

이렇게 하여 선민부가 조직되어 자치단이 성립되었으나 참의부의 잔당은 정의부와 합동하여 계속 무력으로 선민부 세력권 내를 침범하였습니다. 참의부 내변 당시 참의장 대리인 이영희 및 심용준, 박대호 및 구 참의부 제3중대장 최지풍(崔志豐)의 부하 최재경(崔在京) 일파는 참의부 부흥 내지는 실권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 하여 동향회원 및 농민의 암살을 기도하며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관에서는 이들의 검거를 결행하기로 하고 자치단 측을 이용하여 1928년 12월 중 심용준 일파의 체포를 위해 집안현에 출동하였습니다. 이때 단원 수명은 동현하 지방 관헌에게 불령단 침입을 신고하여 체포를 신청하였는데 각자 권총을 휴대하고 있어 당국 관헌이 이들을 의심하고 불령단으로 생각하여 신병(身柄)을 억류한 뒤 권총을 몰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반환 교섭을 했으나 완고하게 응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래 통화 분관은 중국에 대한 음모를 획책하는 중심지 운운하며 안동(安東) 교섭원에게 보고하였고 동 교섭원이 봉천성 당국은 물론 멀리 남경정부에 통보한 결과 성 당국은 관하 각 현 현장에게 엄중 단속하라고 발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관헌의 태도가 급변하여 진척되고 있던 불령선인 검거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중도에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언급한 대로 불령단 측으로부터의 협박을 막아 가며 이를 유지해 가기는 경제상 곤란하므로 표면적으로는 방침을 바꾼 것처럼 위장하여 자치단은 분관의 도움을 떠나 독자적으로 중국 측 관헌에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조직하여 보호를 받는 운동을 시도하였는바, 중국 관헌 측도 대개 양해하고 있으므로 분관에서는 비밀리에 이들을 비호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욱이 선민부의 명칭을 바꿔 한고동향회로 명명한 이래 통화, 환인 두 개 현(정의부의 세력범위를 제외함)의 대부분은 조금 안정을 찾았으며 별표대로 회규를 작성한 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 불령단 측의 방해 및 동 회의 유지난(維持難)

동 회의 전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집안 중국 측 관련 당국의 협박으로 동 회의 이를 위한 계획 진행에 있어 일대 좌절이 초래되어 동 현 내에서 회원의 행동이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구참의부 잔당은 관전(寬甸), 집안현 지역으로부터 계속 환인현을 침범하고 나아가 통화현 내에까지 이르러 조선인 농부 계남형(桂南亨) 외 6명의 살상 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원 중의 농민은 불령단의 후환을 두려워하여 인심 이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빈현(新賓縣, 흥경) 내에 도사리고 있는 정의부단은 구참의부 잔당을 원조하고 왕청문(旺淸門)으로부터 환인, 통화 두 개 현 지역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기회로 삼아 이 역시 여러 차례 위의 두 현으로 침입하여 평민에게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이 현저하게 불안해지고 수시로 다액의 금품을 약탈당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동향회에 대한 원한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동향회 측은 회원의 회비를 각출하기가 어려워져 유지할 수 없는 공상에 직면했으나 중국 관현에게 양해를 얻어 횡행 출몰하는 불령단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데는 항상 중국 순경과 동행하여 원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현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토벌할 때에는 출장비 및 소모한 탄환의 보급이 필요하자 경비가 많이 들어 철저한 토벌이 자연히 어려워졌습니다. 동향회는 지난 1년간 경제적 결핍을 견디며 일가족(이 중에는 지인이나 친족에게 처자를 맡기는 자도 있음)이 흩어졌어도 당초의 취지를 바꾸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5. 동향회의 활동 상황

동향회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아내며, 동 회 간부원은 통화현 관민을 내면에서 움직이고 중국부원은 환인현 관민을 양해시켜 타 현에서 모방할 수 없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바,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인 비적 검거에 관해 협력한 수

연월일	검거 선비 명단	단체명 및 지위	적요
1928년 10월 18일	현창주(玄昌周)	참의부 제4중대 소대장	이 사람은 장수 몇 명을 상대할 정도로 용감한 자임
동(同)	탁영선(卓應善)	동(同)	참사
동	김이석(金利錫)	동	병졸
동	박창연(朴昌連)	동	
동	김세하(金世河)	동	
동	홍원흥(洪院興)	동	
동	이용선(李應善)	동	
1928년 10월 24일	김동일(金東一)	동	법무위원장
동	이진하(李珍河)	동	참모
동	윤동빈(尹東彬)	동	소대장
동	송동국(宋東國)	동	참사
동	이정민(李正民)	동	군사위원장
동	한국영(韓國榮)	동	병졸
동	백인제(白麟濟)	동	연락자
동	오상국(吳相國)	동	
동	오경도(吳京道)	동	
동	김창옥(金昌玉)	동	군사위원 겸중대장
동	김원하(金元夏)	동	부사(部士)
동	강태훈(康泰勳)	동	소대장
동	양봉제(梁鳳濟)	동	중대장대리소대장
1929년 2월 8일	김희산(金希山)	동	참의장
동	박창식(朴昌植)	동	교육위원장 겸 군사무관
동	김종성(金種聲)	동	소대장
1929년 2월 24일	박세영(朴世永)	정의부	연락원
동	오병근(吳炳根)	동	
동	이향춘(李香春)	동	
동	김의경(金義京)	동	
동	김원하(金元夏)	동	
동	강매곡(姜梅谷)	동	
동	선성문(宣成文)	동	
동	권승무(權承武)	참의부	연락원
동	최필관(崔弼觀)	동	병졸

동	오창산(吳昌山)	동	
동	김영엽(金永燦)	정의부	연락원
동	선우상(鮮于祥)	동	
동	백운기(白雲起)	동	
동	김응옥(金應玉)	동	
1929년 4월 16일	김성길(金成吉)	동	살인피의자
1929년 4월 19일	송태하(宋泰夏)	동	경무위원장
1929년 5월 18일	임우권(林宇權)	동	연락원
1929년 5월 23일	하상호(河尙鎬)	동	검무위원장
1929년 7월 18일	원희조(元喜祚)	동	연락원
동	김광욱(金光旭)	동	
동	김 순(金 順)	동	
동	김경수(金景守)	동	
동	최학성(崔學成)	동	연락원
1929년 7월 22일	김성현(金成軒)	동	연락원
동	정봉국(鄭鳳國)	동	

동향회 중국 측 관헌과의 협력 불령도(不逞徒) 토벌표

연월일	지명	토벌 상황	결과
1929년 2월 18일	환인현 황전자(荒甸子) 삼송배(杉松背) 정차구(程岔溝)	참의부 잔당 박대호 (朴大浩)의 부하 11명 과 교전함	불령문서 수첩 압수함
동년(同年) 2월 28일	동(同) 현 마원자(馬園子) 상루하(上漏河), 협피구(夾皮溝), 대남차(大南岔), 삼송배(杉松背), 이차구(裡車溝) 노흑산(老黑山), 집안현(集安縣), 고마령(古馬嶺), 관전현(寬甸縣), 삼도구(三道溝)	동(同) 박대호, 이영 희의 부하 3명과 교 전함	
동년 3월 16일	환인현 앵앵구(鶯鶯溝)	정의부 무장단 8명 과 교전함	2명을 체포하고 권총2정 압수함

동년 3월 26일	환인현 □령	심용준 부하 홍치봉(洪致鳳) 이하 4명을 추격함	
동년 4월 9일	동 시랑구(豺狼溝)	동 부하 이청수 외 4명과 교전함	불령단이 남기고 도망간 의류, 기타 수점을 압수하고 중국 관헌이 몰수함
동년 4월 18일	동 이차구(裡車溝) 노흑산(老黑山)	박대호, 김피하(金彼廈)의 부하 약간 명을 추격함	
동년 5월 5일	동 횡도천(橫道川)	심용준 부하 10명의 단체를 추격함	
동년 6월 27일	동 이도영자(二道嶺子)	박대호의 부하 4명과 교전함	소대장 오막빈(吳漠彬)을 사살하고 모젤권총 1정, 기타 2점 압수(권총은 중국 측이 몰수함)
동년 7월 4일	동 협피구(夾皮溝)	참의부 잔당 이영희의 부하 10여 명이 횡행한다고 관전현 공안국에 밀고하여 토벌시킴	조선 비적 3명 사살되고 모젤권총 4정 압수
동년 7월 14일	동 현 괴마자(拐磨子) 부근 송자구(松子溝) 산중턱	참의부 잔당 제3중대 소대장을 사살하고 권승익(權承益)의 부하 7명과 교전함	백운학(白雲學) 모젤권총 1정 압수, 고용중 국순장이 중상 입고 장총 1정 빼앗김
동년 8월 8일	동 현 괴마자	구참의부 잔당 4명과 교전함	2명을 사살하고 권총 2정을 압수함

동향회 협력 원조로 불령단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압수 연월일	압수 물건	원수	압수지	적요
1928년 10월 22일	모젤권총	2정	통화현 오도구	차응선(車應善) 외 7명의 휴대품
동(同)	동(同) 탄환	288발	동(同)	동(同)
동	동 탄약창	2개	동	동
동	중국식 군복	2벌	동	동
동	권각반	1쌍	동	동
동	경적	1개	동	동

동	브로닝권총	1정	동 현 철창자(鐵廠子)	동
동	동 탄약	45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1개	동	동
1928년 11월 29일	중국식 탄약창	9개	환인현 횡도천	김동일(金東一) 외 8명에 대한 증거품
동	등붓짐	8개	동	동
동	중대용 피복	12점	동	동
동	중대용 장부 및 불온문서	46점	동	동
동	등사판	1조	동	동
동	중대용 목도장	1개	동	동
동	장총 실포	425발	동	동
동	기타	6점	동	동
1928년 11월 5일	모젤권총	8정	집안현 위사하(葦沙河), 장강(長崗)	김상옥(金相玉) 외 3명의 휴대품
동	동 탄환	585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8개	동	동
동	권총보	3개	동	동
동	단검	2진	동	동
동	나팔	1개	동	동
동	쌍안경	1개	동	동
동	장총	2정	동	동
동	동 탄환	2발	동	동
동	군모	13개	동	동
동	군복	13벌	동	동
동	중대용 의류 기타	14점	동	동
동	불온문서	1포	동	동
1928년 12월 28일	모젤권총	4정	통화현 강산 이도구	참의부 중대 소유
동	동 탄환	371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4개	동	동
동	경적	3개	동	동
1929년 1월 4일	모젤권총	1정	동	동
동	동 탄환	143발	동	동
1929년	모젤권총	1정	동	동

1월 8일				
동	동 탄환	27발	동	동
동	브로닝권총	1정	동	동
동	동 탄환	14발	동	동
1929년 2월 10일	독립공채권	오백 원 2매 백 원 2매 십 원 2매	환인현 횡도문	김희산 외 2명의 휴대품
동	불온문서	약간	동	동

6. 동향회의 주의 및 사상

동향 회원은 통화 재주 조선인 민회장의 직에 있는 온건한 친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동성(李東成)을 총회장으로 하여 농민 중의 유력자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조직한 것입니다. 그는 동향회를 조직할 때 바로 참의부 측 온건파를 통해 무력적 흥폭행위는 독립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을 위해 오히려 불리하여 종래의 방침을 버리고 우리 측에 귀순하였다고 하며 산업의 발달 교육의 보급을 꾀하는 민족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 선전하였습니다. 이래 참의부 중 무력파의 횡포로 반감을 갖는 자 내지 무력파 중에도 우리 측에 가까워지려는 자들이 계속 와 그들과 협력하여 합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당하고 득책이었습니다. 무모한 수단은 일체 폐지하고 신의를 내외에 넓히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무력단파의 박멸에 종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회원 중에 폭행을 감행하며 과격한 사상을 갖는 자들이 없지 않았으나, 순진 소박한 선배 동지들의 설득에 완화되어 농업과 기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개종한 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보니 앞으로 우리 측에 투항하는 자가 있을 때엔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도와주면 거의 모두 농사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 동향회 유지 및 장래의 방침

동향회의 유지 방법은 조직 후 별도로 기록한 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측 및 중국 측의 양해와 원조를 얻어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회원은 소액(불령단 징수의 반액)의 회비를 부담하여 회의 유지를 도모하고 점차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8. 현재 궁핍한 동향회의 실정

동 회의 유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앞에서 말한 대로이나 지금의 상태는 지방 선농이 의무금, 군자금의 명목으로 이중 삼중으로 징수를 당해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무력 불령단을 절대 방지하지 않고 회비부터 징수하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요즘은 도저히 회비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편 자위단 간부 중 약 50명은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해 오지 않은 자이거나 위협 때문에 농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떨어져 작년 10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다소의 소지 금품은 그 사이 모두 생활에 다 써버리고 지금은 그날그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식량, 소금, 땀감의 구입도 여의치 않은 참담한 실상은 동정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통화 복관 밖에 집 한 채를 빌려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불령단 토벌에 나가지 않을 때는 농번기에는 농가에 고용되어 풀베기 등의 일을 하고 그 날의 식료 및 일용품 구입에 충당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도와가며 육친도 베풀기 어려운 인정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관에서도 가불을 해주거나 또는 중국경찰 수당 및 중국 관민에 대한 운동비 등을 응급책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원조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동 회의 불령단 배제 상황

불령단 구축에 대해 이미 중국 관헌 측의 양해를 얻어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앞의 일람표와 같은 경과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력자의 알선으로 점차 당 현 현장 및 공안 국장의 양해도 얻어 환인현에서는 현 당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관계상 경비의 조달이 가능하여 불령단의 소굴인 신빈현 시가 및 왕청문을 습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0. 동향회 원조의 정도

동향회 간부원은 수시로 회원을 살피고 있으나 자칫하면 지방 출동 시 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회의 유지상 어쩔 수 없지만 이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농민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으므로 이를 감독 선도하여 약 5,000원 범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불령단 국민부의 동향회에 대한 상황

국민부는 신빈, 환인, 통화(일부) 각 현의 선농을 협박 선동하여 동향회라면 바로 백성 봉기를 일으키게 하여 일마다 반항하고 전력을 기울여 동향회 박멸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최근 환인현에서 100 내지 200여 명의 백성이 봉기를 일으켜 현시가지에 쳐들어 왔는데 선후하여 3회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통화현의 쾌당모자(快當帽子)에 약 60여 명이, 집안현 사하(沙河) 지방의 농민 약 200여 명이 현성에 쳐들어 온 일이 있으나 중국 측과 협조하여 이를 해산시킨 실례가 있습니다. 당 현에서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이를 진압, 해산 시킬 수 있었으나 환인현 방면에 이르러서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불령단 국민부는 근래 노령 조선인과 연락하고 마적과 통하여 적화운동의 주구가 될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본적 토벌 없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향회의 상황은 이와 같으니 불령선인을 회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제된 자치단으로서 형성되어 적어도 약 1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점차 전도에 서광이 비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수 단체 중 새롭게 시험 삼아 이를 지속시키려면 조선인 정책상 다대한 반응이 있어 이 단체의 존속 여하는 재만 조선인 일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 당시에는 오직 일시적 감정 또는 여러 경위로 인해 그저 막연히 부합하는 자가 적지 않은 경향이 있었으나 본관이 부임한 이래 이 점에 유의하여 성의를 가지고 선도한 결과 그들의 사상은 일변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납득하여 힘들어도 목적 달성을 위해 분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을 구제 선도하고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불령선인 대책은 모든 주의를 환기하여 단순히 통화 지방의 작은 문제가 아닌 재만 조선인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반해 한족동향회를 비참한 결말을 맺게 한다면 그 여파는 각 방면에 퍼져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족동향회 간부 상무원, 통신원 등 100명 이상의 회원 및 가족 관계자를 통산하여 약 1,000호의 흥망성쇠는 금후의 경제문제에 있고 동 회의 사활은 위와 같이 금 5,000원의 보조를 받을지의 여하에 따라 달렸으니 위의 사정을 통찰하시어 특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

취의서(본고는 중국 측 양해의 뜻으로 기초한 것)

우리 한민족은 멀리 본토를 떠나 만주로 이주한 자가 약 200만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국 독립의 미명하에 폭력단이 속출하고 동포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항상 엄청난 고혈을 짜 양민을 살해하고 당에 또 당을 세워 서로 반목하고 자승자박에 빠져 있으며, 그 반면 중국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민으로부터 혐오를 받아 지금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다. 이곳 집안, 임강, 통화, 환인에 동지를 틀고 있는 참의부는 이에 내홍과 알력이 심해 동족상잔의 해를 일으켜 수십 명이 죽었고 결국은 수천 호의 우리 한족이 자멸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분발하여 동포의 각성을 촉진하고 불량분자를 배제해 왔다. 생각건대 우리 한족 동포는 살아도 토지가 없고 중국에서 활로를 구하는 이상은 중국의 보호와 원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이 명하는 가장(家長)제도를 받아들이고 각 가장들과 연락하여 동향회를 설립하고 그 실상을 탄원하여 우리 비적의 침습을 막고 주민의 안정을 얻기 위해 본 회를 발기하는 바이다.

<출전 : 韓族同鄉會內情二關スル件, 1929년 9월 21일, 『外務省警察史』 11, 不二出版 190~198쪽>

Ⅱ. 일본 지역

1. 박상희(朴尙禧), 동경 조선인 제 단체 역방기(歷訪記)

조선사상통신사 특파원 박상희

1. 머리말

왜 인간은 좀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스스로 솔직한 마음을 보이려 하지도 않고 상대의 진심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까. 정치가들은 관동대지진 당시 일어난 자경단 사건의 진상을 아직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희생자의 수를 물으면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조선인의 사상 경향을 전혀 접하지 않은 채 단속만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선인들이) ‘열복(悅服)’했다는 식으로 ‘선정(善政)’을 우긴다. 또한 민간의 소위 신사들은 조선에 독립적인 문자나 언어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는 제쳐 두고 보기에 가소로울 정도로 열사인 체하며 내선융화를 얘기하는 데 열을 올리거나, 반도에서 목전의 이익을 채우려고 임야나 광산이나 미간지가 있음은 알면서도 조선 민중의 장래 등은 전혀 안중에 없이 듣기 좋은 말로 민족의 공존공영을 논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등 왜 그런 역겨운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양 민족의 관계에 얽힌 ‘과도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결과로 왜 사람들은 좀 순수하고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똑같이 일본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치하에 있는 2,000만 조선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완전히 눈 뜬 장님이면서 발음도 좋지 않은 영어 단어를 읊조리면 신사나 되는 양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조선 민중은 한일병합 20년이 지나서도 정신적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이해를 받지 못하여 지금 사상적으로 반대 방향을 걷고 있음에도, (일본인들은) 이를 다 잊고 전 국민적으로 중국문제에만 열중하는 등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용서의 여지가 있다 해도 조선총독부의 녹을 먹고 라디오 나팔처럼 내선융화다, 조선 민중의 장래가 어떻다는 등 큰 소리로 떠들던 패거리들이 일단 현해탄을 건너갔다 돌아오면 그 다음날로 조선 문제에 대해 소원하고 냉담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동경에서는 조선 문제를 화제로 삼는 사람을 사상이 진부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문제에 관해서는 조선 전체가 국민적으로 열중하

는 실정인 것 같다. 은여경(殷汝耕)이 귀신 꼴로 일본에 망명해 오자 거의 전국적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보여 소란을 떠는 이때 장개석이 관광 왔다하여 다시 한 번 전국이 떠들썩하여 대사건이라도 일어난 양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이 정도로 중국에 대해 흥미를 갖고 호의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중국에서 이권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은 마침 1894, 1895년경의 청일전쟁부터 1910년까지는 대한정책에 전력을 쏟고 있었고 내적 요구로는 하등 취할 만한 것이 없었으나, 한일병합으로 한 시대가 그어진 이래 해가 갈수록 조선에 대한 열기가 정비례하여 냉각되어 버려 지금은 조선 문제를 논하는 자는 오히려 골동품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겉으로 드러나는 국가 세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이른바 그때그때의 편의주의로도 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편의주의로 일본은 무엇을 잃은 걸까. 나는 결코 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1) 1927년 11월 7일)

머리가 딱딱한 일본 내 관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부의 사상가나 어떤 종류의 계급을 제외한 소위 현재의 중견사상 계급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가질 것이다. 즉 ‘조선인이 무슨 말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다. 가령 말로는 하지 않지만 때때로 언급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소위 신진적 두뇌의 소유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다. ‘병합이라는 것은 실은 몇 명의 정치가들이 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많이 회자되기 쉬운 말로 현재 민족주의자들의 입으로 크게 주장하는 바이나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서 그것을 듣는 것은 실로 예상 밖의 일이다.

(중략)

요컨대 더욱 더 진면목으로 강구해야만 하는 조선 문제에 관해서 일본인이 그렇게도 무관심하고 냉담한 것은 조선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지식은 어리석게도 가까이 있는 동경에 있는 조선인의 상황조차도 모른다. 외국인에 대한 것이라면 이상하리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지만 조선인에 대한 것은 알고 싶다는 기분조차 갖지 않는다. 이러한 좋지 않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오랜 시일을 들여 동경재주 조선인 개황을 보도했었는데, 이제 앞서 보도한 부분을 서론으로 하고 거기에 세론(細論)으로 재경 각 조선인 문제 단체 역방

기를 작성하여 그것을 일반 참고 자료로 하고자 한다. ((2) 1927년 11월 8일)
(중략)

5. 재단법인 자강회(自彊會)

육영사업과 자조정신을 주안으로 삼고 나중에 오는 유학생들을 위해 일하고자 조선인 청년 유지들이 조직한 재단법인 자강회를 동경부하 스가모초(巢鴨町) 미야시타(宮下) 1653번지에 있는 동 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경영 유지나 그 밖의 내용 일체를 듣기 위해 시내 고이시가와구(小石川區) 오쓰카쓰지초(大塚汁町) 2번지 자택으로 이사장인 민석현(閔奭鉉) 씨를 방문한다. 자강회는 1924년 11월 15일에 설립된 것으로 그 목적은 첫째,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인재 중 사상과 학력 모두 건전한 수재로 단순히 학비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청년에게 학비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장학부가 있다. 둘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요컨대 상응하는 학력을 갖지 못하고 고학을 목적으로 상경한 청년에게 직업 소개나 일반 보호를 하는 일종의 사회사업단체이다.

지금까지 동 회의 제1목적에 따라 장학부의 원조를 얻어 사회에 나온 사람으로는 작년 봄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를 졸업하고 현재 전북 고창고등보통학교의 교원인 홍순복(洪淳福) 씨나 동양대학 윤리과를 졸업하고 제국대학 역사과에서 1년의 연구를 쌓아 이번 봄부터 경성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무주임으로 봉직하고 있는 오봉삼(吳鳳三) 씨 등이 있다. 현재의 재교생은,

제1고등학교	1명
제2고등학원	1명
와세다고등학원	1명
동양대학	1명
일본대학	3명

합계 7명이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비 때문에 소규모이지만 매우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의 목적인 고학생에 대한 직업 알선이나 기타 편의 제공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동 회의 보호를 받는 고학생이 약 90명으로 그중 약 10명이 각 상점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등 주로 정신노동자에 속하고 그 외 80명은 완전히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건축 청부업자인 합자회사 시미즈구미(清水組)의 시미즈 가즈오(清水一雄) 씨가 자강회의 후원자인 관계로 이들 육체노동자는 주로 시미즈구미에서 일하고 있다. 수입은 양자 모두 한 달 40엔 내지 45엔 정도로 재경 고학생 가운데에서는 대우를 좋게 받는 편이다.

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주로 야학에 다니고 있는데 동경의 조선인 고학생이 신문 배달이든 낫토(納豆) 판매 등 대개 한 달 수입이 불과 24, 25엔인 데 비해 40엔 내지 45엔 정도이므로 생활비나 학비를 빼고 매달 12엔의 저축이 가능하다. 이 점은 시미즈구미의 덕택일 것이다. 그리고 자강회 본부 내에는 현재 13명의 학생이 기숙하고 있다.

그럼 이들의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먼저 이 회가 생긴 유래는 이사장 민석현 씨가 1924년 중앙대학 경제과를 졸업하면서 깊이 느낀 바 있어 후진을 위해 일생 일하겠다고 본 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후 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회의 소재지인 고이시가와구에 많은 후원자가 생겼다. 즉 고이시가와구 내의 유지들의 원조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후원자 가운데 중요 인물을 들면 다음과 같다.

사카타니 요시로(坂谷芳郎男), 카노 지고로(嘉納治五郎), 나가이 토오루(永井亭) 박사
시미즈 가즈오(清水一雄), 마스다 기이치(増田義一)

이들을 비롯하여 기타 유력자를 망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고이시가와구 내 유지의 원조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동경부 전역에 걸쳐 뜻 있는 인사의 후원을 구해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11) 1927년 11월 17일)

자강회의 현재 기본금은 1만 엔이지만 유지의 기부나 원조 등으로 일시적 기부금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기본금에 편입시켜 먼 장래에는 이자만으로 해 나간다는 의지로 기본금을 계속 불리고 있다. 현재로서 제1의 사업목적인 장학부의 학비 마련은 후원자들이 한 명 내지 수 명을 나눠 맡아 지불하고 있고 그 외 일반 경비는 역시 후원자들 중 자강회유지회를 조직하여 1인당 한 달에 5엔씩 각출하여 유지경영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한 달 총액은 약 240엔이다. 그리고 한 달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본부 집세	80엔
전등료	20엔
경비료	20엔
이사(理事) 수당	100엔
제 잡비	10엔
합계	240엔

본 회의 임원은 주로 천도교 신자로서 얼핏 천도교 동경 종리원의 기관처럼 보이지만, 천도교 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컨대 천도교 동경 종리원의 간부 등이 자강회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주요 간부의 경력 인물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장 민석현 씨

독실한 천도교의 신자로 1916년경부터 1919년 소요 사건의 수령인 천도교 주손(主孫) 손병희 씨와 동거하며 손씨의 개인비서 격으로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그러나 민씨 개인으로서의 소요 사건에 관계하지 않았고 사상 방면의 색채도 그다지 심하게 띠고 있지 않다. 1921년경 동경으로 와서 1924년 중앙대학 경제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11월 자강회를 조직하여 바로 책임자로 활동해 온 인물로 현재 천도교 동경 종리원의 간부이다.

이사 박사직(朴思稷) 씨

이번 봄 일본대학 종교과를 나온 인물로 1920년경 경성에서 천도교 청년회(청년당의 전신)의 총무로 활동한 사람이고 현재 천도교 동경 종리원의 주임총리사이다(상세한 것은 나중에 천도교 방문기로 미루겠다).

이사 조종호(趙鍾浩) 씨

현재 일본대학 교육과 2학년 재학 중이며, 이전에는 이른바 프랑스교회라고 칭하는 천주교회 경영의 원산 해성(海星) 보통학교 교원이었다. 현재는 천도교 동경 종리원 총리사이다.

이상의 3인이 간부가 되어 자강회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석현 씨는 앞에서 말한 대로 고 손병희 씨의 신임을 받은 바 있고 현재에도 천도교의 수뇌자이다.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 씨의 조카인 박내철(朴來哲, 현재 영진사(榮進社)라고 하는 철공장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씨를 맡아 보살피 주고 있는 관계로 처음엔 신경이 과민한 경찰 방면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성실한 사업 진행상 다소 방해를 받는 일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민씨의 일관된 주장과 성의가 인정되어 관변에서도 양해하고 오히려 정신적 원조도 아끼지 않고 있다.

민씨는 말한다—자신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공산주의에도 무정부주의에도 공감한 경험이 없다. 또 철저한 민족주의도 내선융화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요는 정신·물질적으로 패자의 지위에 있는 조선 민족이 어떻게 하여 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 하나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돕고 스스로 격려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우리 동지들은 이해하며, 글자 그대로 자강의 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해 본 회를 만들어 전력을 투구하기로 했다—하고 온화한 성격과 걸맞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역설. ((12) 1927년 11월 18일)

6. 상애회 총본부(相愛會總本部)

일본 내지의 조선인 노동자 구호단체로 동경에 상애회 총본부가 있고 각지의 주요 도시에 지방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관변의 신임이나 응원이 가장 두텁고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이므로 새롭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기회이므로 긴시초(錦糸掘)¹⁾ 소재의 동 회 총본부를 방문하여 각종 시설을 참관하고 또 닌교초(人形町)의 일선(日蔭)회관을 방문하여 회장 이기동(李起東) 씨로부터 사업 경영의 대략을 듣는다. 당초 상애회가 생긴 유래는 지금의 회장 이기동 씨와 부회장 박춘금(朴春琴) 씨가 1909년경 일본에 건너 와서 니혼바시구(日本橋區) 고덴바초(小傳馬町)에서 무역상을 경영하던 중 이들에게 의지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서였다. 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구제기관을 하나 세워 상구회(相救會)라고 이름붙여 활동해 왔지만, 사회사업단체로서 지금의 상애회가 정식으로 세상에 나온 것

1) 錦糸町の 옛 지명.

은 1921년 12월이다.

당시는 동경부 미나미센주(南千住)에 작은 사무소를 세우고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무료숙박소를 설치하여 위생기관을 세우는 등 노동자의 생활 보장에 상당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예의 관동대지진 때 상애회가 수행한 사회봉사 활동이 일찍부터 인정을 받아 조선총독부에서 육군성과 교섭한 결과 긴시초 소재 육군식량 및 말 창고 구내에 약 2,000평의 공터를 빌려 총독부로부터 약 4만 엔에 상당하는 건물 보조를 얻어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무료숙박소, 직업소개소, 간이진료원, 인사상담부, 간이식당 내직공장, 일용품판매소 등을 설치하여 재정조선인 노동자를 위해 애써 왔다. 위와 같이 긴 역사와 최선의 활동을 해 온 관계로 지금은 동경의 총본부 및 오사카, 나고야, 코후(甲府), 시즈오카(静岡), 교토(京都) 각 지방 본부를 두고 회원 총수가 약 10여 만 명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사무소 부지는 구역(區域) 정리와 더불어 학교 용지로 반환하고 퇴거를 해야만 하게 되었으므로 상애회 간부들은 작년 3월 동경에 와 있던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총독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총독도 크게 이를 양해하여 같은 달 19일 정오 제국호텔에서 나가오카(長岡) 사회국장 이하 관계 당국자 및 관민의 명사를 초대하여 회관 건축이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원조를 간청하였다. 그 결과 모두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각종 교섭 계획은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씨가 맡기로 하고 총경비 29만 2,579엔 86전으로 회관 건축에 착수했다. 이 부지는 긴시초에 있는 국유지 600평을 불하 받은 것이다. 약 500,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시미즈구미가 맡아 이미 공사를 완성하였고 현재 내부공사 중이다. 주요한 비용 출처는 내무성 사회국에서 5만 엔, 미츠이(三井) 미츠비시(三菱) 조선은행 등의 여러 회사에서 5만 엔, 은사재단 경복회에서 4,000엔, 퇴거료 2만 5,000엔, 그 밖에 동경시 동경부, 총독부 등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까지 합쳐 약 20여 만 엔에 달한다. 부족액은 약 10만 엔인데 이 때문에 간부들은 거의 침식을 잊고 분주하다. 물론 건축 청부의 상대가 시미즈구미이고 특히 사회사업에 쓸 건물이므로 건축비의 청산 여하에 관계없이 마감공사만 완료되면 바로 새 건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 이전한 뒤에는 동 회 소속의 고학생 기관인 고지마치구(麴町區) 이치방초(一番町) 소재의 상애회관도 신 회관으로 옮기고 노동자 및 고학생의 구호 및 교도 사업을 한꺼번에 통괄할 계획이라고 한다. ((13) 1927년 11월 19일)

상애회는 말할 것도 없이 시부사와(澁沢) 자작이나 사이토 총독, 도야마 미츠루(頭山滿) 이하 40여 명의 관민 명사를 고문으로 두고 그 관계 인사 수명을 상담역으로 갖는 유명한 내선융화단체이다. 동경총본부의 주요 간부는,

회장	이기동
부회장	박춘금
총무	한중석(韓鍾錫)
외무부장	노영구(蘆永九)
내무부장	정인엽(鄭寅曄)
문화부장	이영규(李永奎)
숙박부장	배동수(裴同守)
직업소개부장	김용양(金鎔瘁)
위생부장	하규석(河圭錫)
인사부장	정인엽(鄭寅曄)
상무간사	하시모토 기요시(橋本清)
동	김중호(金鍾浩)
동	조준승(曹準承)
상애관 사감	한중석(韓鍾錫)
동 부사감	정인엽(鄭寅曄)

으로 사무 분담이 되어 있고, 각 지방부의 기관도 이에 같은 조직이다.

다음으로 사업 경영 현장과 내용을 말하면(작년 말 통계에 의함),

(1) 무료 숙박소

본 회 총본부 소재 제1숙박소에서 작년 중 숙박자의 연 인원은 18만 7,070명이고 이 외 조선인 노동자의 집단지 또는 취업에 편리한 지점에서는 지부 또는 반장(飯場) 70여 곳을 두어 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 숙박소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은 1년에 약 4,700여 엔이고 이 외 실업노동자에 대해 매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식권의 발행액으로 1년에 약 7엔 내외가 들어 결국 총경비에서 5,700여 엔을 지출한다고 한다.

(2) 무료 직업소개소

본 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날로 격증하고 있는 새로 온 노동자나 실업자의 직업 소개로 분주하고 겨울부터 봄에 걸쳐서는 무려 수백 명의 실업노동자가 운집해 와 5명의 계원은 주야로 시내의 각 공장 및 청부업자를 역방하여 교섭하고 있는데 이 직업 소개만의 건수가 1년 500건 정도로 이에 드는 비용도 연액 2,000여 엔에 달한다.

(3) 학생기숙사 상애관

고학생 보호를 위해 대지진 당시 설립된 진재선후회(震災善後會)로부터 금 3만 엔, 동경부로부터 금 3만여 엔의 보조를 받고 또 조선은행으로부터 4만 엔의 저리자금의 융통을 얻어 시내 고지마치구 이치반초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약 80명의 고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4) 조선일요학교

일반 재주 조선인 자제의 교육 및 숙박소에 오는 노동자의 품성을 도야 향상시키고 동시에 일본어를 숙달시키고 일용 산술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일요학교를 세워 취학을 장려하고 있는데 1년간 소요경비는 960엔으로 통계에 의하면 1926년의 연 인원이 노동자 21,221명, 아동 2,371명에 이르고 있다.

(5) 인사상담부

최근 조선인 노동자의 격증에 따라 일본인 대 조선인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마침내 반목의 투쟁을 야기한 것은 그 외의 문제를 합쳐 1921년 12월 상애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9,000건에 이른다. 그중 내선인 간의 조정 쟁의나 비행 설득, 가정문제 상담 등이 가장 많고 신원보증과 이에 따른 경찰재판소에서 오는 신병보호도 최근 그 수가 격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상담에 필요한 경비가 1년에 2,400엔이다.

(6) 상애료원(相愛療院)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 상애회 숙박소의 구내에 치료원을 두고 시료 또는 실비 진료를 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무료 진료자는 일본인 1,358명, 조선인 676명으로 이 사업만은 단순히 조선인 노동자에 한하지 않고 부근의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고 한다. ((14) 1927년 11월 21일)

그 외 상애회의 사업으로 상애신사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1924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 1주년 기념일에 조선인 조난자의 추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고자에 대해 제사도 여기서 지내고 있고 위안축하, 선행자 표창, 장의 및 조문 등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 외 회원에 대해서는 근검저축을 장려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각각 표창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 회에서 조사한 1926년 중의 회원 저금 조사 표에 의하면 인원 227명, 금액은 1,635엔 72전이였다.

이상은 상애회의 연혁 및 주요 간부, 사업 경영의 내용 등을 개술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에 드는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이에 작년 동 회 수지계획표를 적기하면 수입 내역이,

금 5,000엔	경북회 보조
2,000엔	총독부 보조
200엔	동경부 보조
300엔	시미즈(清水) 씨 기증

즉, 보조로 얻은 돈이 7,500엔이고 숙박자로부터 위생비로 받은 것이 4,000여 엔 부속 상애관의 화재보험이 3만 엔, 상애관부지 매매대가 4만 8,000엔, 잡수입이 170여 엔, 차입금이 4만 4,740여 엔, 합계 13만 4,487엔 87전으로 되어 있다. 지출을 보면,

오사카 본부 보조금	9,430엔
아이치 본부(愛知本部) 보조금	8,840엔
하마마츠 본부(浜松本部) 보조금	3,000엔
야마나시 본부(山梨本部) 보조금	2,870엔
교토 본부(京都本部) 보조금	1,500엔
후카가와 지부(深川支部) 보조금	560엔

즉 지방 본부나 지부에 대한 보조금이 2만 6,200엔이고 그 외 사업수행비나 인건비, 제 잡비 등을 합해 수입 총액에 해당하는 지출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계 방면의 보조나 유지 기부가 늘어나지 않으면 동 회의 경영유지는 매우 곤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결산이 이미 4만 4,000엔의 차입금과 토지 매

매대와 같은 일시적 수입으로 겨우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상비의 지출이 많은 데 반해 경상비의 수입이 적은 것은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기동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쨌든 사업 확장에 따른 경비가 예산결정서에서 보인 대로 상당히 커진 것에 비해 이를 지탱할 기본 재산이 없으므로 앞으로 뭔가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수익을 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취직자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여 사업 경영의 충실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계획 중이다.

회장 이기동 씨와 부회장 박춘금 씨는 사회사업단체로서 상애회 이외에 일선기업(日鮮起業)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 사의 건물인 일선회관은 원래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의 사교기관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었으나, 그 후 뭔가 수익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회사 조직으로 하고 현재는 2층과 3층에 활동사진, 4층에 댄스홀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애회총본부 숙박소 가족조사표를 기록하고 이 항을 마치겠다.

내선인 결연세대²⁾ 8호, 남자 9명, 여자 8명, 자녀 13명, 합계 30명

조선인 세대자 71호, 남자 120명, 여자 108명, 자녀 140명, 합계 368명으로 그 외에 다수의 상주 노동자를 숙박소에 수용하고 마치 아파트 하우스와 같은 광경을 보여 준다.

((15) 1927년 11월 22일)

7. 재일 조선인 노동일심회(勞動一心會)

회원의 실제 수와 성실한 내용 면에서 동경 제일의 조선인 노동단체라 불리는 '재일조선노동일심회'를 방문하기 위해 하치오지(八王子)행 열차의 승객이 되었다. 동경역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약 10리 지점, 동경부 북다마군(北多摩郡) 다치카와(立川)역에서 하차하여 개찰구를 나오자 말의 역양으로 보아 경상도 출신으로 보이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그들에게 길을 물어 역에서 남쪽으로 약 7, 8초(町) 부근에 일심회 총본부의 간판이 보였다. 바로 명함을 교환하고 회장인 김윤수(金潤秀) 씨와 대좌한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웬지 한가한 사람의 여행기로 끝날 듯하지만 이쯤 해서 다시 조리 있게 써 보려 한다.

2) 부부나 입양 등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인연을 맺은 세대.

지금의 일심회가 태어난 유래는 현 회장 김윤수 씨가 고향 경성에서 여러 사업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다. 그 괴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평생을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1925년 여름 약간의 비용을 들고 동경에서 당시 각 방면에서 유망하면서 산재해 있는 자유노동자 26명을 모아 같은 해 8월 14일 동경부 후추초(府中町)에서 발회식을 거행했다. 그때는 관동노동일심회(關東勞動一心會)라는 명칭이었다. 김씨는 1917년에서 1920년까지 경성제피주식회사(종로2가)의 전무이사역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경성금융합자회사(明治町 一丁目)의 대표자로 실업계에서 활동하다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남모르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다 마침내 오늘의 생활을 선택한 것이라 한다. 일심회 조직 이후에도 그러한 심각한 체험과 진지한 결심에 기초하여 활동한 관계로, 그 후 불과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말까지의 회원 수가 일약 8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때 마침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각 노동단체를 규합하자는 소리가 높아져 관동·관서의 양 지역에서 연합회의 발회식을 만드는 기운이 고조되었다. 이에 김씨도 일심회의 회원 800여 명을 이끌고 다음해 1926년 2월 25일 총동맹에 가입하여 3월 노동총동맹 관동연합회의 발회식을 올렸다. 그때 김씨가 추대를 받아 중앙집행위원이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사상단체인 조선민중회의 대표위원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심회도 불세비키계의 단체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자임한 적도 있어 회장인 김씨도 좌경주의자로서 한때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김씨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은 현재 노동자 옹호를 중심으로 순수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데 반해 총동맹 측은 너무나 광범위한 사상문제에만 매달릴 뿐 아니라 회원도 실제의 노동자 이외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여 청년운동이나 학생운동과의 구별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그 태도에 만족하지 못해 1926년 8월 15일 일심회의 스모(相模)대회를 기회로 결연히 총동맹을 탈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일심회 회원 수는 1,220명이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는 회원수가 2,300명으로 격증하여 회원 증가로 인한 회무 정리를 위해 회원 200명 내외의 예상으로 1구(區)씩 12구로 나누어 1구에서 한 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매월 7일에 정례회를 열고 총회는 회원 전부가 자유노동자이므로 일반 공휴일인 1월 1일에 개최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이 이후 일심회는 특별히 주의적 경향은 소멸하고 단순히 순수한 노동자의 결합적 단체로 되었을 뿐 아니라 관현에서도 매우 단순한 단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그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한다. ((16) 1927년 11월 24일)

이상은 곧 보도할 노동총동맹 측에 관한 기사와 연관되어 있어 일심회의 연혁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내용 제도까지 약술한 것이다.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동경의 모든 단체의 공칭 회원 수와 실제의 수는 얼마간 거리가 있는 듯하나, 이 일심회 쪽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고 올해 10월 말 현재 3,860명으로 이를 18구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회원의 분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 단체의 세력 범위는 속칭 1시(1市) 3다마(三多摩)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다마군(北多摩郡)	2,100명
남다마군(南多摩郡)	600명
서다마군(西多摩郡)	712명
하치오지시(八王子市)	250명

합계 3,662명이고 그 외 에바라군(荏原郡) 관내에 산재해 있는 회원 200명을 합하여 앞의 숫자가 된 것이다. 이 중 보통선거에 따라 선거권을 갖게 된 자가 시정촌(市町村) 관청의 조사로 863명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관청 조사로 실제로는 같은 1 시정촌 안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자까지 합하면 김 회장의 조사로는 1,900명 정도가 된다. 이 1년 이상 거주 증명에는 향리에서 온 우편물 등을 제출하면 증명이 되므로 김씨는 현재 이들의 정리에 몰두하고 있다.

이상은 총본부에 속해 있는 회원 수인데 거기에 각 지방의 본부 지부의 회원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오사카 본부	300명
치바(千葉)본부	300명
고후(甲府)본부	200명
니가타(新潟)지부	500명

즉 전국 총인원을 들면 5,162명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회원의 대다수는 거의 경상남북도 출신이며 전라남북, 충청남북이 그 다음이고 총본부에 속하는 회원의 주된 노동은 동경부흥사업에 필요한 자갈의 채굴, 고르기, 운반 등으로 하루 평균 임금 80전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총본부의 보호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총본부 내에 간이 무료숙박소를 두어 실업자 또는 거주가 일정치 않은 자에게 투숙의 편의를 제공한다.
2. 막연히 도항해 온 자에 대해 취업처를 알선하거나 만연조(慢然組)로 부산에서 발이 묶인 자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고 데려와 취직시킨다.
3. 각 구마다 야학부를 두어 문맹 퇴치운동을 한다(교사는 회원에서 선출한다).
4. 촉탁의를 두고 회원 중에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를 한다.
5. 노동쟁의나 노동자 동지의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한다(작년 건수 183건).
6. 회원 동지의 관혼상제에 대한 협력 조정과 부조
7. 조선악기 일체나 축음기 2대를 구입하여 각 구로 돌려 위안 오락의 일조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설에서 12월 초순부터 기관지로서 월간 『무사시노동신문(武藏勞働新聞)』을 일본어와 조선어로 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지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처음에는 일반 회원으로부터 1개월 10전씩의 회비를 받았으나 구제(區制)로 개편한 뒤로는 구의 비용으로 5전을 돌리고 총본부로부터도 5전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달의 수입이 150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유급의 전임간사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수입으로는 유급간사의 비용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회장인 김씨를 비롯하여 간부 여러 명이 자갈 채취의 하청업을 하고 있다. ((17) 1927년 11월 25일)

이 하청업을 하여 번 돈으로 유지해 온 모양이나 김 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3개년에 자갈의 채취업 등으로 모은 돈과 그 외의 소지금을 합쳐 약 7,000엔이나 회를 위해 썼다 한다. 그 외 유지나 독지가의 일시적 원조 및 쟁의 조정에 대한 감사금 등의 임시 수입 등을 합쳐 겨우 운영해 가는 정도여서 꽤 힘든 모양이다. 다음으로 작년 10월 21일에 바뀐 현재의 주요 간부의 출신 이력을 들면 다음과 같다.

주임 겸 조직선전부장 이수철(李秀喆) 씨

경남 출신으로 올해 36세이다. 이전에 임시토지조사국의 측량기수였고 7년 전 도항하

여 실지에서 노동생활의 체험을 쌓은 뒤 지금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사상적 색채는 없다.

국제정치 겸 교육출판부장 노초(盧超) 씨

경북 출신으로 30세이다. 메이지대학에서 배우다 중도 퇴학, 이전에 사상단체 일월회나 노동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을 한 적이 있다. 볼셰비키 계열의 주의자로 지목받았지만, 현재 그런 색채는 없다. 일심회 이외에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 민중회의 수뇌 간부이다.

조사 구호 및 쟁의 부장 김정호(金淸鎬) 씨

전남 여수군의 서기였다고 한다. 일본에 온 지 10년, 그동안에는 현장에서 노동생활을 하였고 현재에는 자갈 채굴의 하청업을 하고 있다.

직업소개 겸 재정부장 김춘길(金春吉) 씨

부산 출신으로 30세이다. 일본에 와서 15년간 재주하면서, 소규모의 토목, 자갈의 하청업을 하고 있다.

상무이사 박영석(朴永碩) 씨

경북 출신으로 28세이다. 조선에서 잠시 경찰관을 하였다 한다.

상무간사 김부갑(金富甲) 씨

부산 출신으로 26세이다. 일본대학 전문부를 중도 퇴학하였고, 이전에 노동총동맹에 적을 두고 조선 민중회의 중앙위원을 역임하였다.

이에 특기할 만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심회가 1시 3다마(一市三多摩) 지역에서 유력한 노동단체로서 인정받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인 측의 노동단체는 무력하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일본인 측으로는 ‘일시삼다마노동조합(一市三多摩勞動組合)’과 ‘실업노동조합(實業勞動組合)’ 두 단체가 있는데 모두 회원 수나 단결력의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노동쟁의도 반드시 일심회가 맡는 모양이다. 그 때문에 일심회에 특별회원으로 입

회한 일본인의 수가 약 200명 정도에 달하고 이들 특별회원에게는 한때 일시납의 입회비를 징수한 적도 있다. 과연 일심회 수뇌자가 말한 대로 회원 중에 보통선거 유권자가 1,900명 정도 되고 이에 일본인 측 노동자의 동정과 이해가 있다면 장래의 운영 여하에 따라 정촌회(町村會) 의원의 선거 정도는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실권을 갖게 될 것이다.

동 회 회원 중에는 부인이 있는 세대가 약 1할이 못 되고 자녀의 추정 수가 100명 내외,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회원은 약 1할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연중 반드시 정례적으로 회원총회, 운동회, 씨름대회를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는 회에서 구입한 조선 악기로 거창한 여흥을 벌여 조선에서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모양이다. 회장인 김윤수 씨는 말한다. 자신은 특별히 관현에 영합하여 원조를 얻기 위해 일선용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시끄럽기만 한 사상문제에 몰두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지 어떻게 하여 노동자의 눈앞의 이익을 꾀할 것인가, 인격을 보전하고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려해 가는가가 초미의 급무이며,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18) 1927년 11월 26일)

(중략)

21. 황인사(黃人社)

말과 붓으로 내선용화를 주장하는 단체로, 사무소를 시내 아카사카구(赤坂區) 아오야마난초(青山南町) 5-84번지에 두고 동인 몇 명이 오직 유세와 문필로 내선 양 민족의 이해 촉진과 황색인종의 문화 향상을 말하고 있다. 이 단체가 생긴 유래는 1921년 4월 8일 강원도 통천 출신의 이동화(李東華) 씨와 평북 의주 출신의 김창준(金昌俊) 씨 및 평남 평천군 출신의 박봉신(朴奉信) 씨 등이 뜻을 모아, 회원의 상호 공조로 일선관계의 친선을 꾀할 목적으로 '현정구락부(顯正俱樂部)'를 조직한 것이다. 당시에는 고학생 등 회원 10명 정도가 있었으나 1922년 이후부터 이씨와 김씨 사이의 의견 충돌로 현정구락부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동화 씨는 따로 '황인사'를 조직하여 기관 잡지 『황인시론(黃人時論)』을 발행하면서 스스로 사장이 되고 김창준 씨는 혼자 각 지방 유세에 주력하였다. 1925년 4월에 이르러 동양연구회의 미즈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나가세 호스케(永瀬鳳輔) 씨 등의 후원을 받아 아시아 문화의 작흥 및 민족의 공존공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민족경애회'를 조직하자 이동화 씨도 이에 찬성하여 제휴하게 되

었다. 한편 박봉신 씨는 시내 각 고등여학교 수뇌자의 원조를 받아 ‘아세아여자공학회(亞細亞女子共學會)’의 설립을 계획하고 그 조직에 분주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민족경애회에 들어가 간부의 한 사람이 되어 현정구락부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 명이 서로 제휴하였으나 처음에 제안하여 만든 민족경애회도 유명무실해졌고 이동화 씨 일파는 황인사에 계속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황인사의 주요 간부 및 이력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장 이동화 씨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우편국 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메이지대학에 들어갔으나 중도 퇴학하였다.

이사장 최상덕(崔相德) 씨

경남 동래부 출신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동경에 왔다.

이사 권찬석(權燦錫) 씨

경남 안동군 출신이다. 동경에서는 포양(抱洋)이라는 이름을 쓰며 현재 일본대학에 재학 중이다. 그 외에 동지 수 명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현정구락부 시대부터 간부이고 일본 각 지방에 유세를 다니며 그 이름을 날린 김창준 씨는 이전에 대련(大連)에서 순사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력은 없으며 박봉신 씨는 일본대학 정치경제과를 나온 사람이다.

이 단체의 사업은 현정구락부 시대부터 민족경애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민족의 공존공영을 주제로 많은 사업을 시도했으나, 어떤 사정에서인지 모두 표방에만 그쳤고 겨우 한 것은 1921년경부터 시작한 각지로의 유세활동이다. 관서 지방에서 동북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내선융화의 강연을 하고 한곳에서 대체로 200엔 내지 300엔 정도의 위로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해 왔다. 강연처의 각지 경찰 관헌의 내보에 의하면 때로는 사례금이나 원조금을 강요한 사실도 있다 한다. 식자들은 그들의 과유불급 내선융화론을 축하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의 진위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나로서는 이 단체에 대해 평론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이 기회에 쓰는 것은 조선에서나 일본에서나 동기가 불순한 직업적 융화론자와 이에 대한 일본인 측의 맹목적 옹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동사상이
조장되고 있는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45) 1928년 1월 4일)
(하략)

<출전 : 朴尙德, 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朝鮮思想通信』, 1927년 11월 7일~1928년 1월 18일
50회 연재), 『在日朝鮮人史研究』 제5호, 1979년 12월, 92~94쪽, 105~106쪽, 150~152쪽>

2. 상애회 총본부의 사업 시설의 개요

1927년 5월 사업 시설의 개요

동경시 혼조구(本所區) 타이헤이초(太平町) 2-1

상애회 총본부

회장 이기동(李起東)

부회장 박춘금(朴春琴)

— 목차 —

제1. 연혁의 개요

1. 설립의 동기 및 경과
2. 취의서
3. 회칙
4. 간부 성명

제2. 사업의 현황

1. 사업의 적요
2. 사업의 위치
3. 경영의 상황

제3. 사업 경영의 장래

제1. 연혁의 개요

1. 설립의 동기 및 경과

지금부터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수초처럼 표류하던 조선인 가운데 연고가 없어 고독에 신음하며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워 밤이슬을 맞는 자들을 보면 차마 보지 못할 참상이었다. 이들 조선인 노동자는 생활이 불안정하여 사상의 악화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자포자기한 결과 민족적 울분을 야기하여 불령 행동으로 나섰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일선(日鮮)융화의 전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깊이 느낀 바 있어 이 불쌍한 동포를 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일선 양 민족의 융화 친선에 기여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약간의 사재를 털어 하나의 구제기관을 만든 것이 오늘의 소위 상애회이고 처음은 상구회(相救會)라 칭하여 약간의 구제사업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이 상애회가 사외사업단체로서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1921년 12월 23일이었다. 동경부 미나미센주(南千住)에 조그만 사업소를 두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급선무의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직업을 소개하여 의식을 해결하게 하거나 혹은 무료숙박소를 두어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위생 기관을 두어 보건의 길을 여는 등 비록 미약하나마 점차 그들에게 노동생활의 길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회의 총본부를 동경에 두고 오사카, 나고야, 고후(甲府), 시즈오카(静岡), 교토(京都) 등의 지방에는 각 본부를 두어 이제 회원 총수가 약 10만을 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 갑자기 관동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은 제국 일본 동경의 모든 문명 기관을 파괴하고 초토로 만들어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삶과 죽음의 공포에 몰렸고, 이로 인해 일어난 조선인 폭동이라는 유언비어는 언론 보도가 부자유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방으로 퍼져 여기저기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결국 그 불똥은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각 지방으로 파급되었고, 그 풍문이 조선의 고향에 전해지자 처자 가족 및 인근 지인들은 사변의 참상에 놀라 원한이 사무쳐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 저희들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아수라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필사의 노력을 쏟았고 우리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은 경찰 및 군대의 응원을 얻어 조선인의 구출에 분주했던 것이다. 즉 그 당시 불탄 닌교초(人形町)의 일선회관(일선기업주식회사의 건물)을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여 다 죽어 가는 천 수백 명의 조선인을 수용하여 보호하고 아비규환의 생지옥에서 죽은 시체의 정리에 수천 명의 노동자를 무상 제공하여 끊어 넘치는 의리와 인정으로 최선의 사회봉사를 하여 이로써 적어도 진재 당시 확대받고 있던 조선

인에 대한 일본인 일반의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지진 당시 상해회의 단체 사회봉사는 일면 유효한 인심완화책이고 다른 한편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앞서 조선총독부에서 육군성과 교섭한 결과 긴시초(錦糸堀) 소재 육군 식량과 말 창고(糧秣廠) 구내에 약 2,000평의 공터를 빌리고 조선총독부로부터 약 4만 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보조받아 상해회의 사업소로 삼았으며, 1924년 1월 이 곳으로 이전하고 해마다 5,000원씩의 보조를 받아 사무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무료숙박소, 무료직업소개소, 간이진료원, 인사상담부, 간이식당, 내직공방 및 일용품 공판장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십수 명의 종업원은 매일 500명 이상이나 되는 실업 노동자의 직업소개에 분주하고 700여 명의 상임 노동자를 숙박소에 수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제반 기관을 두어 그들 사무를 관장하는 수십 명의 종업원 및 세대주 노동자의 가족을 수용하고 있어 마치 아파트먼트하우스와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겨울부터 봄철에 이르는 이 시기는 무려 수천 명의 실업노동자들이 몰려오는 시기이므로 때때로 정원 이상의 인원을 무리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설령 생활하는 데 공간이 좁아 불편을 느끼나 이를 감수하고 무릉도원처럼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대지진 당시에 만들어진 대진재선우회(大震災善後會) 및 동경부로부터 약 6만 원의 보조를 받았고 조선은행으로부터 4만 원의 저리자금을 융자하여 고지마치(麴町) 이치반초(一番町)에 조선인 학생 기숙사인 상해회관을 세워 현재 80여 명의 고학생을 수용하였다. 이들 학생은 모두 학자금의 여유가 없는 자들로, 이로 인해 각자 형설(螢雪)의 공을 쌓는 데 충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오사카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6만 5,000명 정도 있어, 그 수는 관동 지역을 훨씬 능가한다. 1922년 5월 오사카에 본 회의 지방 본부를 두고 총본부에 준하여 각종 사회시설을 행하고 있다. 나고야(名古屋)에서는 1923년 5월 새롭게 본 회의 지방 본부를 둔 이래 사업이 확장을 꾀하고 있다. 1925년 7월에는 아이치(愛知) 현 지사로부터 총액 4만 엔의 기부금 모집 인가를 받아 대회관의 건축을 목표로 아이치현 재주 조선인 1만 5,000명의 구제 지도를 맡아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의 융화 친선에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야마나시현(山梨縣)의 고후에는 1924년에 지방 본부를 두고 모두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의 수행에 노력 중이다.

2. 취의서

세계 일가의 이상은 매우 고원(高遠)하여 현실적으로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망하는 인류 항구의 평화도 동시에 한 편의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국민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조선 민족은 민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희생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을까. 적어도 세계 평화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우열강약이나 빈부귀천의 구별은 사회에 지워진 인간의 운명이다. 각자가 그 분야를 지키고 천직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예부터의 전통이나 도덕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를 따르고 받든다면 천하 태평일 것이다. 언젠가 한번 계몽사상이 싹터 자유평등주의의 관념이 현격하게 발전하여 개인적 자각이 고조되었고 어떤 전통이나 도덕도 엄정한 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에 감복하지 않게 되었다.

살려는 충동은 모두 문화의 본원이어야 한다. 만약 현대의 사회조직의 불비(不備)함이나 결함으로 인류 공존의 정의를 몰각하는 것처럼, 제도문물은 이를 개선할 좋은 방책을 기다려야 하는데 선불리 환경의 불우함이나 운명이라고 비관하고 값싼 인생관에 빠져 귀중한 생존권을 털끝처럼 가볍게 여겨 패잔(敗殘)의 세계로 사라지고 있으니 세상이 너무나 냉담한 것은 아닐까.

모든 권리에 앞서 우리의 생존권은 신이라 해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생존경쟁이 자연계의 법리임을 인정한다면 상호부조가 사회도덕의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약자들이 세상의 무정함을 원망하고 하물며 저주함은 실로 지나쳐서는 안 될 중대 사항이다. 국가는 사회정책적 시설의 급무를 느끼면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차별의 인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포요, 국민이면서도 직업을 찾아 일본 내지로 모여든 십수만의 조선인을 위해서는 이의 대책으로 아무 방침도 없이 아직 하나의 구제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정치의 본령이어야 할 생활의 안정이나 사상이 과연 원만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이 동포의 이름으로 결국 자신의 연장임을 생각하면 굶어서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조선인 동포가 어두운 길을 방황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어찌 눈물 없이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감개무량한 나머지 분연히 쫓기하여 인류 상애의 정신에 입각하고 공존동락의 본뜻에 의거하여, 자신의 무력함을 무릅쓰고 이에 자조적 보호기관을 만들어 이름을 상애회라고 하였다. 그 사명은 잘 알 것이다. 즉 민족적 차별관념을 철폐하고 일선융화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 정신 교화나 경제적 구제를 꾀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존재의의일 것이다.

여러 제군이여! 본 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각별한 도움을 주시기를…….

3. 회칙

- 제1장 명칭 및 위치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장 회원조직
- 제4장 간부조직
- 제5장 명예직 기관
- 제6장 의결기관
- 제7장 기금 및 합계
- 제8장 상벌 규정

제1장 명칭 및 위치

제1조 본 회의는 이를 상애회라 한다.

제2조 본 회의는 총본부를 동경에, 지방 본부를 각 부현(府縣)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인류상애의 정신에 기초하여 일선용화의 철저한 실현을 꾀할 것.
2. 정의 공도(公道)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적 차별관념을 철저히 할 것.
3. 자유평등의 뜻에 입각하여 사상 및 생활의 안정을 꾀할 것.
4. 공존공영의 본의에 입각하여 특히 조선인의 교화 및 구제에 힘쓸 것.

제4조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든 사업을 행한다.

1. 지식교환 및 상호친목을 위해 수시로 각종 회합 또는 적당한 시설을 할 것.
2. 회원 및 일반 빈곤자를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기관을 둘 것.
3. 회원 및 일반 빈곤자를 위해 무료숙박소, 무료직업소개소 등을 둘 것.
4. 일본인과 조선인의 쟁의협조 및 회원의 결혼 및 장례의 도움, 기타 일반 인 사상담 등에 응할 것.

제3장 회원조직

제5조 본 회에 입회시키려는 자는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탈퇴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회원에는 회원장(會員章)을 교부한다.

제6조 본 회 회원은 통상, 명예, 특별 및 찬조의 네 종류로 한다.

통상회원은 조선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를 조직한다.

1. 정신적으로 본 회를 애호하는 자
2. 본 회에 공로가 있는 자
3. 찬조금 또는 의연금을 제공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통상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무에 관해 발언 또는 결의권을 갖는다.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찬조회원은 회무에 관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중략)

동경 총본부

회장 이기동

부회장 박춘금

총무 한중석(韓鍾錫)

외무부장 노영구(盧永九)

내무부장 정인엽(鄭寅燁)

문화부장 이영규(李永奎)

숙박부장 배동수(裴同守)

직업소개부장 김용양(金鎔樑)

위생부장 하규석(河圭錫)

인사부장 정인엽(鄭寅燁)

상무간사 하시모토 기요시(橋本清)

동 김중호(金鍾浩)

동 조준승(曹準承)

학생기숙사 상애관(相愛館)

사감(총본부 총재 겸) 한중석(韓鍾錫)

부사감(총본부 내무부장 겸) 정인엽(鄭寅晔)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지부 지부장 곽장훈(郭長勳)

후카가와(深川)지부 지부장 전도경(全度卿)

게이힌(京濱)지부 지부장 조익규(趙翊奎)

상애회 아이치현(愛知縣)본부

나고야시(名古屋市) 미나미구(南區) 노다테초(野立町) 나나세와리(七畝割) 2250
번지

내무부장 신명삼(申明三)

내무부부장 신서우(申瑞雨)

외무부장 박영옥(朴永玉)

문화부장 한중옥(金鎔粹)

숙박부장 황장숙(黃章淑)

직업소개부장 최영기(崔永基)

위생부장 장응식(張膺植)

조사부장 문성환(文成煥)

상담역 이석재(李錫宰)

동 나가누마(長沼銻三郎)

상애회 아이치현 본부 남부지부

헤키카이군(碧海郡) 다나오초(棚尾町)

지부장 배순조(裴順祖)

상애회 아이치현 본부 이치노미야(一宮)지부

이치노미야시 고엔토오리(公園通)

지부장 박영옥(朴永玉)

부지부장 김한식(金漢植)

상애회 아이치현 본부 기후(岐阜)지부
기후시 가네오카초(金岡町) 19번지
지부장 결원
부지부장 박성옥(朴成玉)
총무 허귀룡(許貴龍)

상애회 아이치현 본부 옫카이시(四日市)지부
옫카이시 기타가와하라초(北川原町) 164
상담역 송정희(宋玎會)
지부장 배순조(裴順祖)
부지부장 최숙호(崔淑浩)
총무 송찬경(宋贊京)

상애회 아이치현 본부 도요하시(豊橋) 지부
도요하시시 하나다초(花田町)
상담역 가토 이쿠사부로(加藤幾三郎)
지부장 정만석(鄭萬碩)
총무 성재철(成載哲)

〈출전 : 相愛會總本部, 『事業施設の概要』, 1927년, 1~9쪽, 19~23쪽〉

3. 박춘금(朴春琴), 우리의 국가 신일본

우리의 국가 신일본

— 조선동포의 불안과 곤궁을 말하여 관민의 현명한 이들에게 호소한다 —

박춘금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향토를 사랑한다.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말은 바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그 향토가 속해 있는 국가를 사랑함은 인지상정이다. 우리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을 사랑함에 어떤 어색함이 있을 것인가. 이 대일본제국의 국부 지존에 대해 받들고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의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는 실로 우리의 신조이고 또 감정의 외침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몇몇 소수를 빼고는—중에 단순하고 조리가 분명한 내 충정에 대해 ‘그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하는 자들이 적은 듯하다. 식자들도 정치가도(정치가 가운데에는 식자도 가끔 있다)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사람일수록 더욱 깊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하다. 나는 안타깝고 씁쓸한 느낌을 갖지만, 동시에 황국의 은택을 받은 3천 년 충군애국의 지극한 정은 그 생존상 타민족이 갖는 종교 이상의 약속인 것처럼 보이며, 천황의 은혜와 국가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일본 민족으로서는 병합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일선(日鮮) 관계상 조선인은 진정으로 충군애국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부르짖는다 해도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식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나 정치가로 나선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혹은 조선의 역사를 모르고 조선 민족의 성정을 몰라서 그런 것으로, 무식과 몰이해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 통치상 중대한 과오에 빠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른바 식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다. 때문에 내 식견을 강호 제군들에게 묻고 자신의 존재를 주지시키려는 엄청난 야심은 조금도 없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씁쓸하게 만드는 식자와 정치가의 조선 및 조선 민족에 대한 무식과 몰이해가 얼마나 조선 및 조선 민족을 그르치고 얼마나 국가를 불리하게 하는지를 기술하고 반성을 촉구하여 세상 사람들의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 통치 방침은 어떠한가

— 민중은 순종할 줄 모른다

조선 통치에는 근본방침이 없어서는 안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아니 정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떠한 방침인가. 아직 “이러이러한 방침이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시험 삼아 조선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그런 것은 말 안 해도 알지 않는가. 일한병합 즈음에 메이지 천황이 내리신 조칙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말씀하셨다. 이 성지를 받들어 내선의 융화를 꾀하고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즉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이다”라고. 그래서 거듭 물어 “그 성지를 받들어야 함은 당연하나 어떻게 하여 내선의 융화를 꾀하고 조선 민중의 번영을 꾀할 것인가, 정부가 취할 정치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즉 이것이지 조칙의 해석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이른바 동화주의로 할 것인가, 자치(home rule)주의를 취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말하는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이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일시동인도 조선 민중의 번영도 시정의 정신 내지 목적이고 정치 양식의 근본방침으로 볼 수는 없다. 전체 내선의 융화, 조선 민중의 번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조선 통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근본방침 운운 하는 것은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을 잊지 못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정부 방식을 보면 동화정책으로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위정당국은 동화주의라고 언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치주의로 진행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장래는 모른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요컨대 이도저도 아닌, 무주의(無主義), 무방침이다. 여기에 민중은 적절히 따를 방도를 찾기에 어려울 따름이다.

생각건대 위정당국으로 하여금 것처럼 애매한 태도를 갖게 한 원인은 그들이 시대사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식민정책 등을 연구한다는 사이비 학자의 논의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동화가 말로 하기는 쉽다. 특히 근래 들어 조선인도 대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치인가. 음 결국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영국의 식민지 통치가 성공한 것은 그 때문이고 프랑스는 알제리에 동화정책을 편 것이 결국은 실패했으니까.”

사물에 대한 각 개인의 어설픈 이해와 사이비 학자의 망론만큼 타인을 속이고 나아가 세상에 독이 되는 것은 없다. 현재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이 병합 이래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아직 확정되지 않고 조선 민중은 우로 갈지 좌로 갈지를 모르고, 성실하고 온

건한 사상을 가진 자일수록 내일의 생활에 대해 생각을 잡을 수 없으니,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역을 떠도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그러한 어설피름으로 공산주의나 민족주의(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마치 이해하고 동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는 ‘직업적 배일선인’이라는 용어도 있다.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배일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그것으로 의식(衣食)을 얻을 정도로 발호하여 결국 이 말이 생긴 것이다). 드디어 조선 통치상 암중에 비유할 만한 우환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나 민족주의의 대두는 일본의 사이비 학자가 펜으로 혀로 시사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해 두고자 한다.

동화정책이란 무엇인가

— 내선의 동화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위정당국마저 “이민족의 동화는 곤란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곤란한 것일까. 다른 건 모르겠다. 조선의 경우에는 그 곤란한 이유를 모르겠다. 자주 하는 말로 ‘채장보두(採長補頭)³⁾’라는 말이 있으나 이는 적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 크게는 민족 상호 간, 나아가 서로 다른 동서 문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의 일단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일본인이 양복을 입고 서양부인이 하피코트⁴⁾를 입고 일본에 야구가 발달하고 구미에 유포가 유행한다. 이들은 이민족의 접촉으로 자연히 일어나는 동화현상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장차 교통기관이 크게 발달하고 이국, 이민족 간의 교섭이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상호의 동화 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 동화가 곤란하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종래는 곤란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그동안 내선 간의 동화는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단 동화의 목표가 생활양식에서부터 풍속까지 일본인에게 동화하라는 것이고 충군 애국의 마음도 바로 당장 일본인과 같이 하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한 몰이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나는 조선인 모두가 나와 같지 않을까 한다. 나는 일본으로 온 지 20여 년이 지났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일본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3) 긴 것을 취하여 머리를 보충한다.

4) 일본의 마츠리 등에서 단체로 입는 저고리.

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제국 수도의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는데 결코 불합리하게 학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뿐 아니다.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무심코 한 행동이 만일에 나쁜 오해를 받을까 또 그 때문에 조선인 전체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세심히 주의하여 겸허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일본인들이 나에게 주는 호의와 동정이 한층 깊어짐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자주 일본인의 결점을 들어 서양인의 장점과 비교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나도 정나미가 떨어져” 하고 자조하곤 한다. 나는 이를 들을 때마다 엄숙한 교훈을 듣는 심정이 된다. 일본 민족의 순수한 자성(自省)과 명량한 마음씨에 감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시 일본국의 국체가 이런 인간의 좋은 점을 키운 것이리라 생각하여 국가에 삶을 맡기는 영광과 행복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세상에 사은(四恩)이 있다 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이 사은에 감사한다. 감사의 생활이라 하면 마치 예수교도가 하는 말로 들리나 나의 현재는 실제로 감사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민족의 충국, 애국의 지성은 그 국체와 함께 실로 세계에 뛰어난 것이나 지금의 나는 그것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는 어떤 강제도 받지 않고 이미 일본 민족에 동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성질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니 물론 나의 예로 조선 민족 전원을 추측할 수는 없으나 사람과 사람은 접점이 있어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도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감정의 소통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국가를 위해, 조선 민족을 위해, 작게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이다. 실로 우려할 만한 언동을 감히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내선인 간의 동화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현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은 조선에서 내선인의 공동생활이 어떤 불편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정당국은 동화가 곤란하다고 한다. 실로 괴이한 이야기라 하고 싶다. 내가 생각건대 위정당국은 ‘동화 곤란’이라는 이상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사이비학자 등이 말하는 식민정책론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선 민중은 순종할 바를 알지 못하여 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칫 자포자기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족적 감정의 표출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동화가 곤란하다 하는 것이 아닐까. 여하튼 동화가 곤란하다는 얘기들은 언어도단이다. 그러한 생각 차이야말로 국가나 조선 민족에 있어서도 실로 우려할 화근이다. 위정당국이 시정의 근본방침을 확립하고 동화정책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주지시켜 즉 정치적으로 조선인으로 하여금 내선민족 간 이해의 일치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사회생활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면 내선의 융화도 동화도 위정당국이 이를 어려워할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그렇다면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정치적 일치란 무엇인가를 이하 몇 장에 나누어 서술하겠다.

신일본의 국시(國是)

－ 대의(大義)와 대도량의 현양

왕년 고 오쿠마(大隈) 후작이 『신일본(新日本)』이라는 기관 잡지를 발행한 일이 있다. 그의 신일본은 혹은 ‘신시대를 맞이하는 일본의 의의’이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신일본은 ‘새롭게 위대해진 일본’이라는 뜻이다.

일본국이 동쪽의 한 섬 제국일 때 이미 그 국체의 숭고함과 국민의 활기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일본제국인 국호에 ‘대’자를 붙인 것은 단순히 국민의 웅장한 기개를 상징할 뿐으로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고 형태로는 한 소국에 지나지 않으나 청일전쟁에서 이겨서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오고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사할린의 남부를 취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남만주의 조차권을 계승하여 성공하고 일한병합으로 드디어 대륙으로 영토를 넓혀 7,000만 인구를 갖는 일대제국이 되었다. 이들 새로운 영토와 새롭게 얻은 국민을 아울러 이루어진 대일본제국을 신일본이라 칭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국가에는 국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신일본의 국시는 종래 국위 선양, 국리민복의 증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말로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제국이 세계 삼대 강대국의 하나로 장차 동양의 맹주로서 국가적 대의와 대도량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뜻이리라. 그리고 대의도 대도량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장래 일어날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그에 대비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곤란하다. 때문에 항상 안을 정리하고 밖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안을 정비함이란 신일본 7,000만이 모두 폐하의 선량한 신민이고 동시에 동포 상호간에 서로 믿고 존중하여 마음을 하나로 하여 국가의 번창을 꾀하고 나를 버리고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일본의 현상은 어떠한가. 안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가는 유감이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 증거는 ‘조선을 보라’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왜 그러한가. 그 책임은 정부와 일선민족과 함께 져야 한다. 우선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은 정부이다. 일한병합 이래 20년 정부는 조선에 대해 펴야 할 정치의 진수를 잊고 있다. 그것은 국시의 근본인

대의를 펴고 대도량을 보이는 것을 잊은 것이다. 대의를 펴고 대도량을 보이는 것은 인민에 대한 기본적 교양이다. 이를 하지 않음은 기본 교육을 펴지 않는 것과 같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통치하지 않는 것이다.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원래 하나의 방법이고 정부에서도 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대의를 펴는 것을 잊었다면 학교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해 조선 민족은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 무책임한 폭언이라고 간주할 자도 있을지 모르나 결코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견해를 밝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다.

무릇 병합이란 한국의 원수(元首)가 일본국의 원수에게 조선의 통치권을 이양시킨 것이다. 당시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병합’이란 말은 많은 토론 끝에 나온 말이라 들었다. 이제는 병합이란 말이 결코 드물지 않은 통용어가 되어 합병과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병합이라는 말은, 먼 옛날에는 몰라도 근대에는 일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쓰지 않았던 말이 아닌가. 그런데 일국의 원수가 그 주권을 타국의 원수에게 평화리에 이양한다는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는 사실을 어떤 문자, 어떤 말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한 것이다. 그 용어의 출처는 모르나 결국 ‘병합’이란 말로 정해졌다고 한다. 그 정도로 일한병합은 전례가 없는 사실로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민중은 이 병합을 어떻게 보았는가. 실령 병합이 평화리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한국은 일본에 멸망을 당했다’ ‘조선을 일본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마음을 비우고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동포의 장래와, 장차 일신일가의 장래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의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선전 관현의 위무(慰撫)에 마음 졸이며 추이를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 밖에도 비분강개하여 병합을 담당했던 한국 정부관계자를 저주한 자도 있고 향토를 버리고 국외로 간 사람 또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사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평화리에 병합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 제일의 육군국으로 일컬어진 러시아와 싸워 이긴 일본국의 무력이 한국민을 위압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힘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자포자기를 하든가 강한 자에게 추종할 수밖에 없다. 조선의 민중은 후자를 택했다. 이렇게 일한병합은 역사에 남을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 역사가의 논평은 자유이지만, 지금의 정부, 아니 어느 누구도 병합의 옳고 그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병합과 동시에 국가적 대의를 조선에 펴고 대도량을 갖고 백성에 임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병합 10년 후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20년 후인 오늘날에는 다스리기 어려운 백성으로 영국의 아

일랜드에 비길 수 있는 상태로 떨어뜨린 정치상의 책임은 현 정부도 역시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대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국가적 대의가 시세에 따라 발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우선 정부가 인민에게 부여한 공약을 실행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한병합에 즈음하여 정부는 “결코 침략한 것은 아니다. 양국의 원수가 합의를 이상 통치권 이양이 단행된 것이다”라고 세계에 언명하였다. 조선의 민중은 그 언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말할 수 없는 의혹에 사로잡힌 자, 비분강개로 피가 용솟음친 자, 불안한 기운이 반도의 산하를 덮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결국 손을 쓸 수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일본 민족이었다면 손 쓸 수 없어도 손을 썼을 것이고 아니 신명을 다했을 것이며 결코 체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민족성의 차이라기보다는 국체의 상이(相異)함과 그 상이에서 나타나는 국가 관념의 차이에 원인이 있고 조선 민족이 오직 일신일가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조 500년 태조 이성계는 함남지역에서 일어나 고려를 멸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태조의 문벌이 특별히 높았던 것은 아니다(전주 이씨는 지금은 매우 번창했다). 또 병사를 일으켜 고려 왕씨를 쓰러뜨리기까지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고려 말에는 군민과 권신 모두 불교에 탐닉하여 일개 불상을 세우기 위해 천호의 식량을 빼앗을 정도의 상태로 민생 폐폐가 극에 달했다. 태조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분기하였고 궁민들은 호응하여 창을 들었다. 문약했던 고려조의 일이므로 관병도 약했다. 굶어 죽기보다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는 의지를 가진 백성군이 강했다. 일개 무인 이성계는 드디어 고려조를 무너뜨리고 왕위에 올랐다. 아마 말 탄 호랑이의 기세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왕위를 노렸는지의 여부는 역사가들에게 맡기고 여하튼 이리하여 이조는 창건되었다. 이 왕조의 바깥에 인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고려조의 유신 정몽주의 외로운 충정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탄식하며 칭송했다. 군주에 대한 충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바 아니나 다만 그뿐인 것이다. 그것은 왕조의 바깥이 오늘날의 말을 빌자면 ‘정권쟁탈’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가 하는 마음은 풍운아, 영웅 모두가 갖고 있을 터이니까. 때문에 이조가 고려 왕조를 대신한 것은 일본에서 말하면 타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가 후지와라(藤原) 씨를 누르고 정권을 잡은 것과 같은 것이다. 형태로 보아 일국의 주권자가 된 것과 단순히 집정이 된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 모르나, 인민의 마음에는 그 이상의 느낌은 없다. 단 정몽주로 하여금 충신의 이름을 붙여주게 된 이유는 된다.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몇 번이나 국가 주권의 소재가

이동해 온 조선에서 인민의 국가 관념이 일본과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특히 중국의 속국으로 지낸 지 오래고, 표면적일 뿐이라 해도 독립을 선언하여 대한제국을 칭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거슬러 봐도 불과 반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신하들이 군주에게 말씀을 올릴 때 주(奏)라 하지 못하고 계(啓) 자를 썼다. 주는 종주국인 중국 국왕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다. 이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배려에서이지만 그런 것이 민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 없다. 조선의 인민은 왕이 생사여탈의 권한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 최상최대의 권력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왕 위에 그 이상의 큰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즉 조선의 왕위가 완전히 지존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즉 각 왕조에 대한 인민의 감정을 열거하면 타이라 씨(平氏)에서 미나모토 씨(源氏), 아시카가(足利), 오다(織田), 도요토미(豊臣), 도쿠가와(徳川) 등 여러 집안의 정권투쟁에 대한 일본 국민의 그것과 같았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조의 유물인 유생은 중국을 중화라 칭하는 데 대해 조선을 소화(小華)로 칭하며 긍지로 삼고 있다. 조선의 주권의 소재는 조선 민족혼의 연원이 아니었다. 나라는 망해도 사직(社稷)이 있다면 일본 민족이 그 의미를 알 수 있겠는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국체 일본의 민족정신과는 연고가 없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망했으나 사직은 확실히 있고 이에 대한 조선 민족의 신념 또한 상실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 사직은 조선 민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한병합 이래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합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고 ‘조선인의 번영 복지를 위해서’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어 민심의 이해를 구해 왔다. ‘조선인의 번영복지를 위해서’라면 ‘조선 민족의 사직이 여전히 있다’는 관념을 버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소리 높여 내선인의 공존공영을 훈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선 민중에 대한 정부의 공약(公約)이라고 한다면 오해일까. 정부가 국민에 대한 공약을 다하는 것은 국가적 대의를 민중에게 펴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공약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 즉,

1. 정부 병합 때 천명한 바에 반하여 조선 민족에 대해 마치 피정복자를 대하듯이 하였다.

이는 무단정치라 불렸으며 일본에서조차 비난의 소리가 높아 1919년 3월 발발한 소요도 이 무단정치에 대한 반감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될 정도이고 항상 무장하여 민중을 대하고 민중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너희들은 무교육자의 집합체이다. 너희들은 세계의 대세를 모르고 경제력도 낮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교육하여 세계의 대세를 알리고, 경제력을 높이며 모든 의미에서 문민화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무조건 자아를 버리고 유순해져라”고 하였다. 민중은 이에 대해 ‘남 위하는 척하면서 제 실속만 차리는 속임수’라고 이해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복종했지만 마음 속 불만은 매우 심각했다. 병합의 주된 이유는 조선인의 번영 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정부의 천명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기는 했으나 적어도 이조시대의 압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 일 년 내내 맑은 날 한 번 보지 못했던 그들의 음침한 생활도 다소 명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보다도 더 강하고 주도면밀한 수단방법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시대에는 대대로 익숙했던 압박의 수법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대개 있었다. 이런 것이지 하며 체념하면 그뿐이었으나 총독정치 아래서는 절대로 안이한 도피가 허락되지 않아 민중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였고 “정부는 거짓으로 병합을 포장한 것이다. 우리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고 믿게 되었다.

2. 정부는 민정을 오해하여, 의식주만 충족되면 그들은 신정을 찬양할 것으로 생각했다.

의식이 족해야 예의를 안다는 선조들의 말이 있다. 이는 확실히 인정을 파악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외는 있다. 그것은 의식이 넘쳐도 예절을 모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식이 부족해도 예절을 지키는 자가 있는 것이다. 특히 세태의 변화가 심할 때에는 비록 의식이 족해도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 평화와 인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예절이 오히려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겨져 때로는 인류의 생존권에 걸림돌이 된다고 기피하는 자도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식자들이 현재 사상국난(思想國難)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필경 그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병합으로 국호가 없어진 것이 먼저 큰 충격을 준 이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정이 매우 변화하였다. 위정자가 계속 일신이라 하며 개혁에 개혁을 더하여 구폐를 일소해 가는 작업은 이를 다른 쪽으로 보면 민중으로 하여금 오리무중에 헤매게 만드는 일종의 나쁜 놀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은 또 뭐가 터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미지의 걱정애 가득 찬 마음이니 어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 향심을 가질 수 있으랴. 조선의 각지에서 불령단의 소위 군자금에 관헌의 눈을 속여 쉽게 모이는 이유는 ‘내일 어떻게 될까’에 민중이 동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오직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산업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일해서 돈 벌라고 편달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민중에게 과연 고마운 일일까.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민중이 나빠서일까. 심각한 걱정을 안고 있는 자는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에서

도 일반적이지 않은가. 하물며 한국시대의 학정에 고통받고 풍족하지 않은 의식(衣食)으로나마 연명해 온 2천만의 생명이 남아 있다. 신정 이래 산업의 개발이 현저하고 농사의 개량도 잘 진행되어 서양 보리 외에 산해의 산물도 많아졌으나 빈곤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고 해마다 아사자도 있고 동사자도 있는데 특별히 신정을 구가해야 할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게 급무이다.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릇된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민중에게 주지시키고 엄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민심 안도의 근본은 여기에 있다. 병합 시 정부가 ‘정부를 믿어라 그리고 안심하라’고 민중을 위무한 것은 안도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민중에게 준 공약이며 되풀이 말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중에게 대의를 펴는 것이다.

확신 없는 정치로

- 민중의 신뢰를 강요한다

옛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같은 뜻으로, 사람이 만약 자신 없는 일을 좋다고 남에게 이를 권한다면 이는 비난받을 일이다. 크게 보아 일국의 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확신 없이 통치를 행하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죄악이다. 조선 통치는 이러한 죄악의 연속이라고 단언해도 결코 실언이 아니다. 의의가 있다면 위정당국에 물어 보라. “조선 통치는 장래 어찌될 것인가?” 하고, 그들은 “글쎄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예상도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통치의 근본방향이 확립되지 않고 그리하여 민심이 방향을 잃어 장래 어떻게 될지 추측조차 못하고 있음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스스로 확신 없는 정치를 행하면서 민중에 대해 정부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국가의 불안, 인민의 불행보다 큰 것은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정한 재판은 민중이 신뢰할 만하다. 농산, 수산, 임산, 광산의 증진, 그 밖의 생산 증식은 병합 당시에 비해 격세지감이 있다. 특히 교육의 보급이 오늘날과 같아질지 한국시대에 몇 명이나 제대로 예상을 했을 것인가. 요컨대 계몽과 편달에 큰 힘을 쏟아 민도의 향상을 꾀한 것이다. 다른 외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이 같은 친절을 베풀고 토착민의 복지를 꾀한 곳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선 민중이 신정의 은택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민중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조선의 독립인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 조선인에게도 그것은 결코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님은 조선의 역

사가 증명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는 아마 정부도 인정하는 바의 견해이리라. 그리고 어느 정도 합당하기도 하다. 게다가 “민중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것은 위정 당국의 말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민정을 살피는 것은 정치의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원하는 바는 조선의 독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유추이다. 물론 독립운동도 일어났다. 민족주의가 주창되는 것도 틀림없으나 이것은 조선 통치에 대한 불평불만을 강조할 뿐이다. 시대 변화에 익숙지 않은 성년자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독립을 기원하는 자도 있는 듯하는데, 그들은 제국정부 아래에서는 도저히 불평이 없어지지 않고 불만이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형사 피고인을 변호할 때 그리고 그가 무죄임을 주장할 때 그는 과연 그 무죄를 믿을 때만 이를 주장할 것인가. 여하튼 조선 독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독립을 외치는 것은 불평불만이 높아진 결과이다. 울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지만 독립운동도 원래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울기보다는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민중의 조선 통치에 대한 불평 불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정부가 조선인을 대우함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사이에 격차의 차별을 두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가 말하듯이 재판의 공정함은 민중도 이해하여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위정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로 공정하다면 민중이 일부러 불평을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도 전혀 불평이 있을 수 없다. 불평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총독정치하에 일본의 자본을 끌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경제력의 증진도, 비록 경제력 등의 용어도 일반 민중은 잘 알지 못하나, 몽롱한 정도나마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아무리 증진되어도 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 인구의 8할을 차지하는 소작농은 여전히 곤궁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다. 매정한 사람들은 “수확이 많아져 사치스러워져서 그런 것이다”고 말할지 모르나 현재 일본에서는 풍작 때문에 농촌이 힘들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도 일본에서는 호경기 때 너무 흥청거렸으므로 최근의 불경기에 더 힘든 것은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으나 조선의 소작농들은 ‘준비를 잘 해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놓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총독정치하에 그 친절한 지도 장려로 해마다 수확이 많아졌으나 각종 세금, 공과금의 종목이 많아져 비료에도 돈이 들고 제품의 개선, 포장의 개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생산비가 들어 결국 증산은 지출증대로 이어져 일만 많이 할 뿐이고 손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독부는 농산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선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먼저 알고 싶다. 지주인가. 지주조차도 수확의 증가 이상으

로 지출의 증가로 힘들어하고 있다. 즉 병합 이전에 지주는 여유가 있으면 경지를 더 사들였으나 요즘은 법률로 엄하게 소유권이 보호받으므로, 한국 시대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 침해받을 우려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지를 사들이는 자가 없음은 이 때문이다. 지방의 자산가 등이 경지를 매수하려 한다면 그것은 전매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값싼 토지를 매수하여 가격 인상을 노려 매각하기 위함이고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은 아니다. 대체로 이와 같다. 때문에 총독부가 발표하는 미작의 실 수확고의 수치가 아무리 커도 민중의 가슴에는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의 보급, 발달을 보면 총독정치하에 장족의 발전을 본 것은 민중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약 오늘날 독립국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일까를 상상해 보라. 역시 상당히 발전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무력하나마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따라 그때의 정부가 교육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민중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많이 노력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한국시대라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민중은 생각할 것이다. 그에 비해 지난 20년 총독부가 교육의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민중은 “조선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지 교육을 위한 교육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위정자가 조선 민중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반감까지 갖고 있다.—혹자의 입에 발린 말은 차치하고—이는 조선의 사정을 모르는 자, 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바라는 건가’ 하고 머리를 갸웃거리게 하는 바일 것이나 정부가 국가적 대의를 펴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산업이나 교육에 대한 총독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위정당국과 우둔한 자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통치의 근본책

— 조선과 일본 민족의 이해 공통

일한병합의 사정은 차치하고 세계에 선포된 병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황제는 국난이 심하고 민생의 피폐가 극에 달해 이를 구할 방도가 없어 일본국의 천황에게 통치권을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민족의 안녕을 존중한다는 가장 명료한 의의가 표현된 것이었다. 조선 민족의 안녕이란 정부의 객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조선 민족의 주관에 대해 충분한 고찰이 더해져야 한다.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지식은 부

족하나 아픔도 가려움도 모를 정도로 무신경하지는 않다. 때문에 총독부의 관리로부터 “이것으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최면술을 걸어 마술사로부터 암시를 받은 것처럼 그저 ‘행복하다’고 답할 자는 없다.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범부인 관리들이 민중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지 거울 보듯이 알 수는 없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민중이 바라는 대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민중이 위정자에게 바라는 객관적인 것 이상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할까. 아니 위정자는 진실로 행복이라 느끼는 바를 줄 수 있다.

조선 민족은 일본인에 비해 문화가 뒤떨어졌다. 지식은 부족하나 약 4천 년 동안 국민으로 훈련을 거친 민족이다. 국위가 떨치지 못하고 선정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만큼 정부에 대한 의뢰심 등이 일본인만큼 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학정에 익숙하여 인내심이 강하고 또 체념도 빠르다.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다루기 쉬운 민족이다. 정치사상도 부족하고 일본인에 비해 다스리기 쉬운 점이 많으나 정부가—또한 모든 일본인들이—형식적 대우는 어찌되었든 마음에 장벽을 두지 않고 입으로 말하듯이 ‘새롭게 얻은 동포’로서 ‘지식 역량이 부족한 형제’로서 허심탄회하게 대하면 조선인의 마음에 아무런 울분도 없을 터인데 총독부 당국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조선인이니까’라는 말로 거리를 두고 ‘그의 행위는 잘못이나’ 조선인이니 관대하게 용서한다. ‘그의 행위는 훌륭하나’ 조선인이므로 뭔가 목적이 있어 그럴 것으로 경멸한다. 조선인들이 크게 감사하지 않는 데 대해 참을 수 없어 하거나 사소한 일에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거기에는 동생이나 누이를 대하는 것 같은 온정도 없고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우월감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박한 타산에 빠지는 경우마저 있다. 조선인이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진실한 용서는 좋으나 경박한 거래는 삼가야 할 것이다.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사악한 것은 나쁘다 하여 선악을 분명히 할 때 민심은 긴장한다. 민심을 긴장시키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동생이나 누이에 대한 애정을 결여하고 경박한 거래로 민심을 이완시키는 것을 마치 새 동포를 통제할 방책이나 되는 듯이 혹은 이를 마치 식민지 통치의 비결인 듯이 생각함은 실로 국가의 화근이다. 조선 민족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즉 병합의 조서에 천명한 일시동의 성지를 받들어 일본 민족과 같은 행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조선의 2천만 민중을 일본 민족으로 만들려는 각오가 없어서는 안 된다.

조선 자치 주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지연장주의, 동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조선에 선거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조선에서 선출된 의원수가 일본 선출수의 3분의 1을 점하게 되어 그들이 단결하면 의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어 국가

의 우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민족의 동화는 결코 바랄 수 없으며, 특히 긴 역사를 갖는 민족성은 타민족으로부터 동화를 강요당할 때 오히려 반발한다. 정부에 대한 조선 민중의 격렬한 반감은 종래 총독부가 취한 동화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영국을 본받아 조선에 자치를 허락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심각한 국가의 우환을 만들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조선에 선거법을 시행할 어리석은 정부가 있을 것인가. 실로 놀랄 만한 우론(愚論)이다. 또한 조선 민족은 결코 일본의 자치령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는 바로 독립의 단계로 들어간다. 독립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직 투쟁만이 일본이 조선을 영유하는 유일한 수확이 될 것이 뻔하다. 논자는 영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나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인의 식민이 먼저 있었고 영국인 이민의 실력이 토착민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영국이 자치령(dominion) 통치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 자치령조차 이민자의 아들에서 손자들로 세대가 흐르면서 본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열어져 지금은 본국과 자치령을 잇는 앵글로색슨의 피도 물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조선은 말할 것도 없다. 재선일본인은 불과 40만(조선인의 100분의 2정도)이고 정부의 무력을 별도로 치면 실력도 조선인 쪽이 훨씬 뛰어나다. 게다가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거기에 자치를 허용하면 다음은 독립을 서두를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누르는 방법밖에는 없다. 즉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도 조선 민족의 대다수가 자치를 선망한다면 우선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꿈 많은 청년 가운데에는 혹시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말에 취해 독립이 아니면 적어도 자치라도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 또 얼마 전 어떤 야심가 몇 명이 독립운동의 발발을 호기로 삼아 자치운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독립이 불허되는 것은 민중도 이제 알고 있다(독립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소민족의 자결을 승인할 것을 제창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독립국가로 승인받은 것으로 조선도 이 민족자결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것이 ‘조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중은 완전히 단념한 것이 아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이때 자치를 허락하면 만족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일고(一顧)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중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면 조선이 한 명의 우두머리에 의해 통일된 이후 버젓하게 독립국의 체면을 지켜온 시대의 역사는 현대인에게는 큰 감격을 주지 않는 반면, 이조 5백년 중국의 속국으로 머리를 조아린 저주스러운 사적은 생생한 감정으로 남아 있다. 자치령이라 해도 이름만 다를 뿐 실은 속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 자치는 민중이 희망하는 바가 아니다. 게다가 현실에 불평불만을 품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평불만이다. 그것은 계속 강조하듯이 향토에 살면서도 마치 이역에 있는 듯한 불안을 동반한다. 이러한 민정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동화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온 것으로 속단하는 자가 많으나 이 역시 잘못된 것도 앞에서 언급하였다. 반대로 동화정책을 철저히 하지 못함은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통치의 근본방침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의 시정방침이 동화정책인 듯이 보이기는 하나 총독부 당국조차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은 내선 동화주의에 의한 것인가?”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 자치의 제창을 듣고는 “결국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리고 사려가 부족한 청년들이 이른바 배일론을 펼쳐도 “조선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이야말로 조선인의 본심을 토로한 것이다” 하고 동정하여 결국 ‘직업적 배일선인’이라는 명칭마저 나오게 된 것은 이 역시 앞서 말한 바이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조차 상당히 이해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한꺼번에 이를 배경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까 염려해서일 것이다. 관리도 조선에 근무하며 본봉의 6할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직무를 떠나 일신의 명예를 얻은 듯하여 ‘머리가 굳었다’는 등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공산주의가 만연할 여지를 주기도 하는 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전 조선에 퍼져있는 신간회 같은 조직은 ‘머리가 굳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이와 같은 사정이다. 시정의 대강은 동화정책처럼 보이나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다 동화정책이 통치방침으로서 최선이며 유일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민심이 적응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것이다. 위정 당국은 말할지 모른다. “통치의 근본방침은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동화정책에 의거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하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뭔가 정책의 오류가 아닌가” 하고. 동화정책 비슷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나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명료하지 않다. 확신을 갖고 행하는 시정이 아니어서 ‘대충 하는 정책’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대상이 조선인이어서 알 잡아보고 친절함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소고기가 영양분이 많다 하여 어린이에게 줄 경우 성년자에 비해 양을 조금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기를 잘게 썰어 소화하기 쉽게 주든가 국물을 내어 주면 될 것이다. 분량만 달리하는 정도로 성년자조차 소화시키기 어려운 불고기 등을 그대로 어린이에게 주는 것은 불친절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다. 조선의 시정에는 이와 비슷한 불친절과 불합리가 있다. 분량을 조절해서 일본인과 같은 것을 조선인에게 주는 것이 동화정책의 본의라고 설마 위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다. 그것은 동화정책처럼 보이나 조금도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유아에게 딱딱한 소고기를 주어 영양은커녕 위장을 상하게 하여 영양불량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조선 통치가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냄은 필경 시정의 근본방침이 확립되지 않아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 자치를 허락하는 것이 좋은가. 자치를 허락하게 되면 오늘날 곤란한 동화정책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양쪽에서 '적당한' 것을 해 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번 주창하는 바와 같이 일선일가(日鮮一家)라든가 내선동치(內鮮同治) 등 조선은 일본의 연장이라 하나 진실로 정부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동화정책은 반드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동화정책을 단행해야겠다는 시정의 근본방침을 확립했다면 먼저 다른 많은 이견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많은 이론에 대해 그것도 일리 있다, 이것도 무리는 아닌 주장이라고 하여 이른바 직업적 배일선인의 존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자의 존재는 조선 통치상 심각한 해독을 퍼뜨리는 것이다. 식자들은 이미 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운동의 경우 일본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회운동이나 조선에서는 일종의 정치운동이고 그 슬로건은 반국가적 의미를 지닌다. 그 사상은 비국민적이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수단, 방법으로 표면을 분장하더라도 정부는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해 압제라는 등 시대착오라는 등 악평이 나오겠지만 조선 민중은 이를 통해 비로소 '가야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경험이 없는 길을 가자면 다소, 아니 다대한 우려가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그런 걱정에는 익숙하다. 가야할 길이 정해지지 않아서 헤매고 있다. 이럴 때 갈 길은 싫든 좋든 한 길밖에 없다고 다그치면 체념도 생긴다. 체념하면 마음도 안정된다. 이런 상태를 민심의 안정이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민심안정은 '체념의 안정'이다. 장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앞길에 광명을 바라는 안정이 아니다. 실 한 오라기를 건드려도 동요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안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친절한 엄호만 있으면 영속한다. 안정하면 즐겁게 살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인간성이다.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광명이 비추게 된다. 그리고 친절한 엄호는 조야의 일치협력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섬세한 친절이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총독부가 농사의 개량을 장려한 이래 특히 미작의 지도 장려에 큰 효과를 보아 미종의 개량, 수확의 증가 등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에 힘을 얻어 전년에 산미증식 대계획을 세워 거액의 경비를 계상하여 이미 이를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니 이 정도로 각지에서 일어난 수리사업으로 전답이 개량되고 한밭을 면했다. 또 공사가 가장 잘 계획된 지방에서는 수해조차 막을 수 있게 되어 일본과 같은 재해가 없는 조선에서 미작의 위험이 거의 없어졌음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모두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이유는 실제의 타산에서 조금도 이익이 없

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수리공사비 할당액—보통 수세라고 한다—이 정보당 많게는 5엔 적게는 3엔을 넘으므로 수확이 다소 많아져도 수세에 상응하는 증세를 올릴 만한 전지가 많지 않다. “말보다는 증거가 중요하다. 수리조합이 설립된다는 소문이 나면 바로 땅값이 내려가지 않는가” 하고 지주들이 말한다. 그 대신 가뭄은 면하게 되므로 3년, 5년의 장기에 걸친 계산이라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지만 가뭄이 당장 닥치지 않으면 피해 정도도 알 수 없고 몇 년 뒤 가뭄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다가 극소수의 대지주는 몰라도 대다수의 지주들은 3년 5년 후에 그 토지가 과연 계속 자기 것일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향산이 있는 자가 조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리사업에 반대하지는 못하므로 마지못해 참가하고는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일본에서는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제한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들리므로 조절이라는 말을 써서 조선에 농업 창고를 짓고 미곡에 대한 금융을 붙여 이입 제한으로 조선미가 입을 타격을 좀 완화시키려 하나 효과가 미약하여 큰 기대를 걸 만한 계획은 아니다. 때문에 산미증식의 계획이 진보하면 할수록 조선미의 가격 하락은 면할 수 없다. 이런 원인에서 오는 미가의 하락은 바로 토지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총독부는 열심히 장려 편달하여 산미증식을 위해 돈을 쓰게 하고 땅을 흘러게 해 놓고 일본에서는 농민 보호를 위해 조선미의 유입을 막으려 한다. 이래서는 조선 농민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관민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너무 노골적이고 함부로 나타나는 데에 놀라서 일선일가의 유대는 일본 측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해는 도저히 일치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을 때 누가 그 오해를 풀 것인가. 일본의 여론이 만약 “미가 하락으로 힘든 건 내지의 농민도 조선의 농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일본제국의 국민이니 희비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일본에 식량이 부족한 때는 조선미로 보충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장래의 인구 증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조선에 산미증식의 대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계속 불경기이고 풍년이 계속되어 미가 하락이 되었다 하여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대의가 아니며 또 일본인이 조선 동포에 대한 정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조선 민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본 민족의 높은 뜻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감격과 신뢰가 조선 민족의 심정을 잡았을 때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애국정신이 싹트게 된다. “우리 내선인의 이해는 일치한다. 희비를 같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일본인과 같이 광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게 된다. 조

선 민족으로 하여금 이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내선동화의 기본조건이고 동시에 동화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조선인이 일본어를 쓰고 조선인이 일본 옷을 입는 것도 물론 동화의 하나이다. 일본어를 학습하면 일본의 사정을 알기 쉽고 유카타를 입으면 일본과 친근한 마음이 들 것이나 전자는 동화를 추진하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고 후자는 경박한 동화의 표현이다. 일본인이 영어를 배우고 양복을 입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은 앞에도 지적했듯이 세계 각국 각 민족이 자연히 동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내선동화의 의의, 동화정책의 목적은 이런 경박한 것이 아닐 터이다. 동일 국민으로서 영욕을 함께하고 희비를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조선 민족을 키워내는 데 있다. 그런데도 현재는 조선의 보통학교(일본의 소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조차 부형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일본어를 알고 있는 부형들이 특히 이를 싫어하는 풍조가 있다. 생각건대 일본어를 아는 부형은 일본의 사정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미의 이입제한을 하는 것처럼 오직 일본에서 일본인의 형편에 따라서만 내선일가나 신부의 동포라는 등 친애의 태도를 보이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형편이 좋지 않으면 내쫓고 귀찮아하는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냉담한 심정을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 한다. 조선에서는 요즘 풍년에 미가하락으로 농민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농민 가운데에도 쌀을 먹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미가가 너무 싸서 곤란하다면서도 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쌀이 너무 많아서만은 아니다. 농촌이 피폐한 주 원인은 탄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미의 이입을 제한한들 또 종래대로 방치한들 미가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인가. 정확한 타산도 세우지 않고 이입제한을 계획하여 조선 2천만 명의 신뢰를 저버리다니 얼마나 단견인가.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화 혼도 법률이 '위난방위' 등으로 인정하는 현대에 살신성인하는 감격을 잃을지 모른다. 물론 살신성인이 시대착오적인 것일지 모르나 아직 현대의 문화에 뒤떨어져 있는 조선 민족이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문자 그대로 '무고의 민'이었던 조선 민족이다. 인정에 감복하고 동정에 감격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것을 따지지 말기 바란다. 이론이 아닌 진정이다. 정부도 일본인도 이 부분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정부가 조선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면만 보지 말고 측면도 속도 보아야 한다. 초대 총독인 고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 통치는 무단정치라 불리며 극단적인 전제정치로 악명이 높았지만 백작의 다방면의 친절과 고매함과 사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 면에는 조선인들도 존경하였다. 그리고 백작의 통치에 대한 악평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좀 달랐다. 무단정치라는 명칭은 일본인이 명명한 것으로 일본인이 말하는 악평을 듣고 "맞아 그래"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병합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민권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에는 물론 불평도 있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헌병경찰에 대해서 매우 심대한 악감을 품게 된 것으로, 이는 재선일본인조차 생각지 못할 정도이다. 주된 원인은 헌병보조원(조선인) 등의 오만과 만행이 주민들을 분격시켰고 나아가 헌병경찰제도에 대한 악감으로 된 것이다. 만행 특히 부녀자에 대한 비행이 대부분 공론화되지도 못했고 가끔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도 경찰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울분을 풀 길이 없어 원한이 결국 총독정치로 귀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웃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도 유신 때 요코하마의 한 유녀가 '내리는 미국에 소매가 젖을 수 없다' 하여 자살한 일이 얼마나 세인을 감격시켰던가. 메이지 시대까지 여자의 교육 자료로 인용되지 않았던가. 부인의 정조문제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관심이 많은 조선이다. 헌병보조원은 외국인은 아니나 그들의 비행 때문에 각지에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게다가 보복할 길이 없어 결국 총독정치를 저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일로 보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감계로 삼아야 한다(서문에 씀). 올해 7월 어떤 조선인이 일본 재류의 조선인에 대해 조선에 돌아갈 것을 권한다며 일종의 불온문서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불합리와 무망(誣妄)이라는 문자를 쓴 것으로 마치 조선인에 대해 반역을 권한는 느낌을 준다. 내무당국은 무슨 생각으로 배포를 허락했는가. 부주의인지 근무 태만인지, 아님 예의 새 사조의 결과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조선 같은 것 어찌 되어도 좋다'는 각오인지 기괴하기 짝이 없다.

이상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이 어떻게 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내선동화의 참뜻에 대해 또한 그것의 달성이 어렵지 않은 실정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 동화정책이 시정의 실제에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경제산업정책의 예를 들어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경제산업정책

— 조선인 본위란 무엇인가

작년 조선에서 산업제일주의라는 말이 제창되었다. 고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 씨가 정무총감 재임 중 제창된 것이었다. 주의로 제창된 것이나 산업제일적인 행정이 테라우치 총독 시대부터 회자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 통치의 전국적 관념에서 보면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나 정치의

제일의적(第一義的) 요항(要項)인 이상 얘기하면 '정석'의 수순이다. 단 무엇을 계획해도 우선 산업의 개발 이하로 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종래의 산업정책은 '무엇을 계획해도'였다. 산업제일주의의 표방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산업 개발이 치민(治民)의 제일의적 요항인 것에 변함은 없다. 충분한 힘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산업정책이 문제가 된다. 정부가 산업 개발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민중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국부를 늘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국부란 대체로 별개가 아니라 일치 내지는 같은 비례로 병행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조선은 예외에 속한다. 그것은 산업정책에 식민지적 시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병합 이래 20년 조선의 부력은 확실히 큰 증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생활이 이에 따라 풍요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정이란 산업 개발의 목표 내지 선후를 정하는 데 일본의 이익이나 편의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병합 후 10년은 회계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라 하여 관세거치—한국정부와 다른 외국 간의 통상조약 폐기의 조건으로—를 위해 보호정책을 취하는 듯이 보이기는 했으나 요컨대 일본본위의 산업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무엇을 내지본위라 하는가.

한국시대에 유치한 자급자족 경제 소비본위의 산업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음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대개 문화가 뒤떨어진 나라에서는 인구가 희박하지만 지력이나 기타 산해의 부를 따지면 모든 자원에 대한 비율이나 밀도는 오히려 조선이 높을지 모른다. 그런 조선에 대해 병합 직후부터 우선 자급자족 경제의 굳은 껍질을 없애는데 거의 모든 전력을 소진한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일본의 거래 및 일본 자본의 활약에 편승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딱딱한 껍질은 깨졌지만 아직 싹을 틔울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인력이나 지력도 정부의 방침과 일본 자본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산업은 상당히 발달했으나 그것은 정부와 일본 자본의 압력으로 추출한 정도의 것으로, 생산의 증식은 일본 자본의 이윤에 해당하고, 그 외 남는 부분은 정부의 수고료(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으나 지조(地租), 기타 제반 세금의 가중)도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자급자족 경제의 타파는 급격한 이입초과를 초래하였다. 과거 몇 년 간 내선무역은 해마다 2,000만 엔 내외의 이입(조선 측으로) 초과이다. 그 결제는 총독부특별회계에 대한 보조금 1,500만 엔, 기타 특별보조금으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이의 변통은 사업공채, 식산채권(殖産債券) 등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제상태하에서 민중이 무슨 덕을 보겠는가.

예를 들어 보자. 정부는 조선에서 면화 1억 근을 생산할 계획을 세워 (미국 중 육지

면의 재배는 보호정치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나 1억 근 생산계획은 병합 후에 세워진 것이라고 들었다) 이미 이를 수행한 것이다. 이 계획은 일본의 방적사업이 모든 원료의 공급을 외국에서의 불리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를 조선의 생산자 측에서 보면 당초 계획의 취지가 그러한 것처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선(南鮮) 지방에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면화의 재배를 시작하게 하였던 것으로 그 대신 잡곡심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은 보통이 아니다. 면화가 비싸게 팔린다면 가격 면에서 대항작물과 비교할 바 아니다. 그러나 농민의 생활은 자신의 작물을 저장해 두고 먹는 걸로 지탱이 되는 것이다. 예부터 5정보 농민 정도면 일본에서는 손색없는 자작농이라고 한다. 그 5정보 농민, 현실적으로 5정보의 경지를 경작하여 전부 돈으로 바꾼다면 과연 5정보 농민의 생활이 편할까, 수확물 중 식료를 저장하고 여분을 팔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우선 '식량 준비'를 기본으로 하여야 비로소 5정보 농민이라는 표준이 서는 것이 아닐까. 만약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꾼다면 농민의 노동은 매우 저렴한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잡곡을 심을 토지에 옥지면을 심으면 농민 생활의 이익을 위주로 생각할 때 면화의 수확이 잡곡의 수확보다도 두 배 이상의 가치로 올라가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게 된다. 생산물의 가격증대라는 명목상의 이익은 일본 자본의 고율을 약속받은 이자 및 이윤으로 흡수되어 버려 더욱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양잠도 총독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근년 꽤 활성화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일본 자본에 대한 봉사액이 지나치게 많다. 많은 금융기관도 자본의 심중팔구는 일본인의 출자에 걸려 그들 자본의 운전이 활발하면 할수록 금리 때문에 고생함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요컨대 조선에서 경제산업정책은 일본 자본의 발호 도약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세운 데 지나지 않는다. 총독부 관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조선인 본위'는 결코 아니고 구주인의 식민지 착취 방법과 비슷하다. 이것이 얼마나 동화의 장애가 되는지를 식자들이 모를 리 없다. 그렇다 해도 지금에 와서 종래의 정책을 바꾸기도 곤란하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그 폐해를 줄이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이다. 거기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일본 자본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금리는 항상 일본보다 높지 아니하면 조선에 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일한병합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연장이라고 일본인이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일본 자본의 금리를 특별히 고율로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물며 노임이 싸고 식량이 싸고 일본 자본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모든 생활자료가 싸고 또 사업 남흥(濫興)의 우려가 없어 투자의 위험을 적게 느끼게 되는 조선

에서 금리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금리를 고올로 하지 않고서는 일본 자본의 유치가 곤란하다면 정부는 정치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권업금융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의 장기대출조차 저리라 함은 빌려주는 쪽의 시각이고 조선인에게는 오히려 고리이다. 대부액은 담보물의 시가의 6할 이내, 실은 반액도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물론 반값에 담보를 떼일 생각은 없으나 계약대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이다. 즉 금리가 너무 높다는 증거이다. 조선의 자력은 일본의 자본을 일본인과 같이 쓰기에는 역부족하다. 그 일본 자본의 도약을 도우려는 경제산업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 자본 때문에 허덕이고 생산의 증산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인다. 일본 자본의 횡포는 실로 한국시대(대한제국시대)의 탐관오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런데도 만약 정부가 결의를 갖고 적극적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조선 민중은 경제적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적 파멸,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결론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에 관해 조선 민심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가에 대해 그리고 조선인의 경제생활의 대요에 대해 신일본의 일부인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소신을 피력하였다. 또한 통치상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교육문제가 있는데, 현재 교육상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을 확립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중의 생활에 특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현상대로 간다면 국가가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보답해 줄 시기는 영구히 오지 않을 것이다. 사회교육이나 일반 민중에 대한 교화도 마찬가지이다. 단 화외(化外)의 민⁵⁾인 만주재류 조선인의 교화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재만 조선인은 국가의 우환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만의 국경이 연장되어 3백 수십 리, 무장 경관으로 사람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재만 조선인의 수가 백 수십만, 불령(불온조선인)의 무리는 그중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누차 경내(境內)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나타내면 인간울타리를 없앨 수 있을 뿐 아

5) 아직 교화를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새롭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대상 지역의 민중을 지칭했던 용어.

나라 국내의 민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로 그들이야말로 일본의 만몽(滿蒙)에서의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일본의 만몽에서의 특수 권익이란 만몽철도의 경영 내지 주차대(駐紮隊)의 주둔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자본으로 만몽의 자원을 개발하고 원료를 그곳에서 얻음과 동시에 우리 생활품의 일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선적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더불어 국민의 이주가 필요하다. 이주민의 다과는 바로 우리 경제세력과 정비례한다. 그런데 일본인은 만몽이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좋아하지 않는가. 일본인은 향토애가 너무나 강해 고향산천, 친척, 친구와 헤어져 멀리 타향으로 옮겨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렇다면 북미로 이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왜일까? 노임이 비싸서일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본인의 구미 숭배열이 미국을 천국이나 극락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같은 이민이라도 미국으로 이주하기보다 조선,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자들이 많은 것을 아는가? 일본어 가운데 영어를 한 마디라도 섞어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풍조, 자신을 버리고 구미를 받드는 사상, 천손민족(天孫民族)의 가슴에 이런 사상이 나타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이주를 좋아하고 만주 이주를 싫어하는 이유도 역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인의 만주 이주는 먼 장래에는 모르나 날로 점차 확충되어야 하는 국책의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종래 귀찮은 존재로 취급해 온 재만 백십여 만의 조선 동포에 관해 다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재만 조선인이 우리 대륙 발전의 전선에서 제국정부의 보호하에 생활의 근거를 세우는 것은 즉 우리 경제세력 부식의 일단인 동시에 그 고국에 사는 동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만선국경 경관의 인간울타리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조선 통치는 일한병합을 합법화하는 대의에 비추어 시정의 근본방침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애매한 경제산업정책을 개선하고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동화정책의 근본적 시설로서 먼저 정부와 일본 동포를 신뢰시키기 위해 조선인의 실력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조선인 본위의 경제산업정책을 취하고 먼저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십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의 사견에 식자 제한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모르나 일본의 관민은 너무나도 조선을 등한시하고 친절하지 않아 감히 성심으로 피력하는 바이다.

〈출전 : 朴春琴, 『我等の國家 新日本』, 朴春琴事務所, 1930년 11월 3일 발행, 1~56쪽〉

4.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4-1]

선고비(鮮高秘) 제5282호

1931년 7월 16일

경시총감 다카하시 모리오(高橋守雄)

내무대신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외무대신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척무대신 하라 주지로(原脩次郎),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선 각 도지사, 교토·오사카·효고(兵庫)·야마구치(山口)·후쿠오카(福岡)·아이치(愛知)·가나가와(神奈川) 각 부현(府縣) 지사 전(殿)

상해회본부 주최 만보산사건에 관한 연설회 예보(豫報)

관하 혼조구(本所區) 야나기시마(柳島) 19번지 소재 조선인 용화단체 상해회 본부에서 이번 만보산사건에 관련해서 조선 내 여러 곳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많은 조선인 희생자가 생겼다. 그들의 폭력행위는 긍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난 원인은 오랫동안 재만 조선인의 박해에 대한 의분으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번에 재경 조선인들이 추이에 따라 경거망동을 경계하면서 합법수단에 따라 여론 환기에 노력하여 외교교섭을 유리하게 가져감으로써 만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해야 한다고 하여, 오는 7월 19일 오후 6시부터 상해회관 강당에서 중국 귀화 반대 재만 조선인 옹호 동경 조선인 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변사는 부회장 박춘금 상해회관 관장 마에다 사문(前田 佐門) 외에 회관의 1,2명의 간부로 하여금 별기(1) 결의를 위해 내무, 외무, 척무 각 대신(각하) 및 조선총독부 등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대회 슬로건은 별기(2)를 인쇄하여 입장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별기(1)]

결의문 초안

만주는 조선 2천만 동포 선조들의 분묘(墳墓)의 땅이다. 이것을 개척해 동양 평화의

화근인 만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동포의 책무이다. 삼천년 동안 중국 관민이 우리 동포에게 가했던 포학은 지금 그 극에 달했다고 생각한다. 만보산사건과 같은 것은 그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동포는 분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한병합의 성지를 본받아 분연히 일어나 중국 관민의 포학을 정복해서 동양평화의 화근을 절멸 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별기(2)]

대회 슬로건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일한병합의 성지를 상기하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내선일치하여 만몽이권을 확립하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만주는 우리의 분묘의 땅이다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호미와 가래로 그 분묘의 땅을 되찾자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중국으로부터 받은 삼천년 압박을 되돌리는 것은 지금이다
- 자각하자, 조선동포여, 중국의 귀화유혹은 우리들을 단두대에 이끄는 것이다. 그 수에 놀아나지 말자

〈출전 : 相愛會本部主催萬寶山事件二關スル演說會豫報 1931년 7월 16일, 『萬寶山農場事件 輿論並新聞論調』 4,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2]

외비(外秘) 제1984호

1931년 7월 18일

경시총감 다카하시 모리오(高橋守雄)

내무대신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외무대신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척무대신 하라 주지

로(原脩次郎), 조선·관동 각 경무국장 진(殿)

동아진흥회(東亞振興會) 주최 선만(鮮滿) 문제 국민대회 개최의 건

6월 22일 외비 제1710호, 앞에서 말한 진흥회 주최 선만 문제 국민대회는 이번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우에노(上野) 공원 자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사회자 진흥회 주간 다치바나 후지마쓰(橘 富士松)의 개회사에 이어 대외 동지회 나이토 준타로(内藤順太郎)를 좌장으로 니시야마 요조(西山陽造)의 경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만주에서 중국인의 조선인 압박에 의해 발생한 만보산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 조선인이 중국인을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치가 좋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우리는 정부 당국에 의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민중이 단결해서 동양평화 유지를 위해 이 난국을 타파하고자 이 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어서 주최자가 입구에서 입장자에게 배포한 별지 선언 및 결의를 낭독하고 찬조를 구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상기 다치바나는 즉시 이 결의문 2통을 가지고 외무성으로 출발했다. 오후 1시 30분 좌장은 그것으로 일단 국민대회를 종료하고 이어서 연설회로 옮길 뜻을 고하고 별지 요지의 연설을 마치고 2시 30분에 다치바나는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결의문 등은 먼저 외무성 및 중국 공사관에서 수리할 것으로 양해를 얻어 두었으나, 개최 전 소괄 우에노 경찰서로부터 다음날 제출하면 어떤가라는 주의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외무성으로 다니(谷) 아세아국장을 방문 면접한 뒤에 이 선언 및 결의문을 제출해서 그 1통을 외무대신, 또 한통을 중국 공사에 전달하는 방법을 의뢰해 왔다.

이 내용을 보고하고 5시 5분 연설회를 종료했다.

천황, 황후 양 폐하를 삼창하고 정숙하게 산회했지만, 연설회 중 청중은 650명이었다. 그중 회사 상점원이 4분(分), 학생이 3분(일본인, 조선인 학생 40, 50명) 그 외는 직공 노동자로, 장내가 매우 엄숙해서 모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위의 연설 개최 중 청중의 한명인 조선인 김강순(金岡淳)의 긴급동의로 아래의 결의안을 제출해 그 초안을 낭독해서 찬성을 구하였는데, 일동을 그것을 가결해서 실행방법을 사회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해 사회자 다치바나는 다음 20일 외무성에 출두해서 아래의 결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결의문

현 내각의 외교는 늘 연약하여 하는 일마다 모두 제국의 위엄에 상처를 입혀 스스로 열등한 지위로 물러나 건국 2,600년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 그 보필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손한 죄로 천벌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의 속정으로 자결할 것을 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결의한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설요지

(중략)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

현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조선인이라 부르나 이는 일본인이 시코쿠인(四國人), 큐슈인(九州人)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한병합 이후 그 실질은 일본인이다. 그런데 만보산사건과 같은 것에 대해 신문지상 등에서는 그 죄가 조선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실은 중국인의 잔인한 폭학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인은 일선용화의 실을 올리려면 먼저 유신 당시와 같은 의기(意氣)를 갖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조선인의 만주 재주자 중 30만은 중국 쪽으로 귀화했으나 이들은 쫓겨나도 갈 데가 없고 살 집도 없어 오직 살기 위해 그런 것으로, 마음속은 일본인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사변에 대해 우리 외무성은 배상금을 중국에 제출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그 원인으로 보아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가.

(중략)

이상 외에 아래 5명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논지는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중략)

동아보민회(東亞保民會) 이사 김건중(金健中)

(하락)

〈출전 : 東亞振興會主催鮮滿問題國民大會開催ノ件, 1931년 7월 18일,
『萬寶山農場事件 輿論並新聞論調』 4,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5. 박춘금,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대의사(代議士) 박춘금

나는 조선에 지원병제도(志願兵制度)가 제정된 것에 감사하는 바이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한병합을 이룬 뒤 금년으로 꼭 28년이 됩니다. 28년 전 일본제국과 한국이 병합당시에 황송하옵게도 메이지대제(明治大帝)께서 한국 2,000만의 인민에 대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금일 이 메이지대제의 일시동인이 실현된 것이 바로 이 지원병제도올시다. 나는 이누카이(犬養) 내각 당시로부터 혹은 청원위원회(讀願委員會)나 건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주도록 하여달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좀처럼 그 주장이 오늘날까지 통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이번 여러분의 평소 조선에 대한 지도와 동정에 의하여 이번 이 지원병제도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도 2,300만의 신일본인은 심중으로 기뻐함과 동시에 작은 아이가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기쁨을 가집니다. (박수)

여기에 대하여는 평소에 많이 걱정하여 주던 9,000만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 모두에 대하여, 그리고 현 내각총리대신을 위시하여 각 각료에 대하여 반도 2,300만의 대표로서 애심(哀心)으로 인사를 하는 바이외다. (박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사람은 일본인이지만은 일본에 와서 배운 말로써 연설하고 있으므로 말이 우스운 제목이 많을 터이지만 그것은 참고 들어주세요. (박수)

나는 지금까지의 정치에 비상(非常)히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의 결함은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과 일본을 병합하였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에서는 동양평화의 기초를 위하여 병합하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동양평화의 기초 때문에 병합한 것에는 틀림이 없겠지요.

(중략)

그리고 이번에 북지문제(北支問題) 같은 것도 나는 조선에서 태어난 박춘금이므로 너
너히 중국인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장개석 정권은 부인하고 있다. 장개석 정권은 금일이 되어보니 그것은
중국 4억을 통일할 정부가 아니고, 일개 마적(馬賊)의 취급을 하여도 상관없을 것입니
다. 이것을 상대로 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후 일본의 갈 길은 혹은 신정권의 성립에 의하
여 그와 중일친선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훌륭한 정권이
되어, 그 정권과 일본이 진정으로 서로 제휴하여 동양평화가 된다면 진실로 일본이 바라
던 바요, 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자면 마음이 대담한 정치가가 있어 이 신정권에 관여하는 정치가를
어떻게 뽑을까 생각하건대 그네들은 지금은 양작보기⁶⁾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편 보기를 하는가 하면 일본은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인으로서 보면 장개석 정권이라 함은 지금은 아직도 훌륭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체 중국인이든지 구(舊)한국시대의 소위 친일하던 조선
인이든지 부릴 때에는 자꾸 부리지만은 세상이 다시 평화가 되면 도리어 확대한다고 말
합니다. 아마 중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은 금일의 장개석 정권을 부인하면서도 신정권이
란 것을 말하여 일본과 진정으로 서로 제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숨어있지 않은
가 하고 생각됩니다. 어째서 숨어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들이 나와서 일본과 서로 제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장개석 정권이란 것이 차츰 승력(勝力)이 붙어
져 와서 나중에는 그들을 국적(國賊)으로 취급하여 최후에 대가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근
심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양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신정권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진실로 일본과 서로 제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면 그것이 만일 장개석 정권에 의하여 그네들이 머리가 떨어질 근심이 있다면, 너희들
뒤에는 일본이 붙어있으니 근심 말라고 일본이 힘 군세게 부축하여 주지 않으면 전고한
신정권이란 것은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오늘날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釜山) 간에 큰 관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
어요. 그 불편(不便)을 철폐하여 주세요. 즉 관세를 철폐하여 주세요. 관세가 얼마나 되

6) 감보기.

는가 하면 겨우 1,500만 원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00만 원쯤 한 관세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사람에게 불편, 저쪽에서 오는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병합하며 28년 이토(伊藤)공이 통감(統監)시대의 10년 30유여(有餘)년, 40년간에 일본인이 겨우 60만 명밖에 조선에 안 갔다면 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였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병합한 본의(本意)로 말하면 적어도 일본인이 4~500만 인은 반도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또 하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 말하면 이제 이중국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대단히 불편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시모노세키까지는 선거권이 있어도 저 쪽으로 건너가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일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외다. 그러므로 이 관세를 철폐하고, 또 조선과 일본의 교통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데 비로소 동일국이며 동일국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원병제도가 제정된 후 벌써 3배의 신청이 있다, 400인이라는 수는 극히 적은 수이나 인간의 기분으로 말하면 현 내각의 국책으로서는 이 이상 더 큰 국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박수) 조선의 미나미 총독은 이 지원병제도가 제정되어 조선에 돌아갈 때에 각 역에 만세소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나는 교육기관도 이번에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정할는지 이것은 예산위원회로부터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이번 북지사변에 대한 반도 2,000만 명의 애국심은 일본에서 출생한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다, 천인침(千人針), 국방헌금, 이 외에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 제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국기를 만들어서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전지(戰地)에 보낸다, 이번 지원병제도가 제정된 후 신청자는 태반 단지혈서(斷指血書)로 신청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말하여도 내선융화(內鮮融和)의 말은 시대에 뒤쳐졌으며 내선일체는 완전합니다. 조선에서 출생한 신국민 2,000만이란 이 사람들에게 장래 여러분의 지도로 야마토(大和)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넣을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속히 훌륭한 일본국민을 만들겠다고 하면 당국과 의원 여러분의 지도 여하에 의하여 나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한 관세가 철폐될는지요?

그리고 중국문화, 이것에는 정신적 문화도 여러 가지 있으나 먼저 요즘 국무대신에 질문한 민정당(民政黨)의 카와사키(川崎) 씨가 소위 중국어를 알아야 하겠다는 것, 중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나도 동감이외다. 지금까지 조선 통치가 늦었다고 함은 통역(通譯)정치였기 때문이외다. 예컨대 범죄인을 조사함에도 우선 말을 모르니 통역을 세워 을(乙)로 갑(甲)에 전하여 갑(甲)을 병(丙)에 전하니 결국 통역 없이 한 시간이면 끝날 것을 세 시간이나 걸려도 그 사람의 참 의사를 알 수 없으며 이쪽 의사를 저쪽에 똑똑히 알릴 수 없는 정치를 해왔으므로 여러 가지 오해며 폐해가 생겼

다, (박수) 중국인에게 철저히 일본어를 가르칠 것과 일본인이 이제부터 북지(北支)와 제휴한다면 중국정치에 대하여 다소 일본이 관여치 않으면 안 될 입장으로 일본인이 중국어를 배울 것이며 영어보다 중국어를 열심히 배움에 따라 우리 동양인 소위 동양문화에 환원할 것이외다. 그러면 점점 대화민족정신을 중국인에게 넣는 것보다 일본인이 자진하여 중국인을 사랑하게 되고 못된 자는 철저히 응징할 것이나 선량한 자는 편(便)이 되어 참 형제와 같이 애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의 중점이 아닌가 합니다. 대체 지금까지 일본인이 실패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은 정직과 성급함이 원인이외다.

이 정직과 성급함은 처음은 여러 가지 수고(受苦)를 맞볼 것이나 나중에 사소한 일까지 성급하게 참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외다. 이제 일본은 참으로 대일본제국이니 대국(大國)의 기분으로 대국성(大局性)을 양해하고 우리(我) 일본과 동일 보조를 취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지지하며 형제와 같이 애호할 것이며 못된 자는 철저히 징벌(懲罰)할 것이외다.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중국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에 있는지, 조선에 관세철폐가 되어서 일본과 조선 간에 관문을 만들지 말고 자유자재로 교통하며 참으로 이 비상시 일본에 하여 9,000만이 일체가 되어 해나갈 그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박수)

〈출전 : 朴春琴, 戰時議會와 余의 演說 『三千里』 10권 5호, 1938년 5월, 55~58쪽〉

6. 홍준표(洪俊杓), 미국 국민에게 고함 - 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

우리의 경애하는 대 미국 국민 제군이여, 우리는 전 세계의 인도와 평화의 유지를 국시로 하고 있는 귀 국과 사랑을 인생의 신조로 삼고 있는 귀국 국민의 신의를 생각하여, 귀 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드리워진 안개를 일소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귀 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및 조선 망명 정객 중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음모를 꾀하여 귀 국 국민의 동정을 얻고, 이에 편승하여 조만간 국제 분쟁을 야기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동포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양 영원의 평화와 동양 문명의 발전을 위해 펼치는 일본제국의 정책과 시정은 당시 귀국 및 다른 문명국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거액의 국비를 들여 토지를 개척하여 혜택을 주고 제도를 개선하여 인권을 인정하고 교육을 장려하여 인지를 증진시키고 산업을 발흥시켜 생산을 꾀하는 등 예의 우리 동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동포의 불리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가 저희를 위하여 노력한 것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를 나쁜 상태에 빠트리려고 했다는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질서는 이제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만족감을 느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망명자들은 공허한 명성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몰두하는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목적하에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귀국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나쁜 음모, 즉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위선적인 행동을 쉽게 간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미국인들에게 바랍니다. 자비롭고 관대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류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당신 국민들이 한국인들의 혐오스럽고 부당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길 바라며, 그들의 정신적 무지를 계몽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한국인들이 방치된다면, 공공의 평화를 위협에 빠트리고, 우리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미래의 행복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보존하기 위해 희생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홍준표

추신)

당신의 도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동봉된 편지들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전 : 日鮮融和二關スル宣傳檄文頒布二關スル件, 1922년 1월 10일, 『不逞團關係雜件』 1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7. 흥준표, 조선 사상대책 단견(短見) 단안(短案)

현재 동양을 덮고 횡행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악화사상이다. 악화사상은 단순히 정치상의 의미에서만 파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민족적, 도덕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각종 방면으로 파급되는 중이다. 조선 사민(士民) 중 이 나쁜 사상에 각종 운동과 연결하여 종교계, 사교계, 교육계, 상업계, 농업계, 정치계, 노동계에서 균중심리를 교란시켜 안녕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종교단체
조선 재래의 불교, 불교 및 예수교,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기타 속신도(俗信道)
- 교육단체
조선 재래의 공맹 교육, 종교교육, 과거(科擧)교육, 사회교육, 철학교육, 기타 교육
- 정치단체
이조시대의 원로 및 귀족, 중추원의 의원, 사회의 사교가, 동양의 역사가, 기타 각종 계급
- 사상단체
조선 민족, 사회, 공산, 배타, 무정부, 민주, 자유, 파멸, 기타 각종 주의
- 노동단체
농촌 소작, 육해 운수, 공장 직공, 회사 사원, 쟁의, 건설노동자, 교통, 광산, 기타 각종 노동

이상의 각 단체는 조선에서 불평분자의 집합단으로 특히 해외에 산재한 불령선인과 서로 호응하여 국제적 분류를 일으키고 일본제국 및 조선 통치를 배척함과 동시에 열국에 이를 선전하여 음모, 암살, 내란이 늘 끊이지 않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상의 단견은 단순히 공상적 이론이 아니며, 이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단안(短案)을 내 보겠다.

- 그들의 책동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책으로는 중추원을 기관(機關)으로 하고 중추원 의원들로 하여금 선전대를 조직하여 연중행사로 유세를 하도록 한다.
- 일본의 신도와 불교를 조선에 전도하게 하고 조선에서 내선 동포의 심경을 초월한

감정의 용화와 교화의 용화를 피하도록 한다.

- 조선 각지의 관공사립 각 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자연과학적 사회의 진리를 연구하게 하여 조선 학생의 사상 심리를 간파하고 서서히 사상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 조선인만으로 밀정기관을 조직하여 그들을 정찰, 감시, 정복하게 한다.

조선 8도 중에서 탁월한 인물을 발탁하여 총독부 파견원으로 만주 각 요지에 배치하여 불령분자의 침습을 방지하고 당해 지방에 재주하는 양민을 보호하고 안도시킨다.

나는 원래 일개 필부로 특히 사회에 특기할 만한 견식은 없으나 조선 유사 삼천 년 이래의 민족성을 깊이 알고 현재 및 장래 내선 동포가 반드시 투쟁적 분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에 충심과 지성으로 단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조선의 위정자, 지사(志士) 각위에게 참고가 된다면 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1930년 10월 3일
무사시(武藏)낭인 홍준표

〈출전 : 洪埈杓, 朝鮮思想對策短見短案, 1930년 10월 3일, 『齋藤實文書』 15, 고려서림, 438~441쪽〉

8.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

작년 11월 24일 재 동경 선인용화단체 간부 이동화(李東華) 등 38명이 모여 ‘조선신흥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결의하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강령 회칙 간부 등을 결정했다. 그런데 내부 구성문제에서 간부의 할당, 기타에 관해 쉽게 융합, 통제할 수 없었고 여러 충돌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 위원합의제를 채용하여 위원장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어쨌든 내부적인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후 위원장에 홍준표를 천거, 1월 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식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렇게 당일 홍준표는 취임과 동시에 종래 자신의 이론을 근거로 순수한 국가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강령 선언 등의 개정 및 간부의 개선 단행을 제의하고 일동이 이를 승인하자 동시에 명칭을 ‘동아신흥연맹’으로 바꾸고 사무소를 동경시 도시마구(豊島區) 이케부쿠로(池袋) 3-1258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그 주요 간부, 주의, 강령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임원

중앙위원장	홍준표(洪浚杓)
상임위원	이동화(李東華), 장정행(將正行), 김창준(金昌俊), 한상철(韓相哲)
위원	이원석(李元錫) 외 9명
집행위원	이근세(李根世) 외 14명
상담역	최유성(崔有聲) 외 11명

(2) 주의 강령 및 실행책

주의 일본국가지상주의

강령

- 본 연맹은 일본 정신을 선양하여 세계의 대덕화(大德化)를 기한다.
- 본 연맹은 내선만 일치단결하여 동아의 대강화를 기한다.
- 본 연맹은 동아 제 민족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

실행책

- 본 연맹은 세계 인류 상애를 원칙으로 열국으로 하여금 만주제국을 승인하도록 할 것을 기한다.
- 아시아의 맹주인 일본제국에 대해 우리는 모름지기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정당한 세력에 의해 생활을 확충하고 문명 민족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다.
- 우리 동포는 대일본제국국민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리적인 노력으로 민권의 신장에 노력한다.
- 본 연맹은 일본제국의 견고한 기초를 파괴하려는 사상의 배격에 힘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혁의 결과 그 후 몇 번의 창립총회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최유성,

한윤동(韓潤東), 김건중(金健中) 등이 상담역으로 되면서 내심 불평을 품고 있음을 감지한 이동화는 일찍이 본 연맹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야망이 홍준표의 위원장 취임으로 깨진 것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이들 세 명과 결탁하여 신속히 위원장을 배척하는 태도로 표변하여 책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홍 위원장은 1월 27일 위원회를 열어 앞서 말한 이동화 이하 세 명을 제명처분에 붙였다. 이들 제명된 그룹은 이동화를 중심으로 위원장 횡포를 폭로하며 동지를 권유하고 개조 반대를 주장하며, 옛 이름 '조선신흥동맹'을 어디까지나 견지하고 위원장 등 중심 간부를 제명한다고 하였고 따로 세타가야구(世田谷區) 기타자와초(北澤町) 3-981 한윤동 집을 임시 사무소로 쓰며 대립상태를 표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분열된 이동화 일파 등 구명(舊名) 지지파는 동아신흥연맹에 대항하기 위해 2월 27일 아노야마(青山)회관에서 동경의 18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연합협의회를 개최하고 석상에서 실업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도항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나아가 만주국 즉시 승인에 관한 결의를 하고 대표자를 뽑아 귀족원 중의원 양원, 총리, 외무, 육, 해, 탁무 각 성 및 각국 대사관을 역방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수교했는데, 각국 대사관 공사관에 대한 것은 경시청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중심인물인 이동화가 무단으로 귀선(歸鮮)하면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다. 잔류 간부 한윤동을 중심으로 8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갱생책으로 새롭게 선언 강령 등을 개정하고 신임원을 결정했다. 이 선언서는 민족적 편견에 기초한 불온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 8월 24일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후 특기할 만한 활동이 없이 지금은 소멸상태이다.

한편 동아신흥동맹은 위원장에 취임한 홍준표가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일반회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많아 그 후 갑자기 신망을 잃었고 드디어 4월 초순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홍준표는 4월 하순에 따로 '동아연맹'이라는 신단체를 결성하고 회원 획득에 광분하여 6월 1일자 '동아의 화평과 중국의 반성'이라는 제목의 동아연맹 팸플릿 제1집 1,000부를 발행하여 각 방면에 분포하고 9월 20일 '아시아민족 각성과 단결'이라는 제2집을 약 1,000부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출전 : 內務省 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1935년,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367~369쪽〉

9. 오사카부 내선용화사업조사회, 내선용화 대책

(상략)

3. 내선용화 대책

(1) 대책 확립의 필요

재주 조선인에 대한 용화대책을 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은 재주자의 실정 및 문제의 의의를 보아 이미 논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이에 새롭게 대책 확립의 필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재주 조선인은 민족이 다르고 일본인에 비해 문화 수준이 훨씬 낮고 심적 경향이나 생활의 실태에서도 거의 생득적으로 특수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특수한 실정에 맞는 특수한 방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 2) 재주 조선인 문제는 단순히 사회사업 내지는 특고 경찰 관계에 한하지 않고 교육, 종교, 산업, 노동, 금융, 범죄, 풍기, 도덕, 보안, 위생 등 각 제반 사항과 관계가 있으므로 각 제반 사항에 걸쳐 관계 방면 모두에서 일관된 방침으로 대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효과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 3) 재주 조선인의 실정은 다년간의 인습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갑작스런 단속 내지 응급 대책으로는 효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대책은 영속적이며 근본적일 필요가 있다. 즉 재주 조선인에 대해서는 특수하고 일관된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새삼 대책 확립의 필요를 강조하는 바이다.

(2) 대책의 추이

재주 조선인에 대한 용화대책으로 실시한 방침의 추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일한병합에서 관동대지진에 이르는 시기

재주 조선인은 일한병합 직후부터 오사카로 오는 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1912년 2백 수십 명에서 1923년 말에는 2만 3,000여 명에 달했지만 당시는 아직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전혀 방임 상태에 있었다.

제2기 관동대지진에서 내선융화사업조사회 설치에 이르는 시기

관동대지진 직후 재주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점차 각종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진재 당시 불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관계 방면에서 문제화되었다. 1924년 나카가와(中川) 지사가 유지와 상담하여 내선융화회를 설치하고 주로 조선인의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또 재주자 사이에도 상애회를 설립하여 보호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런 종류의 친목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2백 수십 단체를 헤아리게 되었다. 부(府)에서는 이들 단체를 조성하여 단체로서 내선융화사업을 수행시킬 방침을 취해 왔다. 즉 이 기간 중의 대책 지도 방침은 재주자의 보호사업을 주로 양 민족을 대등한 입장에서 융화시키는 데 있다.

제3기 내선융화사업 조사회 설치 이후

그런데 재주자의 격증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융화단체에게 이를 맡기는 방법으로는 융화의 철저를 기하기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인의 특수한 실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정책은 오히려 재주자를 더욱 안이하고 불량한 생활에 젖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재주자의 물심양면의 생활 개선 및 향상을 꾀하지 않고 내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융화시키려는 지도 방침은 오류임을 인식하고, 이에 방침을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내선융화사업조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융화대책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대책의 요지

이렇게 오사카부에서는 앞서 말한 실정 및 경과를 보아 특수하고 일관되며 영구적인 대책 확립을 기하기 위해 내선융화사업조사회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기본방침을 확립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하여 생활 개선 향상과 일본화를 꾀하고 나아가 성의를 다하여 보국의 정신을 함양하여 광명을 향유함과 동시에 폐하의 적자로서 국가의 융성을 부익(扶翼)할 것을 근본 뜻으로 한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것으로, 그 실시는 재주자의 특수한 실정에 맞추어 특수한 방책으로 점진적이고 영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며 관계 방면 전부가 일치 협력하여 일관된 지도 정신을 편다는 것이 요지이다.

(4) 대책의 요령

전 항의 대책에 기초하여 오사카부에서 근본방침의 요령으로 다음과 같이 내훈을 만들었다.

내사(內社) 제24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오사카부의 재주 조선인은 최근 현저하게 급증하였다. 그들은 문화 수준이 낮고 특이한 습관으로 저급한 밀주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자칫하면 여러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의 추세를 시정하지 않으면 내선융화상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이런 실정에 비추어 대책의 근본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방도를 써서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하고, 상황의 개선을 꾀하여 이를 일본화하고, 자발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보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모두 광명의 은택을 입어 폐하의 적자로서 국가의 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그러나 온정에 사로잡혀 특이하고 방종한 생활에 흐르도록 방치하거나 너무 준엄하여 장애에 화근을 남길 일은 경계하여야 할 방침이다. 무릇 조선인의 생활에 관한 사무를 맡은 자는 모름지기 이 근본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아 지시받은 융화 방책의 요령에 준거하여 서로 협력하여 일관된 방침으로 최선을 다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내선융화 방책이 실효를 거두어 철저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계 사무 당사자가 서로 협력하여 긴밀히 연락하고 일관된 방침으로 사무에 임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는다. 향후 별도의 훈달과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 취급조항의 취지를 힘써 행하고 내선융화 방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여 특수한 방법을 연구하여 행정 효과를 얻도록 힘쓴다.

2) 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

현재 내선문제의 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지나치게 오사카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주제한에 관해서는 이미 제도가 있으나 향후 이에 더욱 힘쓰고 불량 또는 밀항자의 강제송환, 신도항자의 채용 정지와 현 거주자의 고용 장려, 도항 제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도항조건 강화, 방종한 생활 교정을 위한 지도적 단속 실시 등 각종 정책을 강구하여 현 거주자의 보호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쓴다.

3) 용화단체에 관한 건

소위 현재의 용화단체는 대개 사리사욕을 꾀하기 위한 것, 단체 발기가 유해무익한 것이 없지 않다. 용화단체의 존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신용 있는 독지가를 지도자로 세우고 유효적절한 사업을 경영하며 재원을 회비에서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들 우량단체로 하여금 연맹을 조직하도록 지도 조성하고 그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점차 해산시키고 단속을 엄하게 하여 이러한 종류의 단체 신설을 금지한다.

4) 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

무릇 국민은 취학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주 조선인의 태반은 무교육자로서 여러 문제 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이 유감이다. 방도를 잘 세워 취학 적령기 아동의 의무 교육 보급 철저를 꾀함은 물론, 탁아소 증설을 꾀하여 유아에게 입학 전 훈련을 시키고 간이학교를 확충하여 미취학 아동의 취학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 교풍(矯風) 지도 및 직업 보습 교육, 성인의 재교육 등 각종 방도를 강구하여 일반 교육 과정의 개선 향상을 기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국민정신 함양 및 생활 방식의 일본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교풍 교화에 관한 사항

각종 내선문제 해결의 근본 취지는 재주자의 교풍교화를 철저히 하고 일본 동포와 차 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속히 앞서 세운 교풍 사업을 오사카부내 전반으로 철저히 보급하고 재주자의 정신 작흥, 생활의 일본화 및 악습 교정 사항을 늘 전반적으로 연찬하여 각종 교화정책의 실시와 아울러 소위 지도 단속에 힘쓰고 생활의 개선과 향상에 힘써야 한다.

6) 보호 시설에 관한 사항

무릇 재주 조선인은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활 개선과 향상을 꾀하여 일본화한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통된 생활난을 구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함이 보호 시설 계획의 요체이다.

즉 주택, 노동, 금융, 위생, 공제 및 몰핀 중독자 보호 등의 사항에 관해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신중하게 특수한 방도를 강구하고 반드시 교화정책을 곁들여 그저 혜택에만 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7) 경찰 단속에 관한 사항

무릇 경찰 단속의 집행에서 그 대상 여하에 따라 완급의 차이는 있으나 내선문제에 관해서는 그 특이한 생활 태도와 융화 방책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이의 단속 방법은 제반 사상에 걸쳐 긴밀한 연락을 취해 항상 특수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정에 맞게 이른바 지도적 입장에서 엄하게 법규를 운용할 것을 요체로 하여, 내선융화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와 같이 내훈함.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

[붙임]

훈사(訓社) 제432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훈령 보냄.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취급 규칙

제1조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의 연락 통일을 꾀하고 그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 부에 내선문제협의회를 설치한다.

내선문제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 내선문제에 관계있는 과에 내선계(內鮮係)를 설치한다.

제3조 과의 업무로서 내선문제에 관한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 과장은 처분 전에 내선문제협회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훈사 제433호

총무부장, 학무부장, 경제부장, 토목부장, 경찰부장

내선문제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훈령 보냄.

1935년 9월 21일

오사카부 지사 야스이 에이지

내선문제협의회 규정

제1조 내선문제협의회는 내선문제에 관한 사무의 연락 통일을 꾀하여 철저를 기한다.

제2조 협의회를 나누어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과장협의회

주임협의회

제3조 과장협의회는 사안의 관계상 과장으로 조직하고 사안의 주무부장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주임협의회는 사안의 관계 각 과 내선계주임으로 조직하여 사안의 주무는 과장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관계 과의 지정은 의장인 부 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개폐 및 의장의 직무를 행하는 부장 또는 과장이

- 사고 시 그 지명에 의해 과장 또는 내선계 주임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 과장협의회회의 협의에 붙일 사항은 주임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제6조 사무의 성질에 따라 내선융화사업조사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과장협의회회의 회의를 거쳐 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 제7조 본 협의회의 사무를 정리시키기 위해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어 지사가 이를 명한다.

〈출전 : 大阪府内鮮融和事業調査會, 在住朝鮮人問題卜其ノ対策, 1936년,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3, 三一書房, 915~919쪽〉

Ⅲ. 러시아 연해주 지역

1. 공의회에 대한 보고

조선인 비밀단체의 교육에 관하여 뿌리아무르주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
(1909년 5월 12일)

수찬분지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 ‘공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불법단체가 조직되었다는 헌병대의 정보가 있다. 공의회는 현재 조선에 있으면서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는 단체인 ‘일진회’의 지회이다. 이 단체는 한인마을 세명거우(일보정거장 부근)에 살고 있는 뛰어난 활동가인 한인 김성수, 백남직, 정성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성수 - 조직자

백남직 - 서기

정성옥 - 부회장

헌병대는 위 세 명에 대해 수색을 벌여 많은 양의 문서를 압수하고 김성수, 백남직을 체포하였으나 정성옥은 도망쳤다.

최태일(작년에 조선에서 수찬(수청)으로 이주)에 의하면, 세명거우(Се-мен-гоу)에 사는 김성수는 ‘일진회’의 전권을 받아 세명거우에 지부인 공의회를 조직하였는데, 김성수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목적은 조선인 의병의 활동을 방해하고, 러시아인들의 활동을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낸 모든 것을 일본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김성수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증인에게 공의회에 입회하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믿은 증인은 공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1루블을 냈다. 1908년 12월 15일 김성수는 증인에게 65루블을 주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인들의 정세와 의병 활동을 조사하여 함북 회령에 사는 김주역에게 보고할 것을 위임하였다. 증인은 김주역에게 수찬에 있는 모든 의병들에 대해 보고하고, 김성수가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은지에 대해 알아 와야 했다. 12월 17일 증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조사를 한 후 회령으로 가서 김주역에게 그가 한 일을 보고하였다. 김주역은 증인에게 김성수는 아직 조선으로 돌아 오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와 함께 김주역은 증인에게 70루블을 주면서 그의 동생인 최경필을 수찬으로 보내 그 도중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과 의병의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위임하도록 했다. 돌아오는 길에 증인과 그의 동생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최경필은 그의 형이 일진회의 전권을 받은 공의회의 회장인 김성수로부터 65루블을 받았다고 말하고 1908년 12월 수찬에서 조선으로 갔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도착하여 형은 김주역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들의 활동과 수찬 지역의 의병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였다. 그 후 김주역은 일본인 하사관과 병사 3명을 동반하고 증인의 집에 와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수찬 지역을 조사하러 가줄 것을 요구하며 70루블을 주었다. 2월 11일 그들은 형과 함께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노보끼에프스크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이자청이 진술한바, 1908년 11월 김성수가 그의 집에서 조선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공의회 회원(약 60명)의 전체회의가 열리니 그에게 회원으로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인은 공의회의 임무가 조선으로부터 일본인을 몰아내기 위해 의병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성수는 조선의 전직 관리이다. 그는 1902년경 수찬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일진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공의회를 조직하여 약 180명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공의회의 주된 목적은 의병을 지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통일하려는 것도 아니다. 모집된 회원들은 어떠한 입회금도 내지 않았으며, 회원 명부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 그는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적이 아니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탐들로부터 돈이건, 위임장이건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한다.

백남직은 조선인 시골학교 교사이다. 1905년에 러시아로 왔다. 1908년 10월 김성수가 그에게 공의회의 비서가 되어 공진회의 규약을 제정해달라고 제안했으며 그는 김성수가 말하는 공의회의 임무에 따라 규약을 제정했다. 공의회의 목적은 의병들의 계속되는 강압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대체로 의병에 맞서는 것이었다.

심문조서와 번역문에 있는 조선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1. 공의회 회원명부 2부
2. 김병균에게 보내는 김성수의 편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나는 현재 의병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모든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

다. 수드호헤(Судхохе) 마을에서 해안지대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인들의 통합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될 수 있는대로 순세끼이당(Сунсекая партия, 의병)을 박멸해야 한다.

3. 엄인소에게 보내는 김성수의 편지. “조국에 대한 불안정은 우리들 사이에 모두 같다. 그러나 애국자인 척하는 채순소는 자신의 백성을 갈취한다. 먼저 그러한 인물들을 박멸해야 한다.”
4. 조선인 편(변?)사우(Пхеи-са-у)에게 즉각 무기를 가지고 부대로 오라고 하는 의병 부대의 명령서
5. 최모가 의병을 이용하라고 그에게 준 100루블을 돌려받았을 때 갑자기, 그러나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 1909년 1월 3일자로 24명의 조선인이 서명한 증언
6. 공의회의 임시규약.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협회의 나아갈 길-동포들을 하나의 대오로 결집시키고 강하게 통제할 것. 협회의 목적—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치하여 힘쓸 것. 노령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한 일을 모두 자세히 조사할 것.” “협회의 회원 중에 협회를 빙자하여 백성을 박해하는 자는 엄중한 형벌에 처할 것”
7. 돌려받은 돈, 소, 말들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스쿠에 있으니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엄인성과 김두성에게로 오라는 공고문. 만일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협회로 연락할 것.
8. 의병에게 희생된 조선인들과 조선 마을의 명단

쁘리아무르 군관구 사령부에 조사서를 제출하면서 쉘르바꼬프 대령은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영사관은 이상의 사업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사는 4월 5일 일본으로 떠나면서 부영사에게 해를 입은 조선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라고 위임했다. 이에 따라 쉘르바꼬프 대령은 협회의 회원으로 파악된 모든 조선인들을 추방하고 지방 당국으로 하여금 남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그곳으로 자신의 밀사를 보냈다.

위에 대해 존경하는 각하께 분명 자치의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비밀협회의 조직은 아마도 외국인들 중에 죄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출전 : Доклад правителя канцелярии господину Приамурскому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тай ного кор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т 12 мая 1909(조선인 비밀단체의 교육에 관하여 뿌리아무르주 총독에게 보내는 보고서, 1909년 5월 12일),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소장 뿌리아무르주 총독 문서군(ф.702), оц.3, д.376, л.17~19об)

2. 뿌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

1912년 3월 1일 현재 뿌리아무르주 지역 내 일본 측에 속한 비밀요원 명단

1) 훈춘 주재 일본 부영사관의 고용에 따라 노보키예프스크-훈춘 지역 내에서 활동한 한인 명단

나해룡(羅亥龍) : 26세, 70엔 지급받음
김진오(金鎭五) : 21세, 70엔
이정구(李正九) : 23세, 70엔
김용언(金龍言) : 47세, 70엔
김집현(金集現) : 28세, 70엔
안평도(安平道) : 28세, 15엔
박하언(朴河顏)¹⁾ : 28세, 70엔
황천일(黃千一) : 27세, 70엔
최선보(崔先甫) : 27세, 알려진 바 없음
차오장(車五將) : 알려진 바 없음
지운경(池云景) : 알려진 바 없음

2) 노보키예브스크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위에 열거한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전달한 한인 명단

윤대동(尹大同) : 40세
임학봉(林學奉)

1) 顏의 독음은 '안'이나 한글필사로 '박하언'이라 쓰여짐.

채오장(蔡五將)

임세윤(林世允) : 러시아를 할 수 있음, 37세, 머리를 깎은 형

김한서(金韓瑞) : 러시아어를 할 수 있음, 43세, 머리를 깎은 형

최삼보(崔三甫) : 러시아어를 할 수 있음, 31세, 머리를 깎은 형

홍재관(洪在寬) : 26세, 부인은 28세

3) 노보키예프스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그곳으로부터 군대가 포진해 있는 장소들을 따라 시베리아로 옮겨 다닌 한인 명단

김내원(金來元) : 46세

이화운(李化雲) : 24세

박근화(朴根化) : 29세

성사계(成仕啓) : 44세

박화영(朴化榮) : 37세

포시에트 거주자 : 조병주(趙秉珠)

훈춘 부대에 근무하는 인물 : 채양서(蔡陽瑞)

〈출전 : Списокъ тадныхъ агентовъ,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службѣ японцевъ въ пледълахъ Плиамурскаго края, къ I марта 1912(1912년 3월 1일), 러시아 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소장, ф.1, оп.1, д.1898(문서번호 1-1-1898-1)〉

3.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고경(高警) 제16371호 1920년 6월 4일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으로부터 차관에게

◎ 국외정보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원 보고 요지)

(중략)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4월 4·5일 사건 이후 신한촌(新韓村) 거류민회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 전 시가의 조선인을 망라한 조선인 민회를 조직하고 아래와 같이 역원(役員)을 선거하고 별지(別紙)의 민회 규칙을 설정했다.

- 다음 -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규칙 제4장 제9조 중 1920년 5월 23일 역원을 선거함.

회 장 : 이상운(李尙雲)

부회장 : 전병희(全秉熙)

의사원(議事員) : 윤능효(尹能孝), 조영진(趙永晉), 이설(李髙), 최만학(崔萬學), 오성문(吳聖文), 주사선(朱四善), 이동준(李東俊), 함세인(咸世仁), 지용운(池龍雲), 최영봉(崔英鳳), 이민우(李敏禹), 장길환(張吉煥), 정치문(鄭致文), 박양섭(朴揚涉), 김경재(金敬載)

학무원 : 채성하(蔡成河)

검사원 : 조영진(趙永晉), 김종철(金鍾喆)

중재원 : 조영진(趙永晉), 채성하(蔡成河)

재무원 : 이설(李髙)

(구장은 각 구에서 선거)(기타 아직 선정 안 함)

민회규칙(假) 제33조에 의해 공선(公選)된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마토애(麻土涯) 대표자 : 이민우(李敏禹), 한여천(韓汝天), 한유연(韓俞淵)
2. 시화현(時化峴) 대표자 : 장길환(張吉煥)

3. 동령(東嶺) 대표자 : 김기흠(金基屹), 정치문(鄭致文), ?昌健
4. 산류애(山流涯) 대표자 : 한내선(韓乃善), 박양섭(朴陽涉), 김덕기(金德基)
5. 소친거우현(小親巨隅峴) 대표자 : 이원준(李元俊), 김용준(金龍俊), 김용수(金龍守), 김경재(金敬載)
6. 개리성(開里城, 市中) 대표자 : 전병희(全秉熙), 박병일(朴炳一), 이태현(李泰賢)
7. 신한촌 남촌(南村) 대표자 : 최명주(崔秉周), 채성하(蔡聖河), 김익지(金益智), 허양현(許良賢), 김종철(金鍾喆), 조영진(趙永晉), 이설(李高), 이형욱(李亨郁), 이행식(李行植), 유세오(劉世五), 최만학(崔萬學), 서우근(徐禹根), 함세인(咸世仁), 이범석(李範錫), 이동환(李東煥), 고명호(高明昊), 오성문(吳聖文), 윤능효(尹能孝), 박희평(朴熙平), 박원세(朴元世)
8. 신한촌 동촌(東村) 대표자 : 지용운(池龍雲), 이동준(李東濬), 서자범(徐子範), 김병량(金秉亮), 강석진(姜錫璉), 최만학(崔萬學, 徐相律), 이상운(李尙雲), 장봉익(張鵬翼), 최진국(崔鎭國), 김공신(金公臣), 최영봉(崔英鳳), 최재형(崔在衡), 최덕송(崔德松)

이상 50명

발송처 : 내각 총리대신, 각 성(省) 대신, 척식국 장관, 경시총감, 검사총장(檢事總長), 조선군사령관, 양(兩) 사단장, 헌병대 사령관,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 사령관, 관동장관(關東長官), 동군(同軍) 사령관.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 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회는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회는 블라디보스토크 구역 내에 거류하는 조선인으로 조직한다.
-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신한촌²⁾에 둔다.
- 제4조 본 회의는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고 친목을 꾀하고 문명적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해주의 新韓村.

제2장 사업

제6조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 독려 및 실업 지도에 관한 사항
- 2) 통신에 관한 사항
- 3) 자선에 관한 사항
- 4) 위생에 관한 사항
- 5) 민사 형사소송, 일체 비송사 사건에 관해 화해 중재 및 초□(招□)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7조 본회는 이곳에 거류하며 1년 간 회비의 의무를 이행하고 만 20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임원선거 및 권리

제9조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의사원 15명 이상 20명 이하
- 4) 학무원 1명
- 5) 감사원 2명
- 6) 중재위원 2명
- 7) 재무원 1명
- 8) 구장 약간 명
- 9) 한문 서기 1명
- 10) 노문 서기 1명

제10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정하고 매년 1월에 선정한다.

제11조 회장과 부회장은 단기 무기명투표로 하고 의사원 이하는 연기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후보자는 각 임원에 대해 3명을 추천한다.

- 제12조 서기는 의사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13조 회장은 회의 일체 사무를 총관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 제1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의 사고 시 그 사무를 대리한다(단 회장, 부회장 모두 사고 시에는 의사원회를 열어 임시 대리를 선임한다).
- 제15조 의사원은 회 중 중요 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의안을 제출한다.
- 제16조 학무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일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학부형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한다.
- 제17조 감사원은 언제라도 재정의 수지와 기타 문서를 검사하여 의사원회에 보고한다.
- 제18조 중재위원은 민형소송 및 일체의 비송 사건을 조사하고 화해 중재와 관청과의 조절에 관한 사무를 회장의 지로를 받아 집행한다.
- 제19조 재무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일체 재정 출납을 관리한다.
- 제20조 구장은 각 구역에서 1명을 선정하여 사건의 보고 또는 공포의 책임을 갖게 한다.
- 제21조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일체의 문서장부를 관리한다.
- 제22조 임원 중 사고를 당해 만 1개월 궐석한 경우는 회장은 의사원회를 소집하여 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3조 본회는 사무 발전을 위해 명예고문 약간 명을 정한다.
- 제24조 본회는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매매용달 등의 계약이 있을 시에 증명 혹은 보증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25조 본회의 임원 중 정 부회장 및 서기는 유급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명예로 정한다.
단 외구역 임원의 차비 및 문구 잡비는 그 구역 내에서 분담한다.

제5장 재정

- 제26조 본회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과금을 징수한다.
- 1) 전원의 의무금
 - 2) 수수료
 - 3) 의연금
 - 4) 기부금
 - 5) 잡 수입금

제27조 본 회의 재정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마지막 날을 끝으로 한다.

제28조 예산안 외에 1구좌 500원 이상의 지불은 의사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6장 의사원회 및 총회

제29조 의사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 정기회는 매월 제1일요일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장은 매 의회에서 수시로 추천하여 정한다.

제30조 의사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사무집행의 감독
- 2) 수지 예산 및 결산
- 3) 의사원의 제출한 의안
- 4) 거류민의 안녕 방침
- 5) 총회소집
-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의사원회는 의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제32조 의사원회에서 의결한 중요 사건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제33조 총회는 매년 말에 블라디보스토크 내에 거주하는 호주 20명마다 대표 1명을 공 선한 의원으로 성립된다.

제34조 총회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35조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및 7월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의사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제36조 총회에서 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집행임원 선거
- 2) 집행임원의 사업업적 평가
- 3) 의사원회에서 보고한 일체의 사항
- 4) 기타 중요 사건

제37조 총회에서 결의한 사건은 제국 총영사관과 러시아 소관 관청에 보고한다.

부칙

제38조 본 규칙은 총회에 제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본 규칙은 다이쇼 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출전 : 國外情報 浦潮所德朝鮮人民會 設立ノ件, 1920년 6월 4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西比利亞』 1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기밀(機密) 제32호

1920년 5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기쿠치 요시로(菊地義郎)

외무대신 자작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조선인 등의 행동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목록대로입니다. 참고를 위해 보고드립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 재류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2. 포시에트 조선인 거류민회에 관한 건
3. 한민학교 설립에 관한 오태국(吳泰國)의 사건에 관한 건
4. 선인적십자 간호부에 관한 건
5. 조선인과 과격파와의 관계에 관한 건
6. 신한촌(新韓村)에 시료소(施療所) 개설 건
7. 고귀남(高貴南) 등 귀 블라디보스토크 설에 관한 건
10. 조선인 청년단과 '파르티잔'과의 연락 건
11. 불명선인 등의 폭도 유사 행위에 관한 건
12. 조선인의 불응화에 관한 건

1. 블라디보스토크 재류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한 건

4월 4, 5일 사변 이래 블라디보스토크에 친일적 조선인 민회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사정을 보아 간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신한촌 뿐만 아니라 시내, 동령(東嶺), 삼류애(三流涯), 마상토애(麻上土涯), 시화현(時化峴), 소친거우(小親巨隅) 등 각 방면으로 분리된 부락이 있어 종래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신한촌 민회의 명을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 신한촌 민회가 홀로 전횡을 일삼아 재정, 기타 모두 부정이 많았다. 신한촌조차도 작년 7월 콜레라가 발생할 당시 이후로 동남으로 분리하여 소위 동촌(東村)은 한민학교를 경계로 하여 약 200여 호가 별도로 민회를 설립하여 청렴하게 사무를 보아 왔다. 또 동령 즉 시의 동쪽 끝에 있는 마트로스카야 스라호로카 방면의 조선인은 물론 삼류애(三流涯) 방면도 따로 민회를 만들고 있었다. 이들 독립 단체는 이때 신한촌 남촌의 것과 합병하여 한 단체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특히 동촌은 이 건에 대해 당 관으로 출원해 온 것이다. 따라서 4월 4, 5일 사건 후 임시로 보내 온다. 회장(4월 17일자 기밀 제20호 참조) 이하 간부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의 각 단체는 그대로 위생부(즉 청결사무를 취급하는 부)로서 이를 존치시켜 이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총회라 할 만한 것을 조직하는 의미에서 기토 통역관으로부터 때때로 각 부락 사람을 설득하여 점차 합병을 진행시켜 5월 16일에 이르러 각 부락은 대표 의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직 신한촌 동촌만은 여전히 이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기토 통역관은 현 동촌회장 주임선(朱任善), 이동준(李東濬), 이상운(李尙雲)을 당 회로 초대하여 이번에 설립하는 조선인 민회는 총영사관의 감독하에 있고 또 각 부락이 대표자를 내어 스스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현재 각 구에 있는 민회 즉 위생부는 이를 존중시켜 종래대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설득하자, 그들도 겨우 납득하여 5월 22일까지 대표자를 보냈다. 대개 신한촌 동촌과 남촌 사이에는 재정상의 관계뿐 아니라 적지 않은 감정 충돌이 있어 새로운 민회 조직에서도 동촌 사람들이나 남촌 사람들이 필시 민회를 독점할 것이 예상되어 새 민회 가입을 꺼려하는 일이 있었다. 한편, 4월 4, 5일 사건 후에 임시로 신한촌민회장으로 추대된 조영진(趙永晉)과 같은 사람은 일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배일 조선인일 뿐 아니라 종래 여러 번 신한촌 민회와 관계하여 재정상 불신용을 받은 행위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평도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민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일반 조선인 사이에 신망 있고 배일주의가 아닌 적당한 인물을 회장으로 보냄과 동시에 일본 관헌의 간섭의 흔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런 조건에 적당한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드디어 5월 23일자로 대표위원의 총회를 열어 회칙을 논의하고 회장 이하의 간부를 선거한바 회장에 이상운, 부회장에 김병희(金秉熙)가 당선되고 의원 15명, 기타 임원도 선출되어 겨우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가 성립되었고 회칙은 아직 개정해야 할 점이 조금 있으나 점차 적절한 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당 회장 이상운은 길주 출신으로 일찍이 러시아로 건너와 분투한 결과 일번천(一番川)에 기와를 엮은 목조 가옥 및 두 곳의 택지를 갖고 신한촌 내에서도 두 곳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여 부동산 소유 측면에서는 재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중 유일한 자산가이다. 강직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격으로 조선인 사이에 정평이 나 있으나 무학이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정도이나 러시아어는 유창하고 러시아 이름은 '이반 이와노키치'이고 43세이다. 일본인 사이에도 지인이 적지 않고 종래 정치적 운동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배일 행동도 없다. 단 문창범(文昌範)과는 오랫동안 친한 사이로 문씨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왔을 때 이씨 집에 숙박한 적도 있으나 나중에 문씨와 이씨는 사이가 나빠져 최근에는 문씨도 이씨 집에 출입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씨는 회장 봉급 월 50엔을 사양하였다.

부회장 김병희는 원래 경흥군의 서기였다. 직무상 실책이 있어 형을 산 적도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후 오로지 상업에 종사하여 23년 만에 상당히 성공하여 여경휘(呂景輝)와 함께 성공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현재 의용함대 기선 조선항로의 취급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당한 학식이 있고 조선인 사이에 신망도 있으나 반대자도 있다. 오히려 지력이 뛰어난 편이고 종래에는 배일자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친일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 민회 간부 중에는 채성하(蔡聖河), 조영진(趙永晉) 등의 인물도 있고 의사원(議事員) 중에는 비교적 분자도 적지 않으나 이를 지도, 감독하여 점차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이곳 조선인의 상황은 4월 4,5일 사건 이래 신한촌에서 민회, 기타 일에 간섭하며 재주 조선인의 의사를 좌우하고 있는 불령의 무리는 급히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었고, 잔류 조선인 중 학식이 좀 있는 자도 한때 검거되는 등의 일도 있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 형편이다. 나아가 민회조직도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해 충의를 보여주려는 무리는 거의 없고, 있다면 우리 관헌을 이용하여 사리를 채우려 하거나 또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허물을 찾으려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혹은 시국에 편승하여 표면으로는 일본에 접근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등의 무리이다. 요즘은 완전한 친일적 단체인 민회 조직을 보기가 자못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의 민회

는 비교적 양호하고 오직 앞으로 이의 지도 감독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거류민회 대표자

민회 규칙으로 공선된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1) 마토애(麻土涯, 유토와이라 부르는 호산포대 해안에 있음) 대표자
이민우(李敏禹), 한여천(韓汝天), 한유연(韓俞淵) (3명)
- (2) 시화현(時化峴, 시와이자는 에게르시에드) 대표자 장길환(張吉煥) (1명)
- (3) 동령(시 동쪽 끝 마트로스스카야 스라키) 대표자
김기흠(金基屹), 정치문(鄭致文), 연창건(延昌建) (3명)
- (4) 산류애(山流涯, 시 코마로프스카야의 서쪽 해안에 있음. 사뉴와이라 함) 대표자
한내선(韓乃善), 박양섭(朴揚涉), 김덕기(金德基) (3명)
- (5) 소친거우현(小親巨隅峴, 친고차이 즉 일번천이다) 대표자
이원준(李元俊), 김용준(金龍俊), 김용수(金龍守), 김경재(金敬載) (4명)
- (6) 개리성(開里城, 시중 카이레요니) 대표자
김병희(金秉禧), 박병일(朴炳一), 이수현(李秀賢) (3명)
- (7) 신한촌 남촌(한민학교 이남을 말함) 대표자 (20명)
최병주(崔秉周), 채성하(蔡聖河), 김익지(金益智), 허양현(許良賢), 김종철(金鍾喆),
조영진(趙永晉), 이설(李高), 이형욱(李亨郁), 이형식(李行植), 유세오(劉世五), 최만
학(崔萬學), 서우근(徐禹根), 함세인(咸世仁), 이범석(李範錫), 이동환(李東煥), 고명
호(高明昊), 오성문(吳聖文), 윤능효(尹能孝), 박희평(朴熙平), 박원세(朴元世)
- (8) 신한촌 동촌(한민학교) 대표자(13명)
지용운(池龍雲), 이동준(李東濬), 서자범(徐子範), 김병량(金秉亮), 강석진(姜錫璫),
최만학(崔萬學, 徐相律 兩村에서 올라 옴), 이상운(李尙雲), 장압익(張鴨翼), 최진국
(崔鎭國), 김공신(金公臣), 최영봉(崔英鳳), 최재형(崔在衡), 최덕송(崔德松)

민회 간부

회장 이상운

부회장 김병희

의사원 윤능효, 조영진, 이설, 최만학, 지용운, 최영봉, 이민우, 장길환, 정치문,
박양섭, 김경재

학무원(學務員) 채성하
검사원(檢査員) 조영진, 김종철
중재원(仲裁員) 조영진, 채성하
재무원(財務員) 이설

2. 포시예트 조선인 거류민회에 관한 건

포시예트 수비대장 미야타 기헤(宮田喜平) 중위는 4월 4, 5일 사건 후 바로 조선인 민회를 계획하여 그곳 재류의 귀화, 비귀화 조선인을 하나의 단체로 하는 대일본 거류민회를 조직시켜 회장 이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구매조합, 기타 각종의 사업을 일으키게 하니 조선인 등이 크게 감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민회장 박일영(朴一榮)은 21일 규칙을 갖고 당 관에 출원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포시예트는 먼 곳이므로 지도 감독을 미야타 중위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민회 임원

회장 박일영(朴一榮), 부회장 김봉협(金鳳協)

이사 석삼봉(昔三鳳), 정기호(鄭基浩), 김병섭(金秉燮)

회계 및 서기 방□후(方□厚)

상의원(의장) 김춘연(金春淵), 조원선(趙元善), 조상백(趙尙伯), 김봉서(金鳳瑞)

주화중(朱化仲), 김택준(金澤俊), 김형섭(金形燮), 정관현(鄭寬鉉)

김만석(金萬錫), 김원선(金元善), 김용삼(金龍三), 최형관(崔亨觀)

김경호(金瓊浩), 홍우관(洪友官), 김성임(金成任)

(하략)

〈출전 : 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1920년 5월 26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 1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발 61호

1920년 3월 30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정무부 촉탁 도(道)사무관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眞雄) (인)

조선총독 앞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파견군 당국에서도 조선인의 단속 및 회유방침을 결정하고 그 필요를 인정하여 심의 중이라는 내용을 3월 9일발 제40호로 보고드렸고, 그 후 제가 이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대체적으로 채용되어 24일자로 별지와 같이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배일 조선인은 지금 심리상태가 거의 광란상태이므로 3월 18일자 제49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차제에 일격을 먼저 가해 위신을 보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뒤 서서히 본 방침에 따라 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따로 군 당국 및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여 대체적인 동의를 얻었지만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는 바입니다.

포군모(浦軍謀)2 제45호(비)

조선인 단속에 관한 지시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행동지역 내에 있는 조선인은 그 수가 매우 많고 조선·상해·만주 등에 흩어져 있는 불령선인과 기맥을 통해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한 여러 결사를 만들어 신문을 발행하고 빈번하게 배일선전을 하고 있으며, 독립의연금이라며 금품을 강요하거나 강탈하고 무기 탄약을 구매하여 조선 국경의 불온한 단체에 보내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용병이 되어 독립 거병의 준비라 자칭하며 과격파 군대에 투신하여 감히 일본군에 대해 끊임없이 필요없는 저항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무기 탄약을

황령한 뒤 조선 국경 쪽으로 도망가는 자도 많다. 원래 러시아령에 거주하는 조선인 중 정당하게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순일본인으로 일부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일본인인 조선인이 우리 군의 행동지역 내에서 위와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편, 지금이야말로 실로 그들을 단속할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별지의 조선인 단속 규정을 만들어 관계자들은 본 규정에 따라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목적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20년 3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사령관 오이 시게모토(大井成元)

조선인 단속에 관한 규정(비)

- 제1. 조선인 단속은 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군참모장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참모부 제2과가 맡기로 한다.
- 제2. 조선인 단속의 실행은 블라디보스토크 파견 헌병대 사령관이 이를 맡는다. 헌병대 사령관은 본 업무 실행에 관한 기획을 세워 군참모장의 승인을 받고 그 실시 에 관해 보고한다.
- 제3. 군 예하부대 및 특무기관은 조선인 단속 관계자로부터 원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정무부장은 조선파견관으로 하여금 본 업무에 관해 의견을 군참모장에게 상세히 전하도록 하고, 또 정황을 조선총독 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 제4. 본 업무에 관해 수시로 군의 행동지역에 체류하는 조선파견관은 소재 헌병대장과 협력하여 그 임무에 임한다.
- 제5. 조선인 단속에 관해서는 소재 총영사 혹은 영사와 협력해야 한다.

조선인 단속에 관한 건(비)

1920년 3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참모장 이나가키 사부로(稲垣三朗)

조선인 단속에 관해 군사령관으로부터 규정 및 지시가 있었기에 그 단속에 관해 종래의 경험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를 위해 통보한다(사령관, 헌병대장, 파견군, 총영사, 영사 등에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편자주).

제1. 애무(愛撫)

1. 종래 조선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을 열등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심리상태가 조선인을 통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군인 및 일반 일본인은 조선인을 우리 일본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조금도 모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제국의 신민임을 기뻐하는 감정을 갖도록 한다.
2. 군의 의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널리 의료를 행한다.
3.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일용생활품 중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이를 구입하는 일에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 (2)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조합 또는 구매조합 등과 같은 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 (3) 각종 상행위에서 조선인의 이익을 증진한다.
 - (4) 조선에는 예로부터 이웃이 서로 돕는 미풍양속이 있다. 이 양속을 이용하여 현재 조선 내지에는 곳곳에 금융조합이라는 것이 조직되고 있다.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4. 조선인 집단이 있는 곳에는 곳곳에 서당 또는 사립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규정 및 유지 방법 등이 극히 불완전하므로 이를 조장하여 교과 학용품 구입을 알선하는 등 그 밖의 일에 관해 가능한 한 진력한다.
5. 조선인과 외국인의 관계에서는 늘 적극적으로 조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 회유

1. 친일적 경향이 있는 자들을 규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단체에 특권을 주는 방법을 강구한다.
2. 조선 및 일본의 진보한 각종 시설 경영 상황을 주지시키되 그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환등활동사진 등을 이용한다.
- (2) 속담 또는 한문으로 비교적 평이하게 기술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 (3) '카드'식 삽화를 만들어 배포한다.
3. 조선 또는 일본을 관광하도록 노력한다.
4. 본디 조선인은 언론집회 등을 좋아하니 각지에 간담회 또는 강학회 등을 개최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또 세계의 대세를 숙지하도록 한다.
5. 그 밖의 특별한 수단으로서 각지의 유력인물로 보이는 자를 물색하여 몇 명을 목표로 삼아 이에 대해 본 항목 각호에 준거하여 회유를 시도한다.

제3. 단속

제1과 제2의 수단을 사용했지만 고지식하고 불온한 무리로서 감히 국법과 조헌(朝憲)을 문란케 하는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먼저 러시아 각 지방의 사실상의 정무당국과 교섭을 벌여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단속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단속은 하지만 내실이 없다면, 우리 군은 국가의 자위 수단으로서 국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디 조선인은 가까워지면 이내 무례해지고, 무례해지면 곧바로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무례하게 되었을 때에는 함부로 날뛰는 말과 같아서 이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적당한 권위를 내세워 대하면서 그들이 외경심을 갖도록 한 뒤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면 그들은 실로 다루기 쉬운 민족이 되고, 조선인이 종순한 종족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경험하는 자들이기에 조선인에 대해서는 은위(恩威)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대처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전 : 朝鮮人取締及懷柔方針二關スル件, 1920년 3월 30일
김정주 편 『朝鮮統治史料』 10, 한국사료연구소, 1971년, 108~113쪽〉

6. 연해주 간화회(懇話會) 회칙

간화회 규칙

제1조 본회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친목융화를 주의로 하여 본회 소정의 규약을 전수하는 자로써 조직함.

제2조 본회는 이 명칭을 간화회라 칭하고 본부는 니콜스크(尼市)에, 지부는 지방에 둠.

제3조 본부 및 지부는 회칙에서 칭함을 각기(刻記)한 회인(會印)을 가짐.

제4조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가) 시베리아에 재주하는 조선인의 귀화·비귀화를 불문하고 그들의 행복 증진
- (나) 모국 좌주(左住) 동포와 밀접의 제휴
- (다) 일본인과 친목 환원

제5조 전 조에 의하여 본회는 대개 진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가) 학교 도서관의 개설
- (나) 일어 강습
- (다) 공개 강연
- (라) 일본 및 모국에 견학
- (마) 신문, 기타 출판물의 간행
- (바) 빈민주제
- (사) 위생 보중(保重)에 관한 사항
- (아) 선인사업, 기타에 관한 제 조사
- (자) 일본인과 경제 제휴에 관한 연구
- (차) 화해 중재 및 소개에 관한 사항
- (카) 지부의 개설

제6조 회의 사업은 좌기 회의 중 어느 것이든지 그 날 의결 결과에 의하여 실시함.

- (가) 회원의 일반회의
- (나) 대표자 회의
- (다) 간사 회의

제7조 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결의 결과 부과된 의무를 부인할 것을 얻지 못함.

- 제8조 일반급 대표회의는 정예 및 임시의 2종으로 함.
- 제9조 정례회의는 1년 1회 소집하여 과거 1기의 간부에서 처리한 사업의 조사와 중요 사항의 의결 및 다음 이 사업의 계획 및 예산을 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동시에 간부의 개선(改選)을 행하기로 함.
- 제10조 임시 회의는 중앙간부의 지정에 의하되 혹 지정에 의하지 않을지라도 회원 100 명으로써 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음.
- 제11조 간사회의는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의 부탁사항 또는 경력사항을 회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함.
- 제12조 일반 및 대표자 회의의 기일 장소를 함께하여 제출 의안은 중앙간부에서 편성 하여 이를 회원에 통보하며 또한 의장에서 변경보족(變更補足)할 수 있음.
- 제13조 일반회의의 결정은 출석회원 외, 반수 이상의 대표자와 간사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출석자가 없으면 불가함.
- 제14조 대표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에 1명씩으로 한하여 선출함.
- 제15조 각종회의에 대한 채결(採決)은 다수결에 의하여 표수가 동등한 결과에는 의장에 결정권이 있음.
단, 직원선거의 득표는 이 출석원 반수 이상의 점을 취하여 가결하고 반수 미만의 다점(多点)이라 함은 무효로 인정함.
- 제16조 간부를 나누어 중앙간부, 지부간부와 함께 회계검사원으로 함.
- 제17조 회계검사원은 본 정수를 3명으로 하되 중앙(지부) 간부에 대하여 특수(特許)의 권한이 있음.
- 제18조 중앙간부는 회장, 부회장, 신문사장급 10명 외 간사로 하고 약간의 원문(願文)을 설치함.
- 제19조 지부간부는 부장급 수명의 간사로 하고 약간의 원문을 설치함.
- 제20조 니콜스크(尼市)에 대한 회사업의 직접 취급은 중앙간부에 속하고 지방에 대하여는 지부간부에 속함.
- 제21조 간부는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행함.
- 제22조 비상한 경우에 대하여 간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출을 행함.
- 제23조 간부의 책임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함.
단 회의의 결과에 의하여 기간 내에라도 해임할 수 있음.
- 제24조 간부는 회장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짐.

(가) 간부의 문서는 회장의 재결(裁決)을 요함.

(나) 금전의 수입 및 지출

제25조 회가 발행할 서류는 회장 혹은 간부장의 서명을 요함.

제26조 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혹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한 가격의 회비 및 기부, 기타의 납입으로써 이에 충당함.

제27조 회원은 필히 회칙에 복종할 자로 함.

제28조 정년(丁年)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은 간부가 되거나 혹은 이를 전행할 권한이 없음.

제29조 부덕한 행위자 회칙 위반자 및 회의 주지에 해(害)가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자는 회에서 제명함.

제30조 회원의 제명은 회의의 결과에 의함.

제31조 본 부 및 지부는 본 칙에 준거하여 업무 집행상 필요한 부칙을 말할 것을 얻음.

부칙 제1호 간학회 회계 규정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간학회 회칙에 준거하여 간학회 본부 및 신시민보사(新時民報社)에 대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

각지 지부에 대해서는 회계규정을 정하고 회장에게 보고할 것.

제2조 금전은 재무간사, 신이사장 및 회계검사원이 협의한 후 회장의 인가를 얻어서 확실한 은행에 예입(預入)하고, 이 예증(預證)을 징(徵)하여 확실히 이를 보관할 자로 함.

제3조 직무간사는 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금전의 출납이 있을 때마다 이를 등기(登記)하고 정확히 정리하여 둘 것.

- 1) 현금출납전
- 2) 금전출납 증빙서

제2장 수입

제4조 회비를 징수한 때에는 이 송부증에 의하여 재무간사 또는 그 지정한 역원이 이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교부하며 현금출납전에 등기할 자로 함.

잡수입에 관한 수입의 취급도 전(前) 항에 준함.

제3장 지출

제5조 항례(恒例)에 관한 경비는 간사가 확실한 증빙서에 의하여 이를 지출하며 매월 말 회장의 출납명령을 받을 자로 함.

제6조 전(前) 조 외의 경비지출을 요할 시에는 간사로서 확실한 증빙서를 징(徵)한 후 회장의 출납명령을 받아 이를 지출할 것.

일이 급할 시는 간부에서 이를 결행(決行)하고 속히 회장에게 보고할 것.

제4장 결산

제7조 결산은 좌의 2종으로 나눔.

정기결산 매년 1회

임시결산 회계검사원의 요구 또는 회장의 필요로 인한 때

제8조 정기결산의 보고서는 총회 또는 신문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할 것으로 함.

제5장 감독

제9조 회계검사원은 결산 때에 장부서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고서에 이서, 서명 또는 날인할 것.

제10조 회계검사원은 필요할 때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장부서류 및 금전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이에 관한 의견을 회장에게 신고할 것을 얻음.

부칙 제2호 간화회 중앙간부 복무세칙

제1조 회장은 간사장, 신문사장 이하의 역원(役員)을 지휘하여 사무의 정리에 임하며 회무 전반의 감독에 임할 자로 함.

제2조 회장은 회무지도에 대하여 니콜스크(尼市) 특무기관헌병대영사관과 특별 밀접한 연계보호를 요함.

제3조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제4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의 처리에 임하며 회장 부재 시 이를 대리함.

제5조 간사장은 간사로서 아래를 지휘하여 간사 업무 전반의 감독에 임하며 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짐.

제6조 교육주임간사는 교육 전반에 관한 건을 처리함.

제7조 재무주임간사는 부칙 제1호에 준하여 본부직무의 처리에 임할 자로 함.

제8조 서무주임간사는 서무 전반에 관한 건을 처리하며 서기 이하의 사용인의 감독에 임할 자로 함.

제9조 고문은 회장의 청구에 의하여 회무지도상 필요한 의견을 설명할 자로 함.

부칙 제3호 신문사에 관한 규정

제1조 신문은 간사회의 기관지로 하여 선인사상의 선도 및 세계의 사정에 통요(通堯)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신문사는 간사회에서 받은 정액의 예산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광고, 기타 수입은 회 본부에 납입할 자로 함.

제3조 신문사는 부칙 제1호 제 3조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임사원으로 회계를 관리하게 할 것.

제4조 사장은 사원 이하를 감독하며 신문 사무에 관하여 회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질 자로 함.

제5조 사장은 업무 집행상 니콜스크(尼市) 특무기관과 특히 밀접한 연계보호를 요함.

부칙 제4호 회비 징집에 관한 규정

제1조 회비 징집을 위하여 시내 및 촌락을 적당한 수구(數區)로 나누어 각 구장(區長)으로서 회비의 징집을 회장 또는 지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

제2조 회비 체납자는 시내의 구장은 직접 회장에게, 촌락의 구장은 지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그 성명(姓名)을 보고할 것.

제3조 회비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가함.

(가) 씨명을 신문지상에 광고함.

(나) 간사회원에서 제명함.

부칙 제5호 총회명칭과 매년 정기회의

제1조 본 회의는 연해주에 총회가 되었으니 그 범위가 광활함이라.

총부(總部)를 니콜스크(尼市)에 두었으나 지휘, 감독하는 본 연해주 일대에 걸쳐 있을지라. 총회가 니콜스크에 있으나 연해주 총회로 확인함.

제2조 본 회의 총회는 매년 4월 1일로 정기회의를 하며 임원선거도 다음 총회일에 결의할 것.

제3조 본 규칙에 대하여 가감 또는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총회로서 처리할 것.

(출처 : 沿海州懇話會會則, 1921년 11월 9일,
『朝鮮人に對スル施政關係雜件－朝鮮人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7.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기밀공(機密公) 3호

1921년 11월 19일

재 니콜스크 영사 스기노 호코타로(杉野鋒太郎)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진(殿)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의 건

본 건에 관해 지난달 7일자 아삼(亞三) 기밀공 제207호의 귀 서신의 내용은 잘 받았습
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지에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긴요한 보조금은 조선인 흥
학(興學)에 따른 조선인 소학교 유지비에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거액에 달합니다. 즉 학
교 25곳에 대해 1곳에 월 100엔, 합계 2500엔입니다. 또한 친일선전기관으로서 발행하는
조선어 『신시민보(新時民報)』에 대한 보조금 월 300엔(특무기관의 보조금 월 300엔이 있
지만 유지 곤란으로 인해 300엔이 더 필요함), 연 3만 3,600엔입니다. 이는 시의 간
화회(懇話會)가 희망하는 예산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취사선택하여 삭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조금 할당 사정상 일시에 거액을 배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두세 학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어쨌거나 이를 포함한 가운데 검토한 뒤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 보조금을 배부해줄 것을 바라며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첨부해 회보하는 바입니다.

본 서신의 사본 수신처 : 블라디보스토크

니콜스크 · 우수리스크시 연혁

니콜스크 · 우수리스크시는 청나라 시대에는 고성(古城)이 즐비하다고 해서 쌍성자(雙城子)라 불렸지만(조선 명칭은 소왕령(蘇王領)), 1858년 6월 청 · 러 양국이 조인한 텐진 조약(天津條約)에 따라 우수리주(烏蘇里州) 전체가 러시아령에 속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작은 마을 니콜스크가 그 전신이다.

1868년 남부 우수리주에 만주 마적단(러시아인은 만자(滿子)의 난이라 부른다) 사건이 발생해 곳곳에서 약탈과 살육을 저지르고 집을 불태워 초토화시키고 떠났다. 이 마을도 그 난을 피하지 못했는데, 발해왕국 시대부터 존재해왔고 그 방면의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숙신족(肅慎族)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간직한 쌍성자의 유적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

고금의 우수리주는 숙신족이 전부 점거한 곳으로, 읍루(杼婁)가 점거한 이후 발해가 일어나 상경(上京)을 영고탑(寧古塔)에, 동경부(東京府)를 지금의 니콜스크 · 우수리스크시에 설치했다.

이후 거란에 정복당하면서 그 지역은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다음으로 여진, 금, 원이 교대로 그 지역의 사방을 정복했다. 이리하여 우수리 주가 러시아에 합병될 때까지 약 300년간 쌍성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면서 초목이 무성하고 야수와 맹수가 들끓게 되었다. 선인(先人)이 판단한 지역의 이점은 후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그 극동 경영에도 이 지역을 중요한 한 지역으로 택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를 이용, 또한 우수리 철도와 동청(東淸) 철도가 만나는 지점으로 경제적 및 군사적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오늘날 인구 4만여 명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선인의 이주

조선인의 시베리아 이주가 시작된 것은 약 50년 전 조선의 함경남도과 함경북도에서 큰 흉작이 일어났을 때이다. 굶주린 사람들은 척박한 고향 땅을 버리고 북동쪽에 비옥한 대평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나라에서 금지한 것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 국외로 나와 영고탑, 훈춘, 쌍성자(니콜스크)로 통하는 옛 길을 따라 땅을 차지하고 여러 곳에 부락을 형성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러시아인 이주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의 이주와 개간을 환영하고 장려했다. 또한 이조시대에는 함경도 주민을 유독 등한시하면서 압박했기 때문에 국외로 도주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하여 우수리 방면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발생시켰다(그 방면의 조선인은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출신자들이다). 통감정치 시대에는 불평 조선인들이 해외로 탈출하여 그 무리들의 일부가 더해지면서 이주자 수가 증가했다. 더 나아가 합병 후에는 배일 조선인들이 빈곤 이주자들과 함께 이주하면서 그 수가 급증했다. 또 러시아 정부도 한때는 정사적(政事的) 의미에서 이를 환영하고 귀화시켜 러시아 국민과 동일하게 대했다. 피차간의 이해가 맞물려 조선인의 세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의 이주는 부단히 계속되고 있는데, 마치 백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잠입하면서 멈출 줄을 모른다.

조선인의 집중 거주지와 그 수

조선인의 수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에서 스파스코예까지 우수리 철도 연선에 있는 역 부근에 5,000여 명, 또 서북 국경까지 들어와서 철도 연선에 있는 역 부근까지 4,000여 명이 있다. 그 밖에도 두 철도 연선을 끼고 흥개호반(興凱湖畔)의 저지대, 수분하(綏芬河) 강 유역 및 우수리의 상류 도필하(刀畢河) 유역의 비옥한 땅에 부락을 형성하여 묵묵히 거주하는 자들을 합치면 13만여 명에 달한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조선 명칭은 소자령(蘇子嶺))의 서남쪽에 흐르는 수분하 강의 분지에 다수의 조선인 부락이 있다. 총칭하여 수이푼(秋豊)이라 한다. 또 시를 중심으로 러시아 촌락 사이에도 있어서 시내 및 그 부락의 인구는 3만여 명에 달한다(어느 부락에도 속하지 않고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조선인 수는 약 1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동부 시베리아의 조선인 세력의 중심지인 까닭은 조선인 대부분이 농경에 종사하는 한편 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아편을 채취한 뒤

밀매함으로써 갑부가 된 자들과 유식자계급도 많이 있고, 따라서 배일 및 한국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군자금을 구하는 동시에 그들이 음모를 꾀하는 근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문창범(文昌範)이나 홍범도(洪範圖) 역시 이곳에 제반 계획을 꾸몄으며, 그 밖에도 우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무리들도 모두 한 번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한다.

친일 간화회

러시아제정은 혁명에 따른 과격파로 인해 전복되면서 노농(勞農) 정부가 대신 정치를 행하자 정령(政令)을 행하지 못하고 엄청난 소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세력은 극동에 파급되었고 때마침 황군(皇軍)이 출동하여 그 소란을 잠재우고 안녕질서를 유지했다. 그 위세에 놀려 과격파와 행동을 함께한 종래의 배일 불령선인 등은 뿔뿔이 흩어져 그 자취를 이 방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의 원래 사대주의인 조선인들은 지금의 러시아의 아침이슬과 같은 허무한 급변을 목격하고는 오로지 황군의 비호 아래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각성하였다. 이에 친일을 창도하는 자들이 손을 잡고 연해주의 황군 주둔지대의 조선인 부락이 많은 곳에서 간화회(한국민회를 개칭한 것)를 조직한 것은 1920년 5월경이었다. 이 모임은 육군 특무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니콜스크·우수리스크 간화회의 조직 및 본 지부의 재정, 학교를 비롯한 그 밖에 관해서는 첨부한 별지에 상세히 적었다).

조선인의 각성

조선인들에게는 여명이 찾아왔다. 한국독립을 창도하는 불운한 단체의 운동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衣食)을 구하고 안주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정사적(政事的) 욕망이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돌아오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순진한 농민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재산을 군자금을 위한 것이라며 강요하여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간파한 조선 농민들은 오늘날 문명의 세상에 열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을 기도하는 것은 나무에서 파란 물고기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독립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이를 배척하면서 조소하기에 이르고 있다.

수많은 조선인들은 인도(人道)를 거스르면서 관헌의 눈을 피해 마적의 가혹한 요구를 인내하며 경작해온 양귀비 재배를 버리고 수전을 개척해 쌀을 수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성과는 일본인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번 연도는 불행히도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었다. 이 지역 및 그로테코오 지방의 수확고 예상은 80만 석이었지만 실제 수확은 30만 석이라고 한다. 쌀 경작 1데샤친(약 1정 1반)의 수확은 가격으로 계산하면 같은 면적의 양귀비 재배보다 높은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 다만 쌀 경작에는 양귀비 재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흥학운동

조선인의 흥학 즉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기운과 맞물려 그들은 한국어 및 국수(國粹)를 보존하고 조장하여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제창된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하여 만주의 비옥한 평야와 우수리의 비옥한 토지에 옛 거주자 숙신족의 혈족 여진의 후예라는 이유를 들어 그 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다. 이전의 독립운동단 무리들 역시 이 새로운 기운을 인식하게 되면서 무력운동을 버리고 그 지역에 개입하여 원래 품 뜻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을 동반자로 삼아 나아가지 않으면 일본인의 극동 러시아령에서의 발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 흥학(문화)의 기운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회유해야 할 것이다.

벌써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조선인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미국 선교사 일파이다. 그들은 포교라는 명목으로 올 여름부터 교회를 이곳에 건설하여 부속 조선인학교를 열었다. 감독은 남감리교회(南監理教會) 선교사 정재덕(鄭在德)이다. 또한 전도사 10여 명을 조선인 부락에 파견해 포교에 힘을 쏟으면서 흥학을 권장하고 있다.

부속학교를 시작할 당시에는 조선인 여학생 20명 내외였지만 지금은 조선인 남녀학생 50여 명에 달하고 러시아 공립소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

올 여름 메소디스트 주교 랭브스는 미국 및 조선인 선교사 수 명을 데리고 경성을 출발해 만주 및 연해주 방면을 시찰한 뒤 그곳에서 문화포교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돌아오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선교사 테일러를 거주시켰다.

장래에 그들의 활약에 대한 정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불온한 단체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흥학운동을 조성하고 유도하여 그러한 우려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간화회 본부 임원명

회장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	김만건(金萬健)	39세	상업
부회장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	박남규(朴南圭)	41세	상업
임원			
함경북도 경흥군(慶興郡)	안중현(安仲鉉)	45세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慶源郡)	한광숙(韓光叔)	25세	상업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	서운철(徐允哲)	31세	상업
경상도 정송	이명순(李明順)	46세	상업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이형수(李亨洙)	35세	상업
회계			
함경북도 경원군	김인학(金仁學)	38세	상업
교육계			
함경북도 경원군	김여백(金汝伯)	25세	상업
서무계			
함경북도 경원군	박자군(朴子君)	45세	집 임대업
고문			
함경북도 경흥군	박의봉(朴儀鳳)	60세	집 임대업
함경북도 경원군	한규석(韓奎錫)	57세	집 임대업
회계 감사원			
함경북도 경흥군	황두진(黃斗珍)	44세	상업
평안도	함동철(咸東哲)	46세	상업
함경북도 경흥군	김규환(金圭煥)	35세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시(조선 명칭 소왕령) 가구 수 446 인구 1,929명(남 1,035명 여 894명) 간화회에 등록된 자			

간화회 월 예산액

수입	1,450엔	각 가구에서 50전(가구 수 2,900)
지출	1,257	
내역		
월세	100엔	유지비 월 642엔(연 7,704엔)
신탄 등 연료비	67	(해독 곤란) 월 615엔(그 가운데 월 300엔 보조) (연 7,380엔 중에서 3,600엔 보조)

문방구	25	합계 월 1,257엔(연 15,084엔)
출장 차비	50	
교제비	50	
예비비	100	
조선인 서기 월급	80	
조선인 서기 월급	70	
경비 월급	50	
감리인 월급	50	
신시민보(新時民報) 발간비		
편집인 월급	85엔	해당 지역 특무기관에서 월 300엔의 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회원들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11월부터 폐간의 비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 사이에 친일 문화 선전을 위한 적절한 기관이기에 300엔의 보조금을 더 받아 합계 600엔을 받기를 희망한다.
기자 월급	65	
인쇄비	450	
잡비	15	
계	615	
합계	1,267	

니콜스크 간화회 지부

러시아 지명	조선 명칭	부장 성명	연령	직업	본적	가구 수	인구
카르사코프카	하구사개척리 (河口社開拓里)	남학길 (南鶴吉)	42	상업	함경북도 경원군	269	남 965 여 958
브치로프카	유시사관석 (柳市社關析)	김홍수 (金弘洙)	50	농업	함경북도 경흥군	258	남 843 여 785
시네로프카	구안평사 (求安坪社)	이영업 (李泳業)	35	농업	함경북도 경흥군	492	남 1,025 여 963
크로우노프카	한산사 (閑山社)	채병헌 (蔡丙憲)	40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182	남 526 여 467
	계화령 (啓化峯)	김석능 (金錫儉)	53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165	남 454 여 371
브치로프카 부근 조선 부락	용연평 (龍淵坪)	윤기권 (尹麒權)	36	상업	함경북도 회령군	83	남 250 여 215
노오니콜리스크 와 크로프카 사이	용정동 (龍井洞)	서병모 (徐炳謨)	40	농업	함경북도 회령군	43	남 115 여 100

동상	당어현동 (唐於峴洞)	전기정 (全其禎)	47	상업	평안도 평양	78	남 247 여 218
동상	풍흥동 (豐興洞)	황운하 (黃雲河)	46	농업	함경북도 회령군	50	남 145 여 144
크로우노프카 부근	서양자동 (西楊子洞)	황하겸 (黃河謙)	43	농업	함경북도 회령군	37	남 110 여 91
노오니콜스크 에서 남쪽	요봉 (堯峯)	박여정 (朴汝正)	45	농업	함경북도 길주군	71	남 276 여 239
노오니콜스크 에서 남쪽	도룡봉 (島龍峯)	강치만 (姜致萬)	52	농업	함경북도 회령군	31	남 72 여 55
보리소프카	황평 (荒坪)	최□형 (崔□衡)	49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178	남 538 여 462
니콜스크 서쪽 부근	신흥평 (新興坪)	최상삼 (崔尙衡)	42	농업	함경북도 길주군	69	남 130 여 115
노오니콜스크 부근	장재령 (長財峯)	박자정 (朴子政)	40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51	남 160 여 143
노오니콜스크와 보리로프스카 사이	이차령 (二次峯)	정성화 (鄭聖化)	45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76	남 76 여 60
니콜스크 정류장 동쪽	동령 (東峯)	주용호 (朱容浩)	50	농업	함경북도 길주군	88	남 228 여 172
니콜스크 정류장 동쪽 부근	화교촌 (火橋村)	유행지 (俞行之)	58	농업	함경북도 경흥군	39	남 180 여 150
해독 어려움	이포 (梨浦)	채명서 (蔡明瑞)	55	농업	함경북도 경원군	96	남 346 여 292
보리소프카 남쪽	달랑토 (達浪土)	안기열 (安基烈)	50	농업	함경북도 명천군	61	남 185 여 148
보리로프카 부근	사봉평 (四峯坪)	방서극 (方瑞極)	42	농업	함경북도 명천군	177	남 475 여 410
크로우노프카 남쪽	대양자동 (大楊子洞)	남주업 (南周業)	40	농업	함경북도 경성군	31	남 180 여 170
계 22지부						3,625	남 7,526 여 6,728
합계 14,254							

순(純) 조선인 소학교

소재지	학교 수	학생 수	비고
니콜스크	2	230	시내의 1개교는 경성 남감리교회(메소디스트 교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학교는 모두 학부형이나 유지들의 성금으로 유지한다.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사용한다. 조선어로 조선인 아동을 교육한다. 25개교는 학부형이나 유지들의 성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액으로 계산해 1개교에 대해 100엔(즉 교사수당 60엔, 교과서 구입비 40엔), 합계 2,500엔의 보조금 지급을 희망한다.
달랑토(達浪土)	1	17	
도룡봉(島龍峯)	1	15	
요봉(堯峯)	1	20	
하구사(河口社)	2	80	
한산사(閑山社)	1	47	
용정동(龍井洞)	1	20	
용연평(龍淵坪)	1	30	
이포(梨浦)	1	25	
유시사(柳市社)	1	60	
사봉평(四峯坪)	1	14	
구안평사(求安坪社)	2	130	
신흥평(新興坪)	1	19	
계화령(啓化峯)	1	50	
대양자동(大楊子洞)	1	11	
당어현동(唐於峴洞)	1	18	
동령(東嶺)	1	12	
이차령(二次嶺)	1	15	
장재령(長財嶺)	1	17	
풍흥동(豊興洞)	1	15	
황평(荒坪)	1	30	
화교촌(火橋村)	1	10	
서양자동(西楊子洞)	1	13	
계	26	898	

교명	소재지	학교 수	학생 수	비고
조선인 사범학교	니콜스크	1	30	러시아 정부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니콜스크	1	100	시회(市會)의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하구사(河口社)	2	120	러시아 정부 비용으로 유지
소학교	한산사(閑山社)	1	40	동상
소학교	유시사(柳市社)	1	110	동상

소학교	구안사(求安社)	1	60	동상
계		7	460	러시아가 모종의 교육을 실시

〈출전 : 朝鮮人民會補助金其他二關シ回報ノ件, 1921년 11월 19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朝鮮人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8.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기밀공신(機密公信) 제3호

1922년 4월 25일

재 니콜스크 영사 스키노 호코타로(杉野鋒太郎)

외무대신 백작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 전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올 2월 13일자 아삼기밀합(亞三機密合) 제28호 서신의 내용은 잘 받아 보았다. 그래서 당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금 3,600엔의 용도에 관해서는 민회 측에서도 가장 유효하게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뭄으로 농작물들이 말라죽게 되면서 거의 수확하지 못했고 따라서 조선인(조선인은 대개 농업에 종사)은 결핍과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구제방안으로서 민회는 파견군으로부터 군용화물차의 배급을 받아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저렴한 밤 등을 구입한 뒤 싼 가격에 팔기로 했다. 그래서 그 자금 가운데 위의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가을 수확 때에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파견군이 화물차의 배급을 허가하지 않아서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은 일반 경제계의 불황, 특히 작년 가을 그 지역의 농산물 흉작으로 인해 대부분은 1푼도 저축을 할 여유가 없어서 민회비를 납입하지 못해 민회의 유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가운데 얼마간 유용하고 올 가을 적당한 시기에 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어쨌거나 보조금은 영원히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학당의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간화회의 기관지로서 조선어 『신시민보』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올 4월 초순에 종래 육군특무기관에서 받고 있던 300엔은 동 기관의 경비의 절감에 따라 중지되었다. 따라서 보조금을 그 쪽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1922년도의 보조액도 미정이고 또 민회기관으로서 당금(黨金)을 계산하니 월 약 600엔의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중지되어 현재 신문은 휴간된 상태이다.

연해주 간화회는 작년 5월경 군헌(軍憲) 측의 권유로 친일조선인으로 조직되었지만, 그 내실은 니콜스크 시 조선인 민회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군이 철수한 뒤의 장래를 예상할 경우 일반 조선인을 망라하는 조선인 민회를 기초로 하여 부조(扶助)하고 이끄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출전 : 朝鮮人民會補助金二關シ回報ノ件, 1922년 4월 25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朝鮮人民會』 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찾아보기

【ㄱ】

- 가토 이쿠사부로(加藤幾三郎) 285
 가토 하쿠지로(加藤伯次郎) 220
 간도 유신회 100, 101, 102
 간도 협의회 100, 101
 간도시보(間島時報) 56
 간도협조회 216, 218, 219, 220, 221, 222, 224,
 226, 231, 235, 236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243
 강경해(姜鏡海) 153, 189, 196, 207
 강기홍(姜基弘) 236
 강두원(姜斗遠) 134, 146
 강만수 231
 강매곡(姜梅谷) 250
 강병철(姜炳哲) 191, 208
 강석진(姜錫璉) 344
 강신향(姜信鄉) 198, 204, 211
 강옥립 231
 강전 192
 강치만 362
 강태구(姜泰球) 204, 210
 강태권(姜泰權) 230, 241
 강태범(姜泰範) 231, 239
 강태훈(康泰勳) 250
 강항윤(康恒潤) 235, 238
 강현묵(姜鉉默) 227, 229, 230, 241
 강홍구 199
 게이 마사오(毛井正男) 152
 경북회 267, 270
 계남형(桂南亨) 249
 계영환(桂榮煥) 193, 210
 고다카 히로야(小鷹博哉) 92
 고동호(高東浩) 248
 고려공산당 81
 고마츠 히로미(小松寬美) 48
 고명호(高明昊) 344
 고산(靠山) 135, 137
 고수봉(高秀逢) 118, 121, 124
 고입원(高立垣) 103
 고지원(高志遠) 82
 곡덕림(谷德林) 104
 곡지해(曲志海) 118
 공민회 179
 공석환(孔錫煥) 118, 122, 125
 공안대 101
 공의회 331, 332, 333
 공재완(孔在琬) 118
 관동노동일심회(關東勞動一心會) 272
 관동대지진 322, 323
 광제사(廣濟社) 209
 교하 농무회(農務會) 72
 구국의용군 81
 구니모토 쇼켄(國友尙謙) 175
 구와바라 고이치로(桑原荒一郎) 103, 104
 국영상(鞠永祥) 103
 군지 도모마로(郡司知磨) 174

권수정(權守貞) 68
 권승무(權承武) 250
 권승익(權承益) 252
 권영천 222
 권찬석(權燦錫) 277
 금주(錦州) 폭탄 사건 77
 기무라 도모하루(木村友治) 153, 177
 기쿠치 요시로(菊地義郎) 341
 길림 조선인회 70
 길문환(吉文暄) 210
 길승기(吉承基) 210
 길용준(吉用俊) 210
 길은찬(吉隱贊) 192, 210
 길은초(吉隱初) 191, 210
 길창실(吉昌實) 190, 208
 길창준(吉昌俊) 211
 김순(金順) 251
 김파(金波) 235
 김갑수 193
 김강(金剛) 247
 김건중(金健中) 312, 321
 김경수(金景守) 251
 김경재(金敬載) 344
 김경준 191
 김경호(金景鎬) 153, 196
 김경환(金景煥) 190, 196, 207
 김공신(金公臣) 344
 김관익(金關益) 145
 김광욱(金光旭) 251
 김규환(金圭煥) 360
 김기홍(金基洪) 118, 122, 125
 김길준(金吉俊) 220, 222
 김길현(金吉鉉) 238
 김남규(金南奎) 239
 김남길(金南吉) 241
 김남일 229
 김내원(金來元) 335
 김덕기(金德基) 344
 김덕여(金德汝) 194, 210
 김도성(金道盛) 191, 203, 210
 김도일(金道一) 199, 204, 210
 김도준 156
 김돈(金燾) 197
 김동렬 228, 230
 김동익(金東翼) 193, 210
 김동일(金東一) 250, 253
 김동준(金炯俊) 240
 김동한(金東漢) 220, 222, 238, 243
 김동호(金東浩) 235
 김동훈(金東勳) 223, 233, 235
 김두성 333
 김득화(金得和) 210
 김렬 233
 김만건(金萬建) 360
 김만경(金萬經) 145
 김만석(金萬錫) 345
 김명규(金明奎) 210
 김민건 231
 김범주(金範疇) 228, 239
 김병권 228
 김병균 332
 김병량(金秉亮) 344
 김병섭(金炳燮) 201, 205, 210
 김병섭(金秉燮) 345
 김병희(金秉熙) 343, 344
 김봉서(金鳳瑞) 345
 김봉협(金鳳協) 345
 김부갑(金富甲) 275

김상렬(金相烈) 239
 김상옥(金相玉) 247, 253
 김석능 361
 김석준(金錫俊) 208
 김석지(金錫祉) 194, 204, 210
 김성기(金聖基) 228, 239
 김성길(金成吉) 239, 251
 김성만(金成滿) 191, 208
 김성수 331, 332, 333
 김성임(金成任) 345
 김성해(金成海) 203
 김성현(金成軒) 251
 김세익(金世益) 103
 김세찬(金世贊) 192, 208
 김세하(金世河) 250
 김송렬(金松烈) 220, 222, 223, 227, 229, 230,
 235, 238
 김승준(金承俊) 210
 김신수(金申秀) 208
 김여백(金汝伯) 360
 김여연(金麗淵) 163
 김영수(金榮秀) 220, 222, 238
 김영순(金永淳) 96, 191 210
 김영엽(金永燁) 251
 김영태(金瑩泰) 191, 208
 김영학(金永學) 118
 김영한(金英漢) 199, 204, 210
 김용건(金溶乾) 165, 166
 김용국(金用國) 152, 176, 188, 196, 197, 199,
 207
 김용국(金龍國) 213
 김용봉(金龍鳳) 210
 김용삼(金龍三) 345
 김용수(金容洙) 118
 김용수(金龍守) 344
 김용수(金龍洙) 96
 김용양(金鎔痒) 268, 283
 김용언(金龍言) 334
 김용준(金龍俊) 344
 김용찬 229
 김용하(金容河) 168
 김용하(金龍河) 235
 김우근(金禹根) 220, 222, 238
 김원선(金元善) 345
 김원하(金元夏) 250
 김유영(金裕泳) 118, 121, 124, 134, 144, 181,
 185, 186, 207, 211
 김윤수(金潤秀) 271, 272, 276
 김윤언(金允彦) 236
 김은성(金殷成) 118, 121, 124, 147
 김은성(金殷盛) 127, 128, 207
 김응순(金應淳) 97
 김응옥(金應玉) 251
 김응호(金應浩) 194, 196, 201, 205, 210
 김의경(金義京) 250
 김이대(金履大) 68
 김이삼(金利三) 67
 김이석(金利錫) 250
 김익지(金益智) 344
 김인배(金仁培) 222, 238
 김인학(金仁學) 360
 김일산(金一山) 67
 김일수(金逸秀) 199, 204
 김재수(金在洙) 221
 김정원(金正元) 67
 김정훈(金政勳) 242
 김조하(金筱廈) 247
 김종관(金鍾觀) 118, 122, 125

김종성(金種聲) 250
 김종철(金鍾喆) 344, 345
 김종호(金鍾浩) 268, 283
 김좌진(金佐鎭) 136
 김주역 331, 332
 김주익(金周益) 152, 193, 208, 213
 김중식(金仲植) 227, 230, 241
 김진무(金振武) 239
 김진오(金鎭五) 334
 김진용(金鎭容) 122, 125
 김집현(金集現) 334
 김창룡(金昌龍) 97
 김창수(金昌壽) 205
 김창순(金昌淳) 203
 김창옥(金昌玉) 250
 김창율(金昌律) 103
 김창익(金昌益) 210
 김창주(玄昌周) 247
 김창준(金昌俊) 276, 277, 320
 김창해(金昌海) 192, 208
 김천봉(金天奉) 198
 김천을(金天乙) 127, 160, 192
 김청호(金淸鎬) 275
 김춘길(金春吉) 275
 김춘연(金春淵) 345
 김춘일(金春一) 80
 김택준(金澤俊) 345
 김택현(金澤鉉) 118, 121, 124, 243, 245
 김피하 252
 김하성(金河星) 222, 223, 238
 김학수(金學洙) 96
 김한규(金翰奎) 239
 김한서(金韓瑞) 335
 김한식(金漢植) 284

김현택(金玄澤) 145
 김형삼(金亨三) 194, 203, 210
 김형섭(金形燮) 345
 김형준 228
 김홍수 361
 김홍주(金洪疇) 194, 210
 김흥찬(金興燦) 239
 김희산(金希山) 247, 250
 김희순(金熙淳) 96
 김희정(金熙貞) 193, 203, 210

【ㄴ】

나가노 간(長野 幹) 175
 나가세 호스케(永瀨鳳輔) 276
 나가이 토오루(永井亭) 264
 나스 다사부로(那須太三郎) 175
 나이토 준타로(内藤順太郎) 311
 나주익(羅柱益) 127
 나준 유키(奈順勇喜) 153, 176
 나카무라 다케조(中村竹藏) 175
 나카야마 사노스케(中山佐之助) 175
 나함진(羅函珍) 205
 나해룡(羅亥龍) 334
 낙영학교 198
 남대관(南大觀) 68, 71, 81
 남성규 231
 남주업 362
 남형우(南衡宇) 242
 내문원(句文元) 96
 노동일심회(勞動一心會) 271
 노영구(盧永九) 268, 283
 노창운(盧昌云) 210
 노초(盧超) 275
 노화관(盧華觀) 96

니시 하루히코(西 春彦) 174
 니시무라 야스키치(西村保吉) 175
 니시아마 요조(西山陽造) 311
 니시자와 기조(西澤義徵) 174, 195, 200

【ㄷ】

다나카 센키치(田中千吉) 175
 다나카 시게조(田中繁三) 175
 다치바나 후지마쓰(橘 富士松) 311
 다카하시 모리오(高橋守雄) 309, 310
 대도회(大刀會) 72, 73, 81, 82
 대일본 거류민회 345
 대진재선우회(大震災善後會) 280
 대한독립단 167
 대한독립복보사(大韓獨立復保社) 177
 도야마 미츠루(頭山滿) 268
 도진황(姚振黃) 73
 독고욱(獨孤旭) 248
 독고평(獨孤枰) 97
 독립단(獨立團) 147
 동아보민회 312
 동아신흥동맹 321
 동아신흥연맹 321
 동아연맹 321
 동아신흥회(東亞振興會) 311
 동지회 311

【ㄹ】

마덕창(馬德昌) 247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175, 267
 마스다 기이치(増田義一) 264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 175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94, 195, 200, 206
 마쓰쿠마 칸타로(松隈堪太郎) 153, 177

만보산사건 67, 309, 311, 312
 만주건국축하회 100
 만주보민주식회사 111, 112, 116, 121, 124, 125, 144
 만주국 협화회 101, 102, 222, 226, 242
 맹상군(孟嘗軍) 73
 모리 마사오(毛利正男) 176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93
 무사시노동신문(武蔵労働新聞) 274
 무순 조선인 민회 95
 문관오(文寬吾) 227, 239
 문국빈(文國彬) 189, 196, 208
 문봉조(文鳳朝) 103
 문성환(文成煥) 284
 문창범(文昌範) 343, 358
 미네 유키마쓰(峯 幸松) 175
 미야모토 하지메(宮本 元) 176
 미야타 기헤(宮田喜平) 345
 미즈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276
 민생단 80, 101, 243, 244, 245
 민석현 263, 264, 265
 민성보(民聲報) 80
 민족경애회 276, 277

【ㅂ】

박교범(朴教範) 86
 박근화(朴根化) 335
 박기윤(朴基潤) 153
 박남규(朴南圭) 360
 박내철 266
 박대호(朴大浩) 247, 248, 251, 252
 박두영(朴斗榮) 222, 238
 박병일(朴炳一) 344
 박봉수(朴鳳洙) 191, 210

- 박봉순(朴逢舜) 149, 189, 208, 214
 박봉신(朴奉信) 276, 277
 박사직(朴思稷) 265
 박상희(朴尙僖) 261
 박석윤(朴錫胤) 80, 243, 245
 박성옥(朴成玉) 285
 박성호(朴成浩) 192, 210
 박세영(朴世永) 250
 박순(朴淳) 103
 박시화(朴時和) 127, 188, 207
 박양섭(朴揚涉) 344
 박여정 362
 박영석(朴永碩) 275
 박영옥(朴永玉) 284
 박용일 229
 박용찬 228, 229, 230
 박우양(朴瑀陽) 118, 122, 125
 박원도 194, 196
 박원세(朴元世) 344
 박원식(朴元植) 188, 202, 207
 박원호(朴元昊) 152, 177
 박의봉(朴義鳳) 360
 박인호(朴寅浩) 266
 박일영(朴一榮) 345
 박자군(朴子君) 360
 박자정 362
 박장호(朴長浩) 177
 박종구(朴鐘九) 133, 144
 박창식(朴昌植) 153, 250
 박창연(朴昌連) 250
 박창환(朴昌煥) 96
 박춘금(朴春琴) 266, 268, 271, 278, 283, 286,
 312, 313
 박필근(朴弼根) 189, 202, 208
 박하연(朴河顏) 334
 박화영(朴化榮) 335
 박희평(朴熙平) 344
 방경전(方景田) 104
 방두천 227
 배동수(裴同守) 268, 283
 배순조(裴順祖) 284, 285
 배정자(裴貞子) 132, 144, 207, 213, 214
 배정태(裴貞泰) 118, 121, 124
 배형린(白衡麟) 207
 백남직 331, 332
 백몽량(白夢良) 96
 백영모(白永摸) 193, 210
 백운기(白雲起) 251
 백운학(白雲學) 252
 백인제(白麟濟) 250
 백준기(白俊基) 210
 백형린(白衡麟) 127
 백형린(白衡麟) 118, 121, 124, 129, 189
 백형린(白衡麟) 152, 176, 203
 백형숙(白衡璠) 96
 변기택(邊基宅) 133, 146
 병광훈(芮光勳) 96
 보민회(保民會) 95, 111, 112, 117,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4, 139, 143,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4, 155,
 157, 158, 162, 164, 168, 170, 172, 173, 176,
 177, 178, 179, 180, 182, 183, 184, 185, 186,
 196, 198, 200, 201, 202, 206, 207, 208, 209,
 212
 봉천 일본 거류민회 95, 139, 184
 봉천 일본인회 178
 봉천 조선인협회 178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335, 336, 343

【ㄱ】

사사키 준(佐佐木準) 152, 176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 164, 173, 175, 267, 268
 사카이 요사키치(堺與三吉) 47
 사카타니 요시로(坂谷芳郎男) 264
 사토 린조(佐藤麟造) 160
 상구회(相救會) 266, 279
 상애회(相愛會) 266, 267, 270, 278, 310, 311
 서광하(徐光夏) 203
 서병모 361
 서상순(徐相淳) 192, 210
 서상용(徐相庸) 239
 서소철(徐邵哲) 208
 서우근(徐禹根) 344
 서윤철(徐允哲) 360
 서자범(徐子範) 344
 서태석(徐邵哲) 112, 118, 121, 124
 석삼봉(昔三鳳) 345
 석창준(石昌俊) 236
 선민부(鮮民府) 248
 선성문(宣成文) 250
 선우상(鮮于祥) 251
 선우연(鮮于淵) 208
 성사계(成仕啓) 335
 성윤(誠允) 71
 성재철(成載哲) 285
 성흥경(成興慶) 133
 성희근(成熙勤) 145
 소노다 히로시(園田 寬) 175
 손병희(孫秉熙) 143, 265
 손지환(孫技煥) 220, 222
 손학무(孫學武) 241
 손희상(孫熙相) 153, 177, 192, 196, 199, 204,

208, 213

송국영(宋國榮) 73
 송동국(宋東國) 250
 송세철(宋世喆) 118
 송운봉(宋雲峯) 193, 203
 송운봉(宋雲峰) 210
 송정희(宋玎會) 285
 송지통(宋志通) 118
 송찬경(宋贊京) 285
 송태하(宋泰夏) 251
 웨르바꼬프 333
 스기노 호코타로(杉野鋒太郎) 355, 364
 스나가 시게루(須永 茂) 129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 93, 174
 승덕봉(承德鳳) 199, 204
 시게야마(茂山) 수비대 87
 시국단속협의회 81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64, 246, 309, 310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 304
 시미즈 가즈오(清水一雄) 264
 신명삼(申明三) 284
 신상호(申相鎬) 205
 신서우(申瑞雨) 284
 신시민보(新時民報) 355, 361, 365
 신조 유지로(新庄祐治郎) 175
 신한촌 민회 342
 실업노동조합(實業勞動組合) 275
 심병남(沈秉南) 241
 심용준(沈龍俊) 247, 248, 252
 쓰보우에 데이치(坪上貞二) 175, 209
 쓰시마 하쿠노(對馬百之) 103

【ㅇ】

아다치 겐조(安達謙藏) 309, 310

-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175
 아베 마타주로(阿部又重郎) 175
 아사바 준이치(淺羽順一) 80
 아세아여자공학회(亞細亞女子共學會) 277
 아이바 기요시(相場 清) 175
 아카바네 가쓰미(赤羽克己) 175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129, 126, 150, 152, 158, 171
 아카이 하루미(赤井春海) 175
 아카이시 다다시(明石正) 160
 안건식 199
 안광민(安光民) 210
 안기열 362
 안기초(安基礎) 190, 207, 213
 안달환(安達桓) 204
 안동 조선민회 178
 안동 조선인회 178
 안봉학(安鳳學) 221
 안용정 222
 안중현(安仲鉉) 360
 안평도(安平道) 334
 안홍익(安鴻翼) 118, 121, 124, 133, 145, 147, 148, 152, 176, 190, 207
 야나베 에자부로(矢鍋永三郎) 175
 야마우치 시로(山内四郎) 174
 야마자키 마사오(山崎眞雄) 176, 346
 야부노 요시미쓰(藪野義光) 174
 야스이 에이지(安井英二) 326, 327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 176
 양봉제(梁鳳濟) 250
 양정묵(梁正默) 118, 122, 125, 132, 144, 207, 213, 214
 양종식(梁宗植) 239
 엄인소 333
 엄주익(嚴柱翊(益)) 127, 147, 148, 149, 181, 187, 168, 196, 207
 여경휘(呂景輝) 343
 연창건(延昌建) 344
 연해주 간화회 350, 355, 358, 360, 365
 열만휘(列滿輝) 72
 염면홍(廉冕弘) 238
 염혜경(閻惠慶) 73
 오가와 기이치(小川喜一) 127, 128, 161, 164, 173
 오경도(吳京道) 250
 오기준 230
 오막빈(吳漠彬) 252
 오병근(吳炳根) 250
 오봉삼(吳鳳三) 263
 오상국(吳相國) 250
 오성문(吳聖文) 344
 오성희(吳成熙) 96
 오위기(吳爲基) 127
 오의성(吳義成) 72
 오의자선회(五義慈善會) 71
 오이 시게모토(大井成元) 347
 오인화(吳仁華) 67
 오정근(吳貞根) 167, 168, 191, 208
 오준자(吳俊子) 72
 오창산(吳昌山) 251
 오츠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175
 오카다 켄이(岡田兼一) 100, 102, 243, 245
 오피영(吳必泳) 146
 오향걸(吳鄉杰) 201, 205
 오헌수(吳憲洙) 207
 오헌영(吳憲泳) 118, 122, 125, 129, 133, 145, 187, 214
 왕덕량(王德亮) 104

왕덕림(王德林) 72, 81, 82, 83
 왕선배(王善培) 104
 왕옥진(王玉振) 84
 왕이철(王以哲) 77
 왕일성(王日成) 118, 121, 124
 왕지란(王芝蘭) 86
 왕지우(王之祐) 71
 요다 요시오(依田善雄) 87
 요시하라 다이조(吉原大藏) 164, 170, 174
 요진산(姚振山) 72
 요코타 고로(橫田五郎) 175
 우라하라 규시로(蒲原久四郎) 175
 우법사(于法師) 73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143
 우쓰노미야(宇都宮) 143
 우에노 데쓰노스케(植野鉄之助) 103, 107
 우치다 고사이(内田康哉) 44, 45, 46, 48, 102,
 126, 129, 134, 150, 152 170, 171, 341, 355,
 364
 원기범 231
 원승보(元承甫) 163
 원정완(元正完) 241
 원정환 230
 원치상 223, 233
 이응범(李應範) 223
 원희조(元喜祚) 251
 위봉조 230
 유동열(柳東悅) 81
 유세오(劉世五) 344
 유중희(柳重熙) 223, 230, 231, 238
 유진행(俞鎭行) 191, 207
 유풍수(劉風洙) 168
 유한금(劉漢金) 72
 유행지 362
 윤기권 361
 윤능효(尹能孝) 344
 윤대동(尹大同) 334
 윤동빈(尹東彬) 250
 윤동철(尹東哲) 139
 윤범식(尹範植) 133, 145
 윤수복(尹壽福) 200, 205, 210
 윤정일 227, 228, 230
 은명덕(殷明德) 103
 의용군자위단(義勇軍自衛團) 217
 이진(李晋) 210
 이강재(李康在) 103, 245
 이경빈 228, 229, 233
 이광민(李光珉) 199, 204
 이규완(李圭完) 176
 이근세(李根世) 320
 이근양(李根陽) 138
 이근정 156
 이기동(李起東) 266, 268, 271, 278, 283
 이기술(李己述) 248
 이나가키 사부로(稻垣三朗) 347
 이난진(伊蘭鎭) 71
 이능만(李能滿) 147, 148, 149, 181, 193, 210,
 214, 215
 이동기 194
 이동선(李東璇) 121, 124
 이동성(李東成) 129, 133, 145, 152, 168, 176,
 188, 203, 207, 213, 248, 254
 이동수 233
 이동준(李東濬) 342, 344
 이동화(李東華) 228, 229, 241, 276, 277, 319,
 320, 321
 이동환(李東煥) 344
 이동훈(李東勳(熏)) 152, 177, 205

이두빈(李杜賓) 71
 이마나가 가오루(今永 薫) 153, 177
 이명순(李明順) 360
 이문약(李文若) 193, 210
 이민관(李民觀) 133, 145
 이민우(李敏禹) 344
 이반 이와노키치 343
 이범석(李範錫) 344
 이병렬(李炳烈) 169
 이병환(李丙煥) 210
 이봉규(李鳳奎) 156
 이봉남(李鳳南) 239
 이상두(李相斗) 210
 이상묵(李相墨) 221, 231
 이상운(李尙雲) 342, 343, 344
 이상현(李尙賢) 127, 129, 161
 이석기(李碩基) 190, 204, 208
 이석재(李錫宰) 284
 이선민(李仙民) 118, 133, 146
 이설(李高) 344, 345
 이성국(李成國) 169
 이성규(李聖奎) 210
 이성백(李星伯) 230, 236
 이성을(李成乙) 201, 205
 이소바야시 마사야키(磯林正明) 48, 136
 이수철(李秀喆) 274
 이수현(李秀賢) 344
 이승호(李承灝) 118
 이시카와(石川登盛) 175
 이시팔(李時八) 203
 이시항 155
 이영규(李永奎) 268, 283
 이영근(李永根) 103
 이영일 228, 229
 이영희(李永熙) 247, 248, 251, 252
 이완구(李完求) 153, 177, 188, 196, 199, 200, 205, 207
 이완구(李琬求) 213
 이용규(李容奎) 197
 이용태(李用泰) 210
 이운해(李雲海) 169
 이원석(李元錫) 320
 이응계(李膺計) 205
 이응도(李應道) 128, 190, 208
 이응두(李應斗) 152, 177
 이응범(李應範) 233, 235
 이응선(李應善) 250
 이의(李宜) 127
 이인선(李仁善) 243
 이인수(李寅秀) 112, 118, 121, 124, 126, 129, 144, 152, 173, 176, 186, 207, 212, 213, 214
 이인수(李仁秀) 132
 이자청 332
 이정구(李正九) 334
 이정근(李貞根) 127, 128, 169, 188, 207
 이정민(李正民) 250
 이종화(李鐘華) 203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173, 180
 이중무(李重武) 153
 이지선(李枝善) 190, 208
 이지태(李枝泰) 191, 208
 이진(李晋) 198, 204
 이진성(李振聲) 72
 이진하(李珍河) 152, 177, 250
 이창련(李昌連) 210
 이철화(李徹和) 122, 125
 이청수 252
 이청천(李青天) 81, 85

이쿠다 세자부로(生田清三郎) 176
 이태인(李泰仁) 189, 208
 이태현(李泰鉉) 153
 이태효(李泰孝) 145
 이택희(李澤禧) 203
 이필주(李弼周) 118
 이하영(李河永) 208
 이학근(李學根) 97
 이한원 228, 229, 231
 이해수(李海秀) 118, 122, 125, 133, 139, 145,
 152, 193, 208, 210
 이해청(李海靑) 78
 이행식(李行植) 344
 이향춘(李香春) 250
 이형수(李亨洙) 360
 이형욱(李亨郁) 344
 이홍범 229
 이화영(李和英) 153
 이화운(李化雲) 335
 이흥백(李興栢) 97
 이희덕(李喜德) 94
 이희원(李喜元) 197
 이희패(李喜貝) 197
 이희형(李喜亨) 197
 일선기업(日鮮起業)주식회사 271
 일시삼다마노동조합 275
 일심회 272, 273, 275
 일월회 275
 일진회 111, 143, 183, 212, 331
 임기권(林基權) 193, 210
 임병권(任秉權) 236
 임세운(林世允) 335
 임우권(林宇權) 251
 임윤기(任倫基) 153

임정석(任晶石) 235
 임학봉(林學奉) 334

【ㄹ】

자강회(自彊會) 263, 264, 266
 자혜의원(慈惠醫院) 54
 장가빈(張嘉彬) 103
 장고윤(蔣考潤) 96
 장기식(張驥植) 153
 장기정(張基正) 177
 장길환 344
 장병호(張炳浩) 241
 장병활 230
 장복재(張福齋) 188
 장봉세(張奉世) 210
 장봉진(張鳳振) 192, 210
 장봉(張鵬) 72
 장석주(張錫周) 205
 장승군(長勝軍) 73
 장압익(張鴨翼) 344
 장영준(張英俊) 190, 208
 장우근(張宇根) 179
 장원경 228
 장원순(張元淳) 241
 장원준(張元俊) 222, 238
 장응식(張膺植) 284
 장의근(張宜根) 153
 장작린(張作霖) 157, 171, 173
 장정행(將正行) 320
 장준걸(張俊傑) 236
 장지량(張之亮) 152, 181, 187, 207
 장지원(張志遠) 103
 장진성 227, 228, 230
 장해봉(張海鵬) 77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272, 273, 275
 전경서(全璟瑞) 210
 전경호 193
 전국정 231
 전기정 362
 전림(田霖) 72
 전명조(全明朝) 200, 205
 전병수(全炳壽) 118, 122, 125
 전진(傳鎔) 104
 정 학교(正 學校) 198
 정경서(鄭景瑞) 210
 정관현(鄭寬鉉) 345
 정기호(鄭基浩) 345
 정단(鄭丹) 199, 204
 정만석(鄭萬碩) 285
 정면극(鄭冕極) 152
 정병한(鄭炳韓) 122, 125, 193
 정병한(鄭炳翰) 152, 210
 정봉국(鄭鳳國) 251
 정봉록(鄭鳳錄) 148, 192
 정봉록(鄭鳳祿) 210
 정석구 231
 정성옥 331
 정성충 227
 정성화 362
 정순섭 233
 정승복(鄭承福) 190, 208
 정영복(鄭永福) 127
 정옥옥 331
 정인림(鄭寅林) 204
 정인엽(鄭寅曄) 268, 283
 정인채(鄭寅采) 198, 210
 정재곤(鄭在坤) 192, 210
 정재덕(鄭在德) 359
 정재설(鄭在高) 122, 125
 정제원(井濟源) 104
 정창규(鄭昌奎) 198, 204, 211
 정창우 229, 230
 정초(丁超) 71
 정치곤(鄭致琨) 96
 정치문(鄭致文) 344
 제우교 111, 131, 142, 143, 146, 155, 159, 186,
 187, 211
 조대룡(趙大隆) 168
 조만기(趙萬基) 239
 조맹선(趙孟善) 177
 조병권(趙秉權) 241
 조병상(曹秉相) 243, 245
 조병주(趙秉珠) 335
 조병철(趙炳喆) 198, 204, 210
 조봉래(趙鳳來) 118, 122, 125
 조상백(趙尙伯) 345
 조선 민중회의 275
 조선민연합회 139
 조선신흥동맹 319, 321
 조선인 민회(朝鮮人民會) 44, 67, 93, 94, 95,
 99, 184, 336, 341, 345, 355, 364, 365
 조연기(趙延起) 133
 조영진(趙永晉) 342, 343, 344, 345
 조옥주(趙玉周) 104
 조원선(趙元善) 345
 조윤걸(趙允傑(杰)) 194, 196, 200, 205, 210
 조정기(趙廷起) 146
 조종호(趙鍾浩) 265
 조준승(曹準承) 268, 283
 조청의(趙靑義) 92
 주림(朱林) 208
 주기춘(주기춘) 229, 231

주동희(朱東熙) 92
 주림(朱林) 153, 177, 198, 204
 주명준(朱明俊) 199, 204
 주성삼(周省三) 193, 210
 주용호 362
 주임선(朱任善) 342
 주화중(朱化仲) 345
 중국공산당 민주성위원회 90
 지광운(池光雲) 161, 162, 163
 지용운(池龍雲) 344
 지운경(池云景) 334
 지장순(池章淳) 241
 진열무(陣烈武) 72
 진홍장(陳鴻章) 221

【*】

차강(車綱) 148, 190, 196, 208
 차남식(車南植) 122, 125
 차성술(車成述) 118, 122, 125
 차승준(車承俊) 192, 210
 차오장(車五將) 334
 차응선(車應善) 252
 차의권(車義權) 210
 차중호(車仲浩) 96
 차천리(車千里) 247
 차현로(車賢路) 166
 채근(蔡槿) 230, 236, 239
 채명서 362
 채명헌 361
 채성하(蔡聖河) 343, 344, 345
 채순소 333
 채양서(蔡陽瑞) 335
 채오장(蔡五將) 335
 최경도(崔景道) 194, 210

최경천 136, 140
 최덕빈(崔德斌) 194, 210
 최덕송(崔德松) 344
 최덕찬(崔德贊) 203
 최도권 227, 228
 최동규 230
 최만학 344
 최만학(崔萬學, 瑞相律) 344
 최만형 233
 최문송 229
 최병기(崔柄基) 118, 122, 125, 129, 133, 145,
 187, 207, 213, 214
 최봉만(崔奉滿) 189, 207
 최봉희(崔鳳熙) 148, 163
 최삼보(崔三甫) 335
 최상덕(崔相德) 277
 최석범(崔石凡) 241
 최석환 231
 최선(崔瑄) 239
 최선보(崔先甫) 334
 최송(崔松) 168
 최숙호(崔淑浩) 285
 최승일(崔承一) 191, 208
 최시형(崔時亨) 142
 최영기(崔永基) 284
 최영봉(崔英鳳) 344
 최영부 230
 최영엽(崔榮焯) 239
 최영혁 227, 229
 최왕생(崔王生) 164
 최유성(崔有聲) 320
 최윤(崔允) 239
 최윤주(崔允周) 103, 222, 238, 245
 최의산(崔義山) 68

최인상(崔仁祥) 163
 최일룡(崔日龍) 148, 193
 최일화(崔日和) 96
 최재경(崔在京) 247, 248
 최재형(崔在衡) 344
 최정규(崔晶圭) 112, 118, 122, 125, 126, 128,
 134, 146, 148, 149, 152, 155, 156, 161, 176,
 177, 182, 186, 202, 206, 207, 209, 210
 최제우(崔濟愚) 142, 143
 최종삼(崔鍾三) 168
 최준식(崔俊植) 163
 최지풍(崔志豊) 247, 248
 최진국(崔鎭國) 344
 최태일 331
 최필관(崔弼觀) 250
 최하성(崔河星) 235
 최학기(崔學基) 163
 최학성(崔學成) 251
 최형관(崔亨觀) 345
 최형구 155
 최환규(崔桓圭) 202, 208
 최흡(崔洽) 209

【ㄱ】

카노 지고로(嘉納治五郎) 264

【ㄴ】

탁영선(卓應善) 250
 태리훈(太利勳) 220, 222
 태평양회의 171, 173

【ㅇ】

편상영(片尙永) 118, 122, 125
 표성천(表聲天) 118, 122, 125, 187, 208

피희태(皮熙泰) 205

【ㅎ】

하규석(河圭錫) 268, 283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176
 하라 주지로(原脩次郎) 310, 311
 하상호(河尙鎬) 251
 하시모토 기요시(橋本清) 268, 283
 하영준(河永俊) 192, 210
 하재우(河在禹) 205
 한광숙(韓光叔) 360
 한교동향회 246, 247, 248, 249, 251, 252, 254,
 255, 256
 한국영(韓國榮) 250
 한규석(韓奎錫) 360
 한린성 229
 한명재(韓明哉) 192, 210
 한명준(韓明俊) 239
 한백순(韓伯淳) 222, 227, 238
 한상우(韓相愚) 238
 한상철(韓相哲) 321
 한성립 231
 한여천(韓汝天) 344
 한영휘(韓英輝) 228, 229, 230, 239
 한용섭(韓龍燮) 208
 한원석(韓元錫) 230, 241
 한유연(韓俞淵) 344
 한윤동(韓潤東) 321
 한의계(韓義濟) 247
 한인수(韓仁守) 122, 125
 한일(韓一) 228, 238
 한정원(韓鼎元) 239
 한족동향회(韓族同鄉會) 246, 256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 68, 80

한족회 177
 한중석(韓鍾錫) 268, 283
 한중옥(金鎔庠) 284
 함동철(咸東哲) 360
 함세인(咸世仁) 344
 함연호(咸演皐) 235, 238
 허귀룡(許貴龍) 285
 허기락(許基洛) 220, 222, 238
 허기열(許基熱) 227, 228, 229, 230, 235
 허동환(許東煥) 238
 허사길(許士吉) 147
 허양현(許良賢) 344
 허윤(許璡) 96, 193, 203, 210
 허일 228, 229, 231
 허전신(許殿臣) 104
 허주(許柱) 118, 122, 125
 허진성 227, 229, 230
 허태봉 233
 허희열(許熙烈) 241
 혁명호제회 221
 현익철(玄益哲) 68
 현정구락부(顯正俱樂部) 276, 277
 현창주(玄昌周) 250
 협조의용단(協助義勇團) 218
 협조의용자위단 221, 232
 협조회동변도특별공작부(協助會東邊道特別
 工作部) 222
 홍대영(洪大英) 96, 152, 191, 208
 홍범도(洪範圖) 136, 358
 홍순복 263
 홍승국(洪承國) 214
 홍우관(洪友官) 345
 홍원흥(洪院興) 250
 홍재관(洪在寬) 335
 홍재기(洪在祺) 122, 125
 홍준표(洪竣杓) 316, 317, 318, 319, 320, 321
 홍치봉(洪致鳳) 252
 화교 배격 폭행 사건 67
 황두진(黃斗珍) 360
 황봉춘(黃逢春) 65
 황상순(黃尙順) 235
 황석준(黃石俊) 236, 239
 황시준 230
 황용운 192
 황용하(黃龍河) 210
 황운하 362
 황원후(黃元厚) 156
 황인사(黃人社) 276, 277
 황인시론(黃人時論) 276
 황장숙(黃章淑) 284
 황천일(黃千一) 334
 황치운(黃致云) 118, 122, 125
 황하검 362
 황하숙(黃河淑) 190, 208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94, 174, 180,
 182, 186, 195, 200, 201, 206, 209
 후카자와 스스무(深澤 暹) 174
 후카자와 신이치로(深澤新一郎) 175
 훈춘흥변 47
 흥경 조선인회 95, 97
 흥정보민회 148
 흥정보통학교 95